

74-

474

70-82

자	료	384 300
제	호	

전독문제성 소속 독일 재통일 문제연구위원회 제5차보고서

보 관 용
(관 리 과)

(번 역)
FORSCHUNGSBEIRAT

FÜR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BEIM BUNDESMINISTER FÜR GESAMTDEUTSCHE FRAGEN

국
토
통
일
위
원

FÜNFTER TÄTIGKEITSBERICHT
1965 / 1969

1970. 12

국 토 통 일 원

정 오 표

페이지	행	오	정	페이지	행	오	정
차례 전면	16	외해	외한	91	1	직업에	직업의
차례 후면	1	동서경제-법 적 형식	동서경제-법 적 형식"	92	16	알려지고	알려지지
3	10	집권자	집권자는	95	11	그림금을	그림금을
6	12	또한	또한	97	11	행정기관에 의해서 실험적 으로	행정기관 a priori 에 의해서 계획 되고
7	18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103	8	연결지대	연결기계
12	1	위원의장의	위원장의	104	8	결이	결의
21	19	중부계산	중부계산	104	15	휴가여행	휴가여행
22	7	것을	것은	105	4	연합	(연합)
35	2	동시득	동시득	123	15	말미아마	말미아마
37	1		취업하고	130	18	세밀기계	정밀기계
37	5	체코슬라바키아	체코슬라바키아	134	22	또기	또는
47	18	구입감소	구입감소	145	21	증개가	증개가
53	23	계제출	제한계출	154	1	의결	의결
55	12	대통령의해	대통령의해 1967	165	11	원한전	원한전
62	14	공출가격률	공출가격률	198	7	단계불은	단계불은
63	15	연산할수있다	연산할수있다	198	15	세계치장유동	세계시장유동
64	21	한에서는	한에서는-	201	1	Sismondie	Sismondie
80	17	추적	추적	226	20	실례	실예
82	12	Brüssel	Brüssel	241	9	장난감공업	장난감공업
85	6	이러한사실	이러한사실	244	9	저불마	저불마
86	1	분제한	분제한				
90	16	추적	추적				

서 문

전독문제상 소속독일재통일문제 연구위원회활동보고서는 첫보고서 (1952 - 1953) 가 나오기 시작하여 계속되어서 지금에 이르렀으며 이번 제 5 차 활동보고서 (1965 - 1969) 는 최근것으로서 1 . 2 . 3 부로 구분되어 , 그내용은 연구위원회임무 , 동독의 경제 , 사회적 상황 및 제도의 비교 · 전망을 취급하고 있다 . 그중에서 우리국토통일문제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문제만을 발췌 · 번역 · 발간 하는 것이다 .

차 례

제 I 부 연구단의 업무	1
제 II 부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과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과의 비교	15
1 . 공업생산	17
2 . 노동생산력	23
3 . 수입증가	27
4 . 노동력 개선	31
제 III 부 농업분야에 있어서 동서 양독일간의 교역관계	41
제 IV 부 농업이 현대 공업국가의 국민경제조건에 적응하여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양독일 농업체제	73
1 . 농업정책 구상 및 경영초안	75
2 . 양단 독일내의 농업생산 발전상황	77
3 . 동독의 사회주의 대규모농장 경영과 서독의 가내 노동법에 의해 자작농	82
4 . 생산의 신축성	94
5 .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의 협동분제	96
제 V 부 상호 경제원조 평의회와 독일국내 경제관계	111

제Ⅴ부 동서경제단위 간에 있어서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의 법적형식 - 한 법률가의 서설(序說)적 관찰	141
제Ⅵ부 동구라파의 국민경제에 있어 금융개혁과 경향들	157
1. 생산기금조세	160
2. 은행의 새로운 기능	165
3. 개인저축의 증가	169
4. 사회주의 기업경영에 대한 외국자본가의 참여	177
5. 경향들은?	184
제Ⅶ부 소련 사회주의적 견지에서 본 동서무역	191
1. 마르크스적 이론에 있어서의 세계시장문제	193
2. 소련에서의 대외무역의 기능	202
3. 세계시장의 균열	210
4. 세계시장의 재통합	225
제Ⅷ부 독일의 균열된 경제속에 정상적이고 선린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시발가능성	231
1. 균열된 독일 경제내에서 혼란된 관계에서 나온 부채	235
2. 선린관계의 표현형식과 수단 및 방법	243

연 구 단 의 업 무

제 1 부 연구단의 업무

이 보고서는 1965년 부터 1969년까지의 보고이다. 이 보고서로써 독일통일문제연구단 (Forschungsrat Four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은 제5차로 그 활동사항을 공개보고하게 된다. 1952년 3월 24일에 연구단이 설립된 이래 17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우리들이 빠른 세월중에서도 긴 기간이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국가적통일과 자유에 대한 독일민족의 소망은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하였다.

1949년에 민의에 반하여 설립된 「독일민주공화국」은 처음부터 분할된 형태로 조직하고 발전시킬 것을 꾀하였다. 그래서 집권자 중부독일을 또한 경제적으로 자주 및 자립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동부세력에 강하게 편입되면 될수록 그는 서부독일과 서부세력으로 부터의 경제적인 반을 그만큼 더 초래하였다. 국내교역(지구간교역)의 거래액은 1968년에 아직도 30억달크에도 미달하였다. 그것이 분할되지 아니한 독일에서 자유스럽게 개발될 수 있었고 중부독일이 서부독일의 발전에 준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더라면, 1968년의 국내교역은 그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적어도 4백억달크에 달하였을 것이다. 이 거대한 차액은 독일의 강제분할의 효과를 특히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말하자면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인간생활에서 벽을 치고 있는 것에 대비된다.

이 연구단이 1952년에 설치될 때 연구단은 연방정부로부터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제를 받았다.

큰 전화를 입은 후 현실문제로서 독일민족에게 주어진 양분된 독일의 양지역을 결합시킨다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명백하였다. 그 이후의 여러가지 아주 상반된 형태는 양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점점 더 서로 동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지난 수년간 독일의 실현을 미리 생각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나 또는 전부는 아니지만 만사는 장래의 문제로 그대로 넘겨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연구단에서 취급되었다. 연구단은 적절하게 포기해 버리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일면에서는 망상에 의한 기구로 보게 되고, 타면에서는 보복에 의한 기구로 보게 될 위험을 덤으로 받았다.

연구단에 있어서 우리들은 자유스러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독일인을 다시 결합시키라는 기본법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본질적인 문제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며 또 어떠한 중요한 분야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우리들의 견해를 가져 왔다. 한거름 더 나아가 우리들은 이러한 확신으로 부터 다음의 사실을 축출하였다. 즉 경제적 및 사회적인 분리발전을 위하여는 분할이 불가피하다는 소련의 소망명제에 대한 유효한 답은 독일인들이 공동으로 자유스럽게 그들의 본국의 국내 질서를 결정할 수 있다면 혼란없이, 경제적손실없이, 실직없이 폭력없이, 그 동안에 발생한 것들에 대한 편견없는 평가와 판단에 의하여 결합을 성취할 수 있다는 솔직한 표현속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주의사상은 그의 고유의 합법성과 그의 고유의 울동을 가지고 있다. 그 집행부가 어떤 다른 기본적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선전은 옛방법을 따르게 된다. 외부로 부터의 혼란한 론거도

이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 독일통일당(SED)의 세력권내에 행하여지는 선전문에는 연구단이 성공적인 발전을 망치고 있으며, 사람과 기업을 착취적인 행폭에 내맡기며, 농부를 「보오덴」으로 부터 추방하며, 집행부원들의 직장을 박탈하며, 반동과 복고의 기운을 초래시키고, 독일민주공화국영토의 땅과 사람을 함께 약탈하려고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본인은 1967년 여름에 연구단총회의 일치된 승인을 얻어 그 비방적인 독일통일당의 선전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1967년 7월 4일자 연방정부공보제 70호 참조) 이는 독일통일당의 집행부와 그의 선동기구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 행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중부독일에 있는 그들 즉 천방을 넘어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도달될 수 있으며 또 어떤 고유한 판단에 고집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보상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하였다. 그 당시 연구단을 위하여 말한 것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그래서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부독일에 있어서의 현시의 경제적 및 사회적조직의 기반은 전후에 주민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들에게 강요되었다. 중부독일에 거주하는 1천7백만인의 정치적인사는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통일과정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유스럽게 그리고 방해되지 않고 주장되어야 한다.

통일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한다면 소위 중부독일을 서부독일에 병합시키는 것은 안된다. 점진적이고 서서히 행하여지는 결합이 주시되어야 한다.

양측에서 그렇게 할 의사만 있다면 경제적 및 사회적협력을 이루

고 재 접근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결합에 이르게 될 수 있는 평화적인 길이 있는 것이다. 결코 양지역중의 일자가 택일적방법으로 불공평하게 타자에게 추종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자유민주적질서의 승인 및 명령과 강제에 의한 경제의 거부는 곧 공산당이 지배하는 독일에서 형성된 경제적 및 사회적생활의 모든 구조를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차별하게 거부하고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단은 예를 들면 민족고유의 기업, 농업상 및 수공업상의 생산조합의 존속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숙고하여 왔다. 전문적으로 유능한 집행부원은 물론 그들의 집행직에 그대로 머물어 있을 것이다. 민주적관단에 의하여 편견없는 시찰을 할 때에 참말로 사회적발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제규제는 또 한 승인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3.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이는 아마도 차후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관한 최종적인 규제는 장래에 특히 통일된 민족의 자유로히 표현된 민주적의사에 맡겨져야 한다. 오늘날 많은 형식의 공유·사유 및 공동결정과 이들의 결합형을 이용할 수 있다. 소유권이 박탈된 소유자에 대하여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행하는 보상은 우리들에게는 자명한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서부독일과 중부독일의 보다 더한 접근, 공동작업 및 결합을 위한 여러가지 가능성 단체 및 국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실행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1967년에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행하였던 경제상·교통정책상·학문상 및 문화상의 공동작업에 관한 제안에 언급함으로써 속하다.

사람들이 다시 서로서로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사가 중요하다.

동부백림에서 오늘날 이러한 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사가 활발하게 되고 통용하게 되면 그 때에는 실제로 양제도의 상반을 극복하는 해결책과 서서히 통일된 독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래의 규제를 위한 길을 트이게 하는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질서의 장단점에 관한 원칙상의 토론만으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일 사람들이 그러한 토론만을 계속하면 독일의 양지역간의 금은 흐려지기커녕 도리어 더 뚜렷하게 될 것이다. 모든 독선의 피안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서히 그 추구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의 실제적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에 있어서 연구단은 양독일지역의 경제와 사회의 통합을 위한 제안이 되는 수많은 결의를 하였다. 이들 결의는 정치적사정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면 언젠가는 통일을 구체화하게 될 과정을 위한 재료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인 준비작업을 할 때에, 연구단은 자유민주주의의 제원칙에 입각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의 통일을 공산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을 사선에 개혁하는데 의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동부백림에서 가지고 있고 공표하고 있는 생각과는 확실히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통일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조언을 기술하였던 종전의 관예적인 부분이 성략되어 있다. 이미 1911년부터 1965년까지의 지난 보고기에 결합에 관한 경제, 사회적문제의 논리적고찰은

상당히 진척되었었다. 그 작업은 금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점 즉 예를 들면 수공업회의소, 주택건설조합, 약간의 사회보장의 특수문제, 그밖에 산림관리 등에 관하여 보완하였다. 이러한 연구단의 논리적인 준비작업은 사람들이 이를 구속력있는 완결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릇 이해한 것이 될 것이다.

이의 본래의 뜻은 실제적해결책과 대안을 위한 준비적사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언젠가 실제적인 통일작업을 하게 된다 하여도 미해결성과 일련의 실용적인 방법이(선별되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양지역의 결합이 성급하게 또는 서서히, 불과 수개의 단계를 거쳐 또는 많은 단계를 거쳐, 여러가지 종류의 중간해결과 타협으로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되게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연구단은 언젠가 그것들이 국가적욕구로 부터 국가적현실로 변하여 질 수 있다면 공업경영·농업·재정·사회정책과 사회질서에서 나타나는 제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연구단은 그 결합시에 수많은 어려운 실제적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를 명시하였다. 독일의 일지역이나 양지역에서의 사정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면 연구단의 종래의 태도는 과히 큰 수고없이도 새로운 국면에 순응될 수 있다.

확실히 미래가 새로운 인식, 새로운 발전 및 새로운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장차는 끈임없는 시찰과 그때 그때의 기본적인 태도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기 위하여는 장차 중부독일의 현실이 끈임없이 시찰되고 분석되고 그리고 서부독일의 그것과 비교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단작업은 전독일의 정세과

과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으며 또 현재도 그러하다. 동부백림으로 부터의 공식발표와 신문보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부독일에서는 악의에 차고 왜곡된 선전의 막뒤에서 연구단의 조사, 확인 및 사려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정밀하게 시찰된다. 연구단은 이러한 현상을 환영하며,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부터 이 문제에 관한 발표가 있으면 그 발표는 연구단에게 자기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심사를 추후로 할 수 있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단은 모든 발표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다.

연구단은 그의 조사의 기반을 중부독일에서 행하는 공표에 두고 있다. 매년의 통계연감외에 특히 전문잡지와 일간지에 의한 발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연구단의 작업의 기초는 중부독일에서 발생하였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자료이다. 이러한 출처는 확실히 중부독일에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집행적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결과를 아주 과소하게 평가하는데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중부독일에서 여러가지 결점과 불충분한 점에 관하여 빈번히 공개비판이 행하여진다는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 비판은 아주 일반적으로 공식화되어 있거나 또는 완전히 개개의 경우에 관한 것이다.

부족스러운 점은 물론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계층과 방면에 있어서의 고유한 발전에 관한 필연적이고 공개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이다.

연구단은 중부독일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에 도달하려고 끈임없이 노력하여 왔다. 연구단은 소극적인 현상을 공표함을 주저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성과를 시인하고 있다.

연구단이 행하는 진단은 결코 일방적인 것도 아니었고 편파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그 진단

은 완전히 정신적 자유속에서 일하고 있는 명예직 및 전임직의 공동작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그들의 활동은 기타의 경우에 학문상의 조사를 할 때에 그러하듯이 공지되어 있는 것과 공적효력이 있는 것 밖에서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중부독일에 있어서의 경제적 및 사회적발전에 관한 객관적판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사의를 그만큼 더 그들이 받을만 하다.

연구단의 그 진단작업은 그의 학문적 특성과 함께 비교적 장기성을 부여한다. 특히 활동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분석 및 「중부독일에 있어서의 경제와 사회」라는 간행물에 나타나 있는 제조사에 관하여 그러한다. 이 작업은 학술서적상의 중요한 불비를 메꾸어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학문과 실제의 강력한 욕구에 순응하고 있다. 독일의 양지역이 분할되고 있는 한 이러한 분석은 없어서는 안된다. 차후의 통일과 관련하여 그 분석이 아주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독일의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및 사회적발전을 시찰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연구단에 부과되어 있는 바와 같은 작업의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서부독일에서의 그것과 비교해서 중부독일에서의 제반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또 예측컨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점

2. 사회경제학적관점에서 접근·협력·결합 및 통일에 관하여 어떠한 가능성이 제시되는가 하는 점.

익커한 작업으로 인하여 전독일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영역이 협소하게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본래 위배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즉 「자유에 의한 통일」(혹 자는 「통일에 의한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을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이룩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언젠가는 결정하여야 할 독일민족이 가지는 의사가 그것이다. 전독일의 정부와 결정의 자유로써 자유선거에 의한 국회를 설립하게 되는 이상적인 경우외에 다소 오래 계속되는 중간국면과 단계적 발전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병존하며 부분적으로 공존하게 될 가능성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미 연구단은 중부독일을 고립된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동부에 위치하는 구주제국간에 형성된 COMECON 내부에 존재하는 상호연결 및 당시의 독일통일당집행부의 특별히 열렬한 가입 정책으로 인하여 중부독일을 그의 동부 및 남동의 COMECON 당사국과 비교적 크게 관련시켜서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복잡한 관찰만이 신뢰할 수 있는 현실에 적합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고로 연구단은 구주의 공산주의국가들을 끈임 없 시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들 국가에는 이질적인 경향과 발전이 존재하며 이것들이 조만간에 교의상 또는 실제상으로 중부독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에 대하여도 전독일적견지에서 항상 주의력을 돌려야 한다. 필연적으로 지역과 사들에 관한 연구범위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고 독일정책을 개별화함으로써 이 제 5차활동보고서에는 새로운 부분이 삽입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보고서의 새로운 편성은 종래의 보고서와는 다르다. 종래 총회의 결의와 각위원회

위원의장의 보고를 내용으로 하였던 2개 부분에 갈음하여 1개의 다른 새로운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 새로운 부분은 대립하고 있는 제도상의 조직의 병존, 그의 비교 및 그의 연결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구적인 작업의 집필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그들의 기고를 집필한 몇몇의 연구회원들이다. 연구단은 이러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의 발전과 일치해서 그의 작업을 진행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단은 1964년 이래 「중부독일에 있어서의 경제와 사회」라는 간행물을 출간하고 있다. 이 보고를 할 때에 이미 다음의 책자들이 발간되고 있다.

「중부독일에 있어서의 농업정책과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그의 성과」

Edgar Tummeler 박사

교수 Konrad Merkel 박사

“ Georg Blohm 명예박사

「중부독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민주적 중앙집권제에 관한 쏘련의 지배원칙」

Hannelore Hamel 박사

「시장경제에로의 도상에 있는 동방국」

교수 Bruno Gleitze 박사

“ Karl C. Thalheim “

“ K. Paul Hensel “

“ Rbudorf Meimberg “

「 중부독일에 있어서의 산림관리와 목재관리 」

Georg Blohm 명예박사(의 서문과 함께)

계속적인 책자가 준비중에 있다.

연구단의 조직은 이 보고를 할 때에 크게 변동된 바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능하게 된 작업의 효율화 경향에 따라 일련의 작업군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농업위원회내에서는 「 농업구조 」 「 농업상의 경영경제 」 「 농업상의 훈련과 상담 」 「 경지기술 」의 작업군이 「 농업경제 」의 작업군으로 통합되었다.

교체위원회에는 「 항공 」의 작업군이 신설되었다.

전 본성국장 Hanns Gareis 박사가 농업위원회의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그의 후임자는 Georg Blohm 명예박사가 되었다.

경제질서와 법질서간에 존재하는 긴밀한 연관성때문에 연구회원은 백림자유대학교의 법률학교수인 Klemens Pleyer 박사가 증원되었다.

연구단의 작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되어 왔다. 많은 것은 이미 종결지울 수 있었고, 어떤 것은 계속되어야 했고, 어떤 것은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연구단의 형태는 특히 목전의 작업은 물론 미리 생각하여 행하는 작업도 사회경제적범위를 넘는 그밖의 작업분야 즉 정치적 및 사회적 구조와 경향, 교육제도와 양성제도, 법과 기타의 것등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중부독일의 경제적 및 사회적사정에 관한 끈임없는 학구적시찰과 분석은 특별한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독일통일문제연구단 단장

연방의회의원 Johann Baptist Gradl 박사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 과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 과의 비교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과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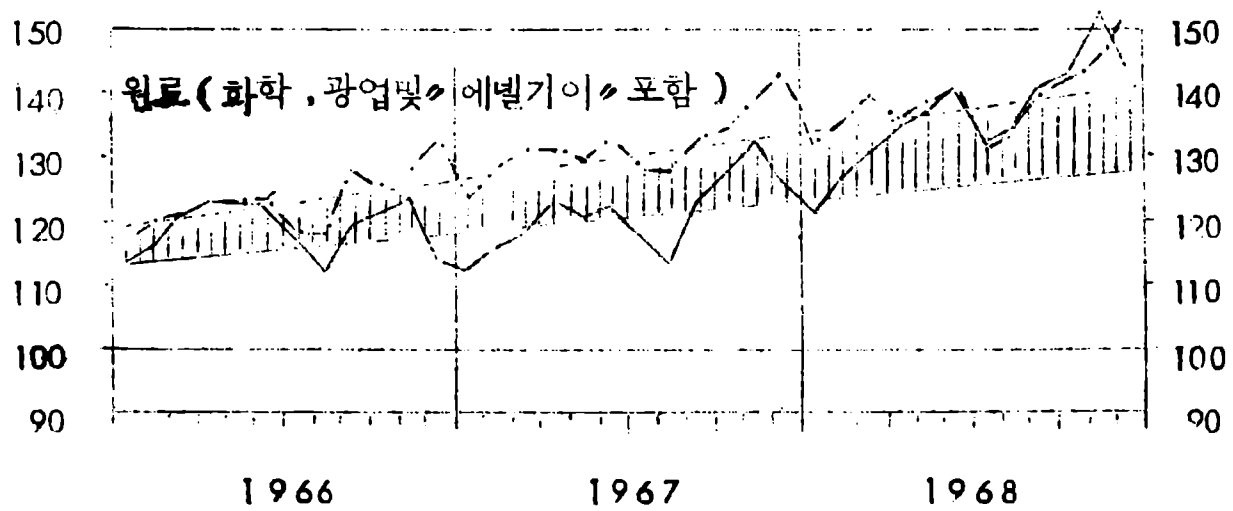
1. 공업생산

금일의 독일민주공화국의 영역은 1939년에 있어서는 금일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에 비하여 더 큰 공업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구에 비례한 공업상의 순생산이 더 높았었다. 그 당시에는 공포된 바와 같은 동·서의 격차가 있었지만 전후 발전에 있어서는 중부독일에 있어서의 취업자에 비례한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서부독일에서 보다 아주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격차의 역전(逆轉)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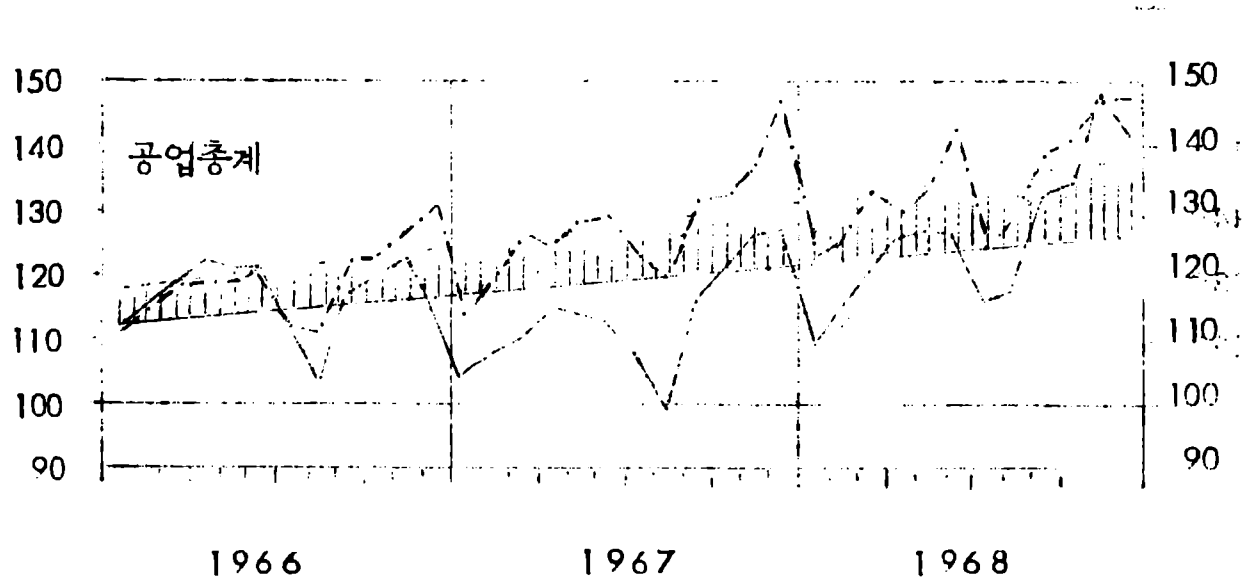
1966년 - 1968년에 있어서의 독일의
양 지역의 공업생산포 (1963=100)

— 서부독일의 총생산 - - - - 중부독일의 계획예정액
- - - - 중부독일의 총생산 ||| 계획산정의 오류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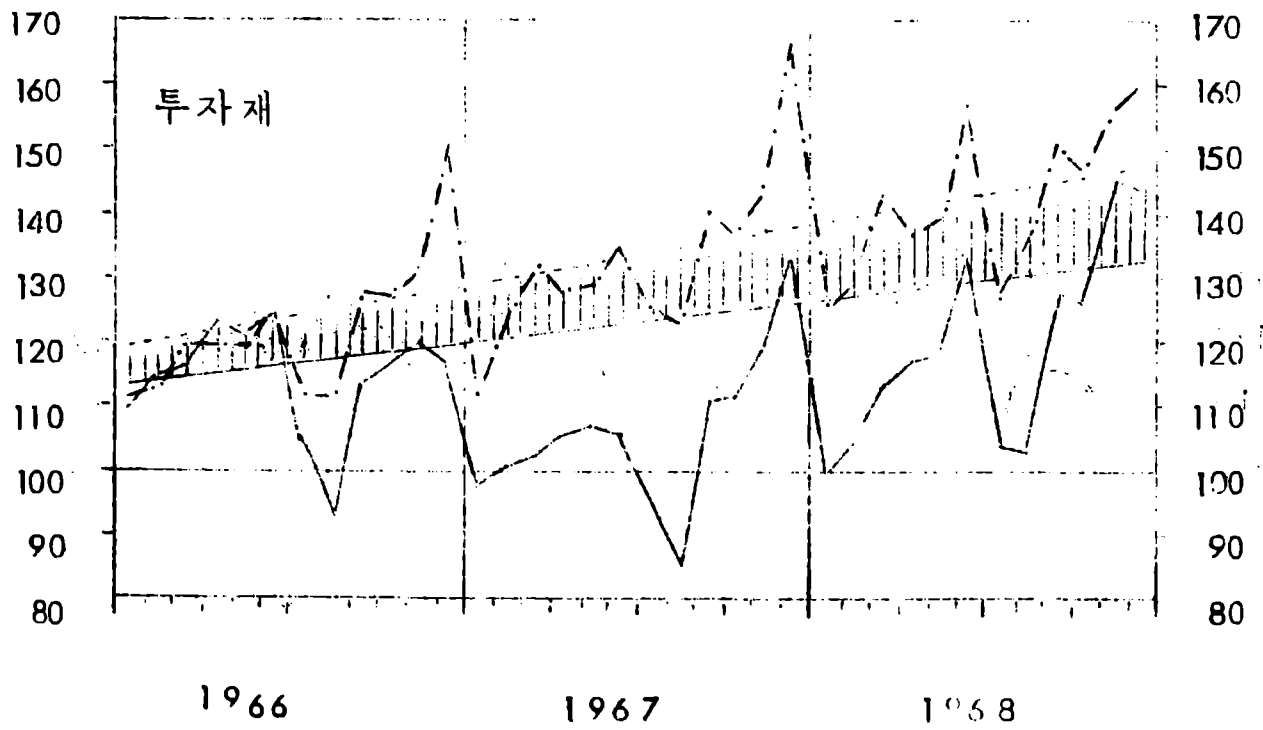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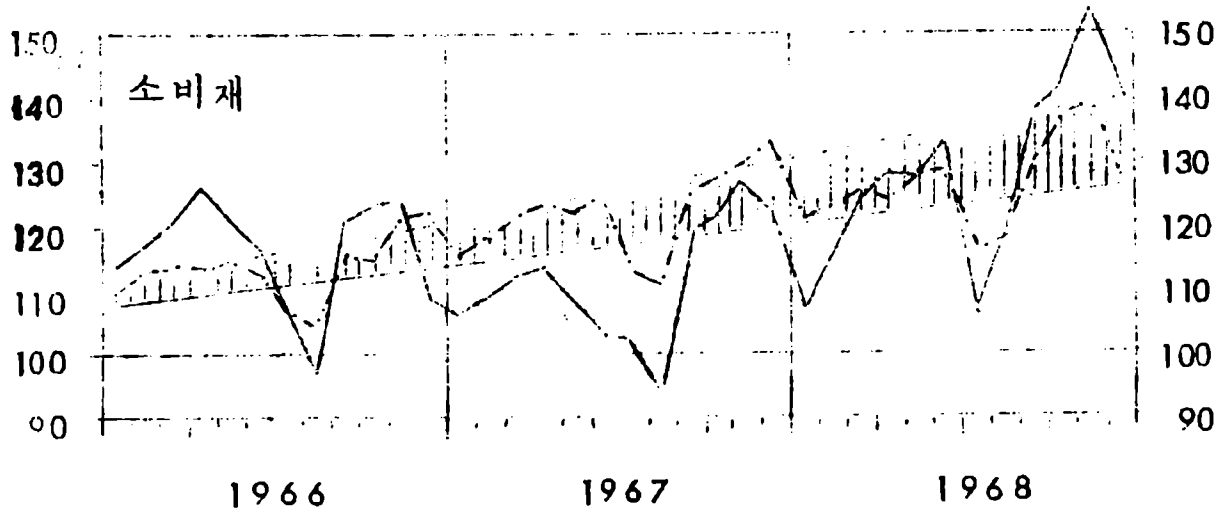
도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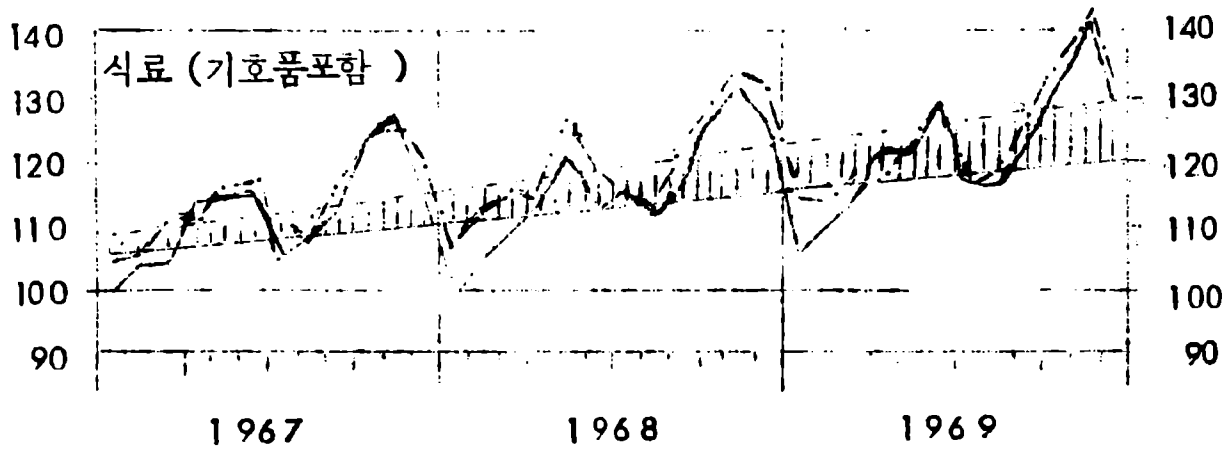
도 표 3



도 표 4



도 표 5



1938년 (= 100) 을 기준으로 하여 1965년까지의 인구에 비례한 공업상의 순생산의 동수준은 중부독일에서는 173에 달하였고 이에 반하여 연방공화국에서는 207에 달하였다.

1966년과 1967년에 이러한 격차가 현저하게 완화되었다는 것은 중부독일 자신의 뛰어난 공업상의 실적의 덕택이 아니고 연방공화국에서 인구수에 따르는 공업상의 순생산지수가 1967년에 202 (1938 = 100)로 하락한 심한 경기변동의 덕분이다.

그런데 이미 1967년 후반기에 나타났던 서독의 '새로운 경기상승'은 1968년의 이 순생산지수를 다시 224로 밀어올렸기 때문에 종전의 격차는 1968년에서 1969년으로 바뀔 무렵에 '다시 작용'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순생산을 기초로 하여 달성된 11.5%의 성장율은 동년에 중부독일에서 도달된 6%의 인구비례 공업총생산의 증가율에 비하여 거의 2배가 되는 것이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시기의 중부독일에 관한 공식 자료에 의한 계산에 의하면 총 20%의 공업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총생산치에 의거한 지수나 성장율의 계산은 문제점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생산치는 순환생산 및 중간생산이 생산과정을 최종적으로 이탈하기 전에 그것이 다른 공업경영에서 다시 가공되는 빈도에 따라 수많은 2중계산 및 중부계산을 포함한다.

비교할 수 있는 공업판매가격을 대상으로 총생산 및 최종생산의 발전에 관한 중부독일에서의 통계상의 조사는 국내 및 외국무역에서의 경영체 사이에서 증대되는 분업으로 인하여 총생산이 소위 최종생산보다 급속히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관찰기에 있어서의 공업생산의 실제적 성장은

공업총생산의 발전에 관한 관(官)의 통계상의 보고 및 공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보다 과소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매년 달라지는 총액계산의 왜곡(歪曲)의 정도는 참말로 손쉽게 확인할 수 없다. 생산은 반듯이 품목 품질 또는 계산일에 알맞게 행하여 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면 1966년과 1967년에 서독 경제에서 일어난 심한 경기파괴에도 불구하고 공업생산에 있어서의 동·서의 격차는 앞으로 현저하다는 것을 확실하다. 타면에 있어서는 중요생산물이 결핍되고 있는데도 중부독일의 저장품은 총생산에 대한 비례를 초과한 높은 비율이었다.

과잉재고품은 경제계획자의 두통거리다. 1966년 9월말에는 중앙지역의 공업에 있어서 정미(正味) 20억 마르크 가격의 과잉재고품이 있었다. 중앙지역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기업분야와 ◦가공기계조립 및 선박 건조◦의 기업분야에 있어서는 1967년의 최초의 10개월 동안에 기제품(既製品)에 관한 생산증대의 거의 반이 저장되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생산품들은 국민경제의 순환에서 적어도 우선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저장은 현저한 실용감소를 유발한다.

생산발전과 비교해서 1967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재고품의 비교적 완만한 발전경향은 1968년에도 계속되었지만 1969년 중엽에는 총저장품에 관한 과잉재고품의 특분(特分)이 9%에 달하였다.

다른면에 있어서는 방직제품 및 기성품에 대한 국민의 증대하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수요에 대하여 공업의 아주 여러가지 생산단계의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 경영이 조직적인 계약을 받게 되어도 여전히 많은 원료 반제품(半製品) 및 기제품이 그 경영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다.

2. 노동생산력

중부독일의 통계에 의하면 1967.년중의 공업에 있어서의 취업자에 비례한 노동성과는 1963년에 비하여 27%가 높았다. 가용(可用)의 자료에 의하여 우리는 실제로 이행된 노동시간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취업시간에 비례한 노동생산력의 증가는 동일한 정도의 높이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생산력의 조사를 위한 측정기준은 서독식 방법에 의한 순생산 대신에 변동없는 통계가격으로 계산된 총생산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1964년부터 1967년에 이르는 시기에 관하여 계산된 공업상의 노동생산력의 증가율 27%는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증가율의 범위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이 기간중 취업시간에 비례한 노동생산력은 서독의 공업에서 달성된 25%의 생산력 증가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962년과 1963년에 20%이상에 달하였던 중부독일에서의 절대적인 생산력 미활용분(生産力未活用分- Produktivitätsrückstand)은 계속하여 증대되었다.

중부독일에서의 비교적 저조한 생산력수준의 이유는 특히 가공공업에 있어서의 생산기구의 노후 새로 붙여진 많은 부속물에 대한 비교적 저조한 생산력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대량제작 따라서 생산과정의 자동화를 한 제지우고 있는 기계품종(既製品種)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생산의 분산, 아직도 충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건축방식(輕建築方式)의 가능성 및 수익성없는 생산을 자

신의 재량으로 중단함이 허용되지 않는 동부 블록에의 수출의무등에 있는 것이다.

노동생산력은 공업에 있어서는 결국 언제까지나 고도의 부인의 참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지난날 이러한 부인의 참여를 용이하게 높일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참여율은 1967년에는 공업상의 피고용인의 41.1%에 달하였었다. 서부독일의 공업에 있어서는 부인의 참여율은 28.9%에 달하고 그율은 10년 이래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노동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부독일의 조직정책은 성장시키기로 결정된 생산물의 우선적인 생산이 둔제되고 있는 분야 내부에 있어서의 생산물구조의 변동을 꾀한다. 이러한 생산물 및 생산물군(群)의 비율은 개개의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대체로 그때의 생산고의 10%와 30%내지는 40% 사이에 이를것이다.

산업합리화를 위한 자재 수입은 공업·생산 성장요소보다 더욱 강화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동독의 수입구조는 과거 수년간에 이미 현저하게 변모하였다. 금속가공 공업생산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4.4%(1960년)에서 30%(1967년)으로 상승하였다. 이 생산품의 가격은 시가로 환산해서 13억 Valutamark에서 40억 Valuta 마르크로 상승하였다. (Valutamark = 서독 DM으로 환산하면 0.95 DM) 동독의 투자용 자재분야의 수출용량은 1960년~1967년간에 47억에서 77억 Valuta 마르크로 팽창하였다. 이것은 투자용자재 수입과의 비례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과거와 같이 압도적인 우세는 못한다.

생산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계 장비 산업합리화자재등의 공급국으로서 소련은 최근 수년간에 전에 비하여 더 강한 존재로 등장하였다. 1969년도 통상협정에 따라 소련은 2,000개 이상의 공작기계를 공급하게 되었다.

구 분 도	동 독		서 독	
	(Brutto)		종업원 1인당 (Net)	
	1963 = 100	Zw - Rate (%)	1963 = 100	Zw
1963	100	4.4	100	
1964	107.2	7.2	108.4	
1965	113.9	6.2	111.8	
1966	120.5	5.8	114.4	
1967	127.8	6.0	119.4	

Brutto 총수입

참조 : 동독 통계연감 1967

Netto 세금공제한 실제수입

Zw - Rate 성장비율

서독통계연

공업 종업원 일인당 생산량 비례

1963년 = 100

독 Zw - Rate (%)	서		독	
	종업원 1인당 (Netto)		취업시간당 (Netto)	
	1963 = 100	Zw - Rate (%)	1963 = 100	Zw - Rate
4.4	100	4.0	100	5.2
7.2	108.4	8.0	108.4	8.4
6.2	111.8	3.5	113.7	4.9
5.8	114.4	2.3	117.8	3.6
6.0	119.4	4.4	125.0	6.1

참조 : 동독 통계연감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 1968

Page 178)

서독통계연감 (Statistische Jahrbuch für die B

1968. Page 217)

3. 수입증가

서독공업에 비하여 동독공업에 있어서 종업원 1일당 노동생산력이 저조하여 노동임금도 저렴하다.

동독에 있어서 완전 고용된 취업자의 월평균 수입은 1963년에 613 마르크에서 1967년에 680 마르크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율은 공식집계에 의하면 노동생산능력 27.8% 상승에 비하여 10.9% 상승이다.

노동생산능력 성장을 과대평가 하였다고 고려하여도 평가기준을 공업총생산가 (Brutto produktionswert) 에 두었기 때문에 완전 고용인의 총노동수입 (Bruttoarbeits einkommen) 에 비하여 성장율이 현저하게 빠르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독공업계에는 노동생산능력의 발전과 평균 수입의 차이 (die Diskrepanz) 가 본 논문작성을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한 기간중에는 없었다.

서독에서는 이 기간중에 비단 완전고용인 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인의 평균 총 노동수입이 670 DM에서 887 DM으로 상승하였다 생활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19%의 상승이다.

동 서 양 독 일 공 업 종 업 원

	동 독			
	공 산 (公算)	실 계	상 승	년 간 Z w-Ra te(%)
	동독 마르 크	동독 마르 크	1963=100	
1963	613	613	100	-
1964	631	630	102.8	2.8
1965	655	654	106.7	3.8
1966	668	667	108.8	2.0
1967	680	680	110.9	1.9

생 활 비 지 수

	동 독		서 독	
	1963 = 100			
1963	100		100	
1964	100.2		102.3	
1965	100.2		105.8	
1966	100.2		109.5	
1967	100		111.1	

수입 증가 비교 (1963~1967)

서 독			
공식 추산	실 제 상 승		
서독마크	서독마크	1963=100	년간성장율 (%)
670	670	100	-
733	717	107.0	6.0
803	759	113.3	5.9
859	785	117.2	3.4
887	798	119.1	1.7

수입증가율이 Rezessionsphase () 동안에 허전하게 약하다 하여도 1964년~1967년 기간중에 서독 공업 종업원 매인당 평균 총취득 (Bruttoredienst)은 동독 공업 완전고용인의 평균취득의 거의 2배가 높다.

전면에 제시한 도표에 따르면 동서양독일의 노동취득 공식비교(주)에 나타난 결과는 1967년도 동독공업 노동자는 서독에 있어서 보다 약 23% 정도 총취득액이 저하하다. 순소득 (Netto) 면에서 본다면 25%나 적은 편이다. 설사 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사회적 공과금 등등의 명목으로 된 공제액을 계산서 항목에 넣고서라도 그렇게 된다. (어린아이 2명인 4인 가족 기준 가장이 혼자 벌 경우)

여기에다 동독 마르크의 구매력이 서독 마르크의 구매력에 비해서 약 15% 정도 떨어지니까 피고용인 측에서 볼 때 실제수입 비교는 동독노동자가 그만큼 떨어지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구매력 면에서 본다면 동독 노동자 수입이 서독 노동자 수입의 약 3/1 정도 떨어진다.

동독가정의 생계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두가지 불리한 요소가 액면 그대로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있다. 그 이유는 동독의 가정주부 3명중 2인은 가정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한편 서독의 경우는 다만 3명에 한 사람 꼴이다.

(주)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동일하게 표시하였다는 뜻이다. 실제 통용가치는 4:1이다. 여기서는 숫자를 1:1로 표시했다는 의미다.)

최근 다시 서독내에 경기가 상승하여 양독일간에 수입상승 면에서 동서 격차가 더 커져가고 있다.

4. 노동력 개산 (勞動力 概算)

1964년 12월 31일 실시한 국세조사에 의하면 동독의 인구는 1천 7백 만이며 그중에 남자가 770, 여자가 930 만이다.

직공수는 구세조사 당일 8,345,000 명으로 나타나 있다 (동독 통계년감 1967년도, 527 Page 참조)

9월 30일 현재 국세조사에는 당시의 공무원수 통계중에서 당년 (1964년)에 334,000 명의 취업자가 부족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계절에 따른 영향이라고도 생각되지만 동독의 통계에 지적되지 않은 인원 에 대한 서독측의 추산과 부합되는 바가 있다. 즉 동독 인민군 (die Nationalen Volksarmee) 과 경찰 소속 인원, 조합 또는 당 조직 종사원들이 이 통계숫자에서 빠진 것으로 추산할수 있고 따라서 정부 통계에는 주로 남자 수가 부족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수궁이 가는바이다. (약 350,000) 취업비율은 49.1%이며 서독의 경우 1964년에 45.4%, 1967년 44.7%이다.

노동가능한 연령의 약 85%가 동독에서는 노동 또는 실습을 하고 있다. 노동년령은 남자 65세까지 여자 60세까지이다. 서독에서는 노동가능 연령의 국민을 동독식으로 측정한다면 약 67%가 취업하고 있다.

동독내에서 취업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부녀자 노동율이 많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노동가능 연령의 부녀자 중 $\frac{2}{3}$ 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그 절반에도 미달한 형편이다. 동독에서는 은퇴할 연령의 남자 셋중에 하나, 여자 7명중 한사람이 여전히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숫자상으로 본 노동인구 부족정도는 동독이 모든 공업국가들 중에서 최선단을 걷고 있다. 이점에서는 소련을 능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동독에 있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전적으로 노동생산력의 증가에 의존하는수 밖에 없다. 그것은 노동에비력까지 전반적으로 총동원 되었고 차후 수년간에 취업인구 증가수는 극히 적을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까지의 인구증가율에 관한 정부추산에 의하면 70년 대까지 노동가능 연령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을것이라고 한다. 그간에 인구는 전체적으로는 완만하기는 하나 계속 증가할 것이나 정년 퇴직하게될 인구수가 1972~73년에 최고점에 달하여 총인구의 20.2%에 달할 것이다.

서독에 비한다면 동독의 노동력량은 현재 비교적 크다 하겠으나 여전히 그구조가 불리하게 되어있다. 동독에서는 취업자의 17%라는 높은 비율을 일차산업분야 (Primärbereich)에서 차지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독측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주로 투자자재로 충당하여 온 경향분야에 있어서

인력에 의존하는 도가 지나치다 하겠다. 동독광산에서 소요된 인원은 서독 광산에서 종사하는 인원의 반 이상이나 된다. (1967년)

농업 광업 분야에 종사하는 수를 감축시키는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동독 구조정책 (Strukturpolitik) 의 유각에 달려 있는 듯 하다. 일차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노동력감소는 지금까지 서서히 실현되어가고 있다.

농업발전 장기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저하게 적은 종업원 수로써 더욱 신속한 생산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현대적 산업의 식물·동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0년도 까지 달성목표로 설정한 것은 현재 종업원수를 반감하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여부 또는 종업원 일인당 노동 생산량이 서독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등등은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갈탄광업에 있어서는 새로 세운 구조정책의 결정과 관련하여 1967년에 처음으로 종업원수 3%의 감퇴가 시작하였다.

제 2차 산업분야 (Sekundärbereich) 내에 있어서는 현저한 종업원구조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동독의 국민경제를 총체적으로 능력과 신속성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몇몇산업분야를 위하여 종업원구조 변화가 생겨야 한다. 동독의 경제관리는 이러한 산업분야의 발전에 의해서 더 빠른 성장템포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일정한 공업분야에 있어서는 소기의 합리화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지구에 배치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급 임의로 취역시킬려고 한다. 그러나 재정적 이유에서 원칙적으로는 초지역적인 평준화를 하고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새로 배치되는 노동력을 위하여 주택을 건립하는것 그에 뒤따르는 시설 설비는 과대한 자본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동독 건축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서독 건축업에 있어서 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다. 한가지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관리인원(管理人員)이 서독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수년간에는 전체종업원의 수를 약 12,300명 정도 감축시켜야 할 형편이다. 이에 반해서 동독 건축업에 있어서는 전문숙련공의 수요가 증가되어 가고 있다. 신문에 게재된 소수의 구인란에 보면 건축목공, 조립숙련공을 구하는 대기업체의 광고가 눈에 띈다. 구인광고가 적은 이유는 노동력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취해진 귀제 때문이다.

건축분야에 노동자 수요가 많은 것을 충당하는 길은 농업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서 노동력을 이양시키는 것이다.

동·서 독일 취업자구조 (건설공 포함 1967년도)

	동	독	서	독	동 독
	1000 단위	%	1000 단위	%	서독=100
제 1 차 산업 이중에서 농업·임업	1,447	17.0	3,120	11.9	46.4
광업	194	3.3	378	1.4	51.3
제 2 차 산업 (공업·건축업· 수공업)	3,738(1)	43.8	12,004	45.6	31.3
제 3 차 산업 (서비스업·교통 상업 행정원)	3,341(2)	39.2	11,168	42.5	29.9
총 계	8,526(3)	100.0	26,292	100.0	32.4
인구 수	17,090	-	59,873	-	28.5

주(1) 관보통제에서 누락된 인원 추산 50,000 명 포함

(2) 군·경 327,000 명 포함

(3) 관보통제에서 누락된 인원 추산 357,000 명 포함

제 3 차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1964~1967 년 간의 통계에 의하면
종업원수 증가는 생산업 (제 2 차산업) 에 있어서 보다 더 큰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제 3 차 산업 분야라 함은 교통 무역 이외에
도 은행 보험회사 주택기구 국가기구 등을 포함시킨것을 말한다.

공업회사 (Industriegesellschaft) 의 증가경향에 호응하여 특
히 서비스분야의 성장증가 추세는 계속할 것이다. 그 한가지 예
로서 장기계획기간 중에 의사의 수는 1965 년에 인구 10,000 명
에 의사 11 명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15 명으로 증가하였다.

동독의 제 3 차 산업분야의 발전은 서독의 그것과 동등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 조상으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독 국민경제에 있어서와 같이 은행 보험회사 여행사 호텔업
부동산부문 등에 의한 국민복지가 상승하여 발생한 서비스업 발달
의욕 같은 것은 아직 동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동독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이 기술적면이나 합리화 면에서
위떨어져 있는 까닭에 점차 증가해가는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비교
적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동독에 있어서의 외국인 노동자 수에 관하여는 정부통계는 일체
제제되어 있지 않다. 동독내의 신문이 간간히 보도하고 있으나 완
전한 평가보도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총수가 수만명정도
에 불과하며 주로 폴란드, 헝가리 출신이고 체코, 유고슬라비아 출
신이 소수 있을 정도이다.

서방국가 출신의 노동력은 거의 동독에서 취업하고 있지 않은 실
정이다. 그 이유는 동독에 대한 투자가 극소하다는 점과 한편
으로는 동독의 생활-노동사정에 대한 서방측 기업가들의 인상이
좋지 않은 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포랜드, 체코슬라비아로 부터의 입국자 수는 미지수로 남아 있
다. 그들은 국민통제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자
통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체코, 포랜드 출신 외국인 취업
상황은 여관업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라 변동이 생긴다.

동독내에서의 취업 문제는 자연 노동시간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

1966년에 비로서 6.7백만 취업노동자들에게 주당 5일 노동제
가 실시되었으나 우선은 2주에 한번씩 적용되었을 뿐이었다. 그중
3백만은 동시에 주당 노동시간을 45 또는 44시간으로 단축하였다

1967년 8월 이래 일률적인 주당 5일노동제가 실시되고 노동시
간은 일반적으로 주당 $43\frac{3}{4}$ 시간으로 정하고 노동자를 위하여는
3부제 또는 일관작업제도로 해서 주당 4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한
편 연중 휴가를 최소 15일로 높였다.

동독의 보고에 의하면 생산노동자의 노동시간수에 관한 첫 조처에
의해서 국민소유 공업에 있어서 1966년에는, 1965년에 비하여
4백만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소유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5백만명에 대한 비율로 본다면 평균 월(月) 1.5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에 불과하다

두번째 주당노동시간 단축조치에는 법정휴일 5일의 폐지와 법정휴일 2일(예수 수난일과 성심강림절)에 야간작업을 하도록하는 부대조건을 결부시켰다. 다만 1969년 이후 부터는 내각회의 지시에 따라 법정휴일 2일(수난일, 성심강림절)에 대하여는 야간작업이 전액 지불로 환원하게 되었다.

이 새로 정한 노동시간규정에 의해서는 다만 주당 5일 노동제에 따라 연간 노동시간수를 새로 달이 배당하였을 뿐이다. 즉 말하자면 노동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공업에 있어서 전과 마찬가지로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단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독에 있어서는 최근 10년간에 주당 평균 실행노동시간은 공장노동자의 경우 2시간 즉 5% 감소되었다.

현재 <협동>(Macht mit)라는 붓토를 내걸고 도시, 행정지구 비화를 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동독>전국 20주년 기념을 위한 예비활동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흔히 있는 돈번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자유시간에 하고저하는 국민의 요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위 필요불가결한 건설작업완수를 위한 자발적 봉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비공식 노동시간에 가산되어야 할 성질의 것들이다.

동 독 내 에 경 영 분 야 별 취 업 자

	1963	1964	1965
제 1 차 산 업			
농업 · 임업 · 수산업	1,299.1	1,313.9	1,301.1
광산업	199.2	201.5	199.6
합 계	1,498.3	1,515.4	1,500.7
제 2 차 산 업			
공업 (광산제외)	2,666.6	2,686.2	2,717.9
건축업	495.7	480.2	489.2
수공업	419.9	427.3	424.0
합 계	3,582.2	3,593.7	3,631.1
제 3 차 산 업			
교 통	440.0	443.3	437.4
우 편 · 통 신	135.9	138.2	138.2
상 업	891.6	909.0	927.6
기 타	1,397.0	1,411.7	1,436.9
합 계	2,864.5	2,902.2	2,940.1
총 계	7,945.0	8,011.2	8,071.8

야 별 취업자

통 계 (전 습 공 포 합) (1000 만 단 위)

조 사 일 : 9 월 30 일

	1965	1966	1967	1963 대비한 1967 의 변화
				7
9	1,301.1	1,270.4	1,252.4	- 46.7
5	199.6	200.4	194.3	- 5.0
4	1,500.7	1,470.8	1,446.7	- 51.6
2	2,717.9	2,736.2	2,766.9	- 100.3
2	489.2	488.3	502.2	+ 6.5
3	424.0	426.9	433.2	+ 13.3
7	3,631.1	3,651.4	3,702.3	+ 120.1
3	437.4	435.0	437.1	- 2.9
2	138.2	143.0	141.0	+ 5.1
0	927.6	928.2	932.3	+ 40.7
7	1,436.9	1,474.3	1,503.8	+ 106.8
2	2,940.1	2,980.5	3,014.2	+ 149.7
2	8,071.8	8,102.5	8,163.1	+ 218.1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동서
양독일간의 교역관계

보고논문 작성자

게오르그 브르흐
(Georg Blohm)

양단 독일 상호간의 경제관계는 미약한 편이며 독일인들 사이에서만 교역하는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 동서 양 독일의 외국무역지수는 도표(I)에서 수출 수입의 대조와, 동구각국 및 후진제국의 관여도를 개관할 수 있다.

서독의 외국무역고는 수출 수입 면에서 1966년도에 1,553억 DM이며 1967년도에 1,572억 DM로서 1967년도의 수출초과는 약 160억 DM이다. 이에 반해서 동독의 외국무역고는 양독일 상호간의 실적이 1966년에 242억마르크(동독마르크)이고 1967년에 257억마르크이다. 1967년에는 비교적 약소하나 7억 8천 4백만 마르크의 수출초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동독의 인구가 서독에 비하여 소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여도 역시 대외무역은 서독에 비하여 열세임은 명백하다. 서방측 국가들과의 수출초과액의 부족현상은 무역관계 육성을 위한 자유처분할 수 있는 외환 부족이 광범위하게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서독의 대외무역 총액 중에서 동구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액수는 1966년에 55억 DM, 1967년에 65억이며 총무역고의 4%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서독의 대후진국 무역 실적의 50%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다. (1967년 : 169억 DM) 또한 구주경제공동체(EWCA) 각국을 상대로한 대외무역 실적 610억 DM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서 공동국가들과 거래한 동독의 대외무역고는 1966년에 197억 마르크, 1967년에 210억 마르크에 달하며, 그것은 대외무역 총액의 81%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 42%는 소련과의 거

래분이다.

동독과 후진국 간의 교역은 전체 무역량의 5%로서 비교적 근소한 편이다. 양독일은 비단 정치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현저하게 대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내 교역 즉 양독일 간의 상품거래는 도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6년의 무역총액 29,7억 DM으로 최고점에 달하였으나 1967년에는 27,5억 DM으로 하락하였다. 이 금액은 서독의 대외 무역 총판매고의 1.7%에 불과하나 동독의 경우는 그 대외무역 총판매고의 10%에 해당한다.

도표(1)

동독 서독일의 대외무역 상황

서독연방국 —백만 DM 단위—

	1966년	1967년
수입	72,670	70,183
수출	80,628	87,045
수출초과	7,958	16,862
(공산권국가포함)		
수입	2,615	2,610
수출	2,857	3,933
수출초과	242	1,323

(구주의 후진국포함)

	1966년	1967년
수입	6,462	6,059
수출	10,594	10,858
수출초과	4,132	4,799

농 독

- 백만마르크 (동독) 단위 -

	1966년	1967년
수입	12,034	12,482
수출	12,173	13,266
수출초과	139	784
(점령식구제외, 공산진영국가포함)		
수입	9,688	10,056
수출	10,021	10,916
수출초과	333	860
(구주의 후진국포함)		
수입	537	559
수출	712	718
수출초과	175	159

※주 (1) 공산진영국가라 함은 RGW (상호경제협력평의회) 가입국가들과, 중공, 북한, 월맹, 유고스라비아, 큐바 각국.

(2) 이 통계출처는 1968년도 서독 통계년감과 1968년도 동독통계년감에 의거함.

도표(2)

동서 양독일 상호교역상향
(점령지대내 교역)

- 백만 DM 단위 -

	1966년	1967년
서독발주분	1,345	1,264
서독공급분	1,625	1,483
공급초과분	280	219
농산물 및 비료 교역상향		
서독발주분	376.0	397.0
서독공급분	482.9	364.7
발주초과 (-)	(+) 106.9	(-) 32.3
공급초과 (+)		

본 통계의 출처는 비스바덴 (wiesbaden) 의 통계국 출간
 >> Fachserie F, 1968 <<에 의거함.

1936년 내에 현재의 양단된 독일영토 내에서 교류된 무역량은 당시의 시가로 80억 마르크로 평가되며, 현 물가시세로 추산한다면 2백억 이상이 되는 셈이고, 그 간에 경제성장을 감안한다면 4백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상기 도표가 표시하는 양 독일 내에서의 교역량은 지극히 근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산물과 농업생산재가 양 독일 국내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62년 이래 배가하였으며 1966년에는 약 29%에 달하고 있다. 1967년에 서독측의 농산물 발주는 독일내 교역에서 보합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독으로 공급한 면에서는 확실히 1억천만 DM 정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 독일 내 교역에 있어서 식료품상거래의 구조에 관해서는 동독의 통계연감에 완전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 또한 동독의 수출, 수입에 관해서도 특종 품목에 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양 독일 국내 교역 중에서 이에 관한 자료는 서독 통계국이나, 농림부의 발표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도표(3)에는 양 독일 국내 교역에 있어서 서독측의 주요한 농산물급 생산재 수요 공급 실태를 도시(表示)하였다. 서독의 발주분(發注分)에는 동독에서 서부 베르린에 공급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동독으로 부터의 발주품목은 곡류, 육류, 생가축, 설탕, 계란, 과자종류이며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급한 물품은 육류, 생우(生牛), 염연초, 수산물 등과 원유, 사료용보리(粗麥), 비료(질소와 인산비료) 등 생산용물품이다. 서독의 발주품은 1968년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슷하다. 곡물만은 소맥(小麥), 구입감소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 이에 반해서 서독의 공급실적은 육류, 원유, 유조(家畜用油脂), 사료용 겔보리 등은 현저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4)에서 동독의 식료품, 농업생산재 수출 수입 대조를 "동독(DDR) 통계"에 게재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동독은 1967년에 곡류 170만 t을 수입하였고 그 중 130만 t은 소련에서 도입한 것이다. 체코스로바키아나 마찬가지로 동독도

곡물 수요량의 대부분을 전적으로 소련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동독은 서독에 355,695 t의 곡류를 1967년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에 밀이 206,022t, 호밀이 110,721t, 보리가 38,952t이다. 곡물수출은 국내 생산에 의거한다 하여도 총결산 상으로 보면 결코 잉여분은 없다.

동독은 1967년 큐바에서 설탕 10만 t을 수입하였음에 반하여 145,638 t을 수출하였고 그 중에 59,022 t은 서독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설탕생산은 자체수요량을 상회한다고 보겠다.

육류, 제육품에 있어서는 동독은 75,300 t을 수입하였고, 그 중에 23,439 t은 소련에서, 19,000 t은 서독에서 수입하였으며 서독에서 수입한 것 중에는 일부 도살용 생우(生牛)도 포함되어 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공급한 육류의 82% (25,745 t)은 돈육이다. 철사 육류, 제육품을 수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동독의 육류 자체생산에 의한 자급자족은 아직 완전히 만족할만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150만 t의 생가축(生家畜)의 증산을 감안하면 동독이 서독에 육류공급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국민부양에 전혀 분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967년에 동독은 17,200 t의 버터와 12,494 t의 치즈를 수입하였다. 그러나 밀크, 버터, 치즈·수입량은 1966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되었으며 1967년 최초로 소량의 밀크나마 (3,055t) 서부 베르린으로 공급한 실적으로 보아 생산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주 할 수 있다.

서독이나 마찬가지로 동독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유과(油果 코어브) 식물성 유류등 마가린 제조용 원료이다. 이 원료의 보급수요를 제외하고는 기타의 식료품·수입은 주로 과일,

야채이며 대부분 Comecon 각국에서 수입한다. 한편 자체 생산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107,565t의 감자를 수입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며 주로 폴랜드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식료품 수출에 관해서 동독 통계에 기재된 것은 다만 145,638 t의 백설탕뿐이다. 그 중에 서독으로 공급한 분은 독일 내 교역이라해서 별도로 기재하여 있지 않다.

도표 3

양 독일 국내 교역

특종 농산물과 생산재

- 단위 백만 DM -

1966, 1967년도분과 일부
1968년도분

서독에서 동독으로 수출분

	1966	1967	1968
가축, 육류	36.7	53.0	22.3
피혁, 모피	23.9	19.5	-
입 담 배	22.2	13.8	-
밀크, 버터, 치즈	7.1	1.6	-
생선, 어분	13.3	11.0	9.6
원유	70.2	33.8	21.3
사료용유조, 겔보리	142.9	99.2	95.6
어 분 (魚粉)	9.0	14.4	13.9
비 료	129.6	100.2	-

서독의 농독으로부터 수입분

	1966	1967	1968
곡 물	149.6	148.7	101.1 (A)
가축, 육류, 계육	102.1	97.5	109.1 (B)
원 당	26.7	31.4	26.0
사탕류	24.9	24.4	29.0
생선, 수산물	1.8	2.3	5.0
제란, 계란제품	22.4	25.8	18.6
양조용 맥아 (麥芽)	2.0	4.5	1.5

주(A) 그 중에서 소맥 19.3 호밀 60.3 보리 21.5

(B) 그 중에서 돈육 56.5 소 29.6

도표 4

농독의 특종 농산물과 생산재 무역상항 (톤수 t)

1967년도

	수 입
소 맥	1,184,000
보 리	203,000
육 수 수	352,000
곡 류 총 계	1,739,000
유 과 (油果)	148,400
식물성유류	110,700
삼 자	107,565

식 용 공	11,307
야 채	90,317
정 과 류	139,301
백 설 탕	100,000
야채통조림	78,099
육류, 제육	75,300
버 터	17,200
치 즈	12,494
계란 (백만개 단위)	63
질소비료 N	111,483
인산비료 P ₂ O ₅	57,212
겔 보 리	345,100

수 출

백 설 탕	145,638
질 소비 료	170,851
가 리 비 료 K ₂ O	1,354,583

이상 농득 1968년도 통계연감에 의거함

농득은 아직 국내에서 매각 소비할 수 없거나 EWA (구라파 경제공동체) 에 있어서와 같이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농산물 잉여생산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 현황에 있어서 지금까지 비교적 소량의 공급을 서독에 지속해 왔다 하여도 그것은 자체수요공급을 위협하거나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입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데 서독 공급의 의의는 동득

가 필요한 중요한 생산재를 서독에 발주하기 위한 외환조달에 있는 것이며, 발주량은 1963년~1966년 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사료 또는 사료제조용 원자재 발주량은 1963년 7,8백만 DM에서 1966년에는 152,5백만 DM 선까지 증가하였으며 농시기에 비료 수입량은 12,6백만 DM에서 129,6백만 DM으로 상승하였다. 1967년에는 생산재 발주량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비료와 사료 발주 총량은 213,8백만 DM에 달하고 있다. 동독은 1967년 345,100t에 사료용 유조, 겔보리와 사료제품을 수입하였고 그 중에 86,775t은 인도 산이며 약 238,885t의 겔보리와 어분 20,696t을 서독에서 수입하였다. 사료제조용 원료의 다량 발주는 지금 까지 등한시 하여왔던 사료 자립생산 공장 설립의 전제라 하겠다. 사실 동독은 1965년 최초로 1,7백만 t의 완제품 사료를 생산하였으며, 이에 비하여 서독은 7,2백만 t을 생산하였다.

1967년 동독의 비료 구입실태는 질소비료 111,483t (1966년 : 103,000t)과 인산비료 P_2O_5 57,212t (1966년 : 74,000t)이다. 질소비료 중 일부분은 (1967년 : 7,085,137t, 1966년 : 48,000t) 여타의 Comecon 각국으로 채수출되었다. - 오다강 (Oder) 변 슈베드 (Schwedt)에 새로 건설된 비료공장의 가능으로 질소비료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약 90,000t 증산되었다.

동독 내의 방대한 가리생산의 덕분으로 국내수요를 초과하여 풍족한 양을 수출할수 있고 1967년에는 약 1,355백만 t의 K_2O 를 12개국에 수출하였다.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작업기계, 기구의 서독으로부터 대량 수입은 최근 수년간에 동독의 농업분야의 수익증가에 결정적인 기여(寄与) 하였다고 보겠다. 질소비료, 인산비료 수입고는 각기 동독 농업용 총 수입고의 25%, 23%에 달한다. (1966년) 지금까지 부족하였던 인산공급은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되었다. 질소비료 사용량은 1967년에 경작면적 매 헥타르(ha)당 68kg라는 괄목할 만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한편 서독에서는 ha당 62kg에 불과하다. (1968년에는 68kg이었다) 그러나 특히 건조하고 효과적인 것은 서독으로 부터 사료용 유조, 겔보리를 수입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물품은 외환부족으로 직접 원산지에서의 구입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최근 15년 간에 중점주의 계획경제 관리에 의하여 가축축수의 현저한 증가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는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농축한 특수 강력 영양소의 공급을 성인의 수요에 충당할 만큼 증대시키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닭에 최근 수년간 가축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밀크 육류 생산증가율은 그 비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동독이 농산물 식료품을 서독에 공급함에 따라 서부 베르린으로 공급하는 분량도 증가하고 있다. 1966년과 1967년 2년간에 각기 3억7천6백만 DM과 3억9천7백만 DM 상당의 대서독 총공급액의 50% (1967년 : 1억7천6백만 DM)를 서베르린으로 발송하였다.

1968년에는 동독의 서베르린 공급은 165,4백만 DM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곡물 49,8백만 DM, 생우와 육류 75,7백만 DM, 설탕과 과자류 16,2백만 DM, 계란과 계란제품 12,6백만 DM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서베르린에 대한 공급 면에서는 서독의 비중이

크다. 서베르린에서 서독으로 공급된 물품 총 거래액은 1966년과 1967년에 각기 108억 DM, 112억 DM이며 서독에서 서베르린으로 공급한 것도 역시 110억 DM 분이된다. 그 중에서 27억 DM은 식료품 대금이다. 서독, 동독과 함께 서방 국가와 농구 불력 국가들도 베르린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1966년 소련은 10,000t의 호밀(총 발주량의 14%)을, 폴랜드는 44,100t의 곡물(총 발주량의 25%)을, 기타의 농구 불력 국가들이 야채 8,500t, 과일 7,400t, 새 닭고기 종류 2,940t을 공급하고 있다.

동독의 대 서베르린 공급 발전 상황에 관해서는 도표 5에 당시 되어 있으나, 그것은 다만 1962년도와 1966년도 분만 기재되어 있다. 동독의 공급면에 있어서 가축의 생산량은 현저하게 최근 수년 간에 증가하였다 해도 전반적인 공급에 대한 참여도는 아직 미미하다. 독일 분단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빚어내고 말았다. 즉 인구 220만의 서부 베르린시의 공급을 위해서 바로 인접한 주변의 인근 농업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동독 농업에 의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독특한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유, 감자, 청과 야채 등은 관로가 가까워서 특히 좋은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농업은 이런 것을 공급할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에 동독의 식료품공산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전혀 동독 농업생산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였다

는 것과 부합되는 것은 못된다. 따라서 장차 동독 농업생산이 계속 성장하고 수출도 증가할 것인가의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전작물(田作物)의 수확고는 동서 독일에 있어서 전쟁 전에 비하여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다만 이례적인 1961년의 흉작에 의해서 일시 중단된 적도 있으나, 1967년에는 전쟁 전후를 통해서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다. 도표 6에 양 독일의 1966년~1967년 간에 3대 주요 전작물의 수확실적과 1935/38년을 100으로한 증가율의 대조표를 제시한다. 동독은 곡물 생산에서 최대 수확증산을 달성하였으나 한편 기묘하게도 감자, 사탕무 생산에 있어서는 1966년에 간신히 전전의 생산고에 도달하였고 1967년에 약간의 생산초과를 하였다. 그러나 대흉작의 해년에 있어서 조차도 동독은 서독의 수확고나 수확상승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동독 수확에 서독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5% 가량 지수 저하가 생긴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산고의 저하 결과 평당 생산량은 1966년 동독에 있어서는 ha (헥타르)당 33FE (Getreideeinheit 곡물단위)이며 서독에서는 36FE, 1967년도에 36.6FE~40FE로 평가되고 있다. 평면작 영농부분을 우선 취급하는 조합의 강도는 서독보다 동독이 상위에 있다. 그 이유는, 야채, 감자류가 전체 경작 면적의 23.5%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하여 서독은 18.7%에 불과하다. 한편 조방(粗放) 곡물경작은 경작지의 약 49.4%에 반하여 서독은 64.9%가 된다. 그리고 수확능력이 적은 상용목초지 면적은 서독

에 있어서는 가용경작지의 42%를 차지하는 반면 농독에 있어서는 22.5%이다.

가축 생산 증가도 유사한 점이 많다. 동서 양 독일에 있어서 가축총수는 현저하게 상승하였으나 각 개별적 가축실적은 농독에 있어서는 서독의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류(牛類) 총수는 농독외의 경우 전전 수준의 39%, 암소는 11%를 초과하였음에 반하여 서독에서는 동수의 암소 총수에 대하여 16%의 초과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돼지총수는 전전에 비하여 62%의 초과를 보이고 있으나 서독에서는 다만 52%에 불과하다.

비교적 조방(粗放)적인 양(羊)사육은 농독이 전전의 총수를 유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서독은 57%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가축 한 마리 당 실적에 있어서 서독의 것을 100으로 한다면 농독의 암소 한 마리의 우유생산량은 85%, 소 한 마리의 고기 실적은 82%, 돼지 한 마리의 고기 분량은 71%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산발전 지수에 의거하여 농독의 1966년도 식량 총생산량을 경작면적 ha 당 29,7tE, 서독의 경우는 39,1tE로 평가하고 있다. (주 tE = Tretreideeinheiten 곡물단위) 1967년에는 농독은 식료품생산에 있어서 전쟁전 수준의 27%를 초과했고 서독은 76%나 초과했다. 이것으로써 농독의 생산수준은 서독의 그것에 비하여 25%정도 저조한 셈이다.

최근 수년간 농독 농업이 착실한 발전을 하여온 사실에 비추어 보아 어떤 이유에서 서독에 비하여 생산후진성을 수년간에 만회하지

못하는가를 이해하기 곤란하다. 동독은 모든 농업정책수립에 있어서 그 궁극적 목표를 여전히 생산증가에 두고 있으나 한편 서독과 EWZ (구라파 경제 공동체)는 생산과잉의 위협에 직면하여 많은 경영분야에서 생산 제한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이 동독의 생산후진성은 이해곤란한 일이라 하겠다. 동독에는 계속적인 생산증가를 위한 전제조건이 철두철미하게 부여되어 있다. 그것은 우선 농업용 중요불가결한 생산재 공급의 근본적 증가와 각 생산조합의 작업실적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게 된 이후 부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정적 지도체제가 점차 생산조합의 독자적 결정권을 위하여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뿐 아니라 동독은 이미 상당히 내규모의 기업단일화를 처리해 버렸다. 이러한 단일화는 EWZ 위원회도 절실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비교적 소규모의 서독 자영 농업에 비하여 동독의 대기업단일화가 일반적으로 가상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우세한 것이라면 동독의 생산수준은 이미 오래 전에 서독의 생산수준을 능가하여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동독이 소망하는 생산증가는 불가정책에 의지해서 촉진되고 있는 것이며 서독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러한 불가정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도표 7 는 최근 수년간에 동독이 달성한 평균 생산자와 1967 년도에 양 독일의 농산물 매상고 수준을 표시한 것이다. 그 외에 1969 년 1 월 1 일 이후 동독에서 통용된 농산물가격 (Agrarpreise) 도 도표에 표시하였다.

1960 년 이전에는 동독의 불가는 지극히 저급하였으며, 서독의 마르크 DM 을 동독의 마르크 M 으로 환산할 때에 거의 모든 생산

도표 5

서 베르린에 대한 동독의
특종 식료품 공급 상황

(1962 년도와 1966 년도)

(단위 : t톤)

농 산 품 품	년 도	동독공급분	서 베르린 총수입량 비 (%)
호 밀	1962	37,500	63
	1966	30,000	54
생 계 란	1962	-	-
	1966	5,630	23
정 육	1962	2,860	2
	1966	19,000 ⁽¹⁾	11
백 설 탕	1962	25,000	-
	1966	26,000	-

주 (1) 그 중에서 돈육 17,000t

쇠고기 2,000t

1967년에 처음으로 우유 3,055t을 서 베르린으로 공급,
총수요량의 2.5%에 해당.

도표 6

주요 농산물 수확고
 농서 양 독일 비교
 (1966, 1967 년도)

1935 ~ 1938 년 까지 를 100 으로 한 비율

	서		동	
	1966	1967	1966	1967
곡물 dz/ha 1935/38 = 100	30.0 134	36.8 162	26.1 109	31.6 132
감자 dz/ha 1935/38 = 100	257.3 139	305.1 164	184.8 95	205.1 106
사탕무 dz/ha 1935/38 = 100	432.6 136	469.6 469.6	313.5 104	332.1 110

주 ① dz/ha 헥타아르 당 200 파운드

② 1968 년도 서독연방공화국 통계연감 급 1968 년도 동독
 (DDR) 통계연감에 의거함.

생 산 단 위 별

생 산 품	동 독 (M/dz)			
	1955	1960	1963	1965
밀	23.37	30.65	29.69	37.26
호 밀	21.18	34.42	32.32	41.19
보 리	33.62	61.44	70.88	63.90
연 맥 (燕 麥)	20.74	25.30	25.09	38.28
유 조	115.99	101.86	104.50	106.38
삼 자	6.44	9.55	13.44	16.04
사 탕 부	4.23	6.54	6.48	8.00
가 닭 (家 禽)	300.65	500.00	508.27	503.07
생 돈	397.88	341.46	410.46	453.92
생 우 (生 牛)	139.84	281.80	280.05	312.22
우 유 (kg 당)	0.47	0.52	0.54	0.59
계 란 (100 개 당)	24.46	29.29	34.32	31.26

* 주 M = 농독 마르크

DM = 서독 마르크

평 균 매 상 금

1967	1967	(M/dz)	서 득 (DM/dz)	
	1960=100	1969년1월1일이후	1967	1961=100
36.37	118.7	}	43.0	101
41.53	120.7		52.8	100
63.82	103.9			99
44.32	175.2			105
107.30	105.3		66.0	100
16.16	169.2	21.16	16.1	93
8.00	122.3	8.50	7.60	107
536.81	107.4	-	229.2	98
457.16	133.9	490.00	267.5	113
335.12	118.9	418.00	276.7	117
0.63	121.2	0.76	0.40	112
32.37	110.5	34.70	16.5	93

품이 서독의 생산품 보다 저렴하였다.

완전한 계획경제 관리 시대이었던 당시만해도 수익증가를 위한 자극제로서 불가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작용 같은 것은 포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 이래 이러한 견해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후 불가상승은 서독에 있어서 보다 현저하게 컸으며, 1967년에는 거의 모든 농산물 특히 가축 생산물의 매상고가 동독의 그것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차제에 또한 고려하여야 할것은 최근 수년간에 가축 생산 면에서는 이중가격제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공출가격과 자유판매가격을 병행하였으며 이것은 1968년 이후 단일 생산가격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다.

자유판매가격 (Anfkanfpreise) 은 공출가격 (Erfassungspreise) 를 보통 100% 상회하는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만 자유판매가격으로 지불되었다. 그 외에도 추가로 소위 "생산증가에 대한 보상금" 이 최근 수년간은 지불되었으나 실시 3년 후에 다시 폐기되었다. 최근 수년간에 놀라울 만큼 가격을 개선한 것이 생산증가 목적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간주할 수 있다. 1969년 1월 1일 이후 전체 불가는 다시 인상되었으며 그것도 시장경제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다. 현재는 경작면적과 관계가 없는 양돈 양계등에 있어서도 사료와 생산물 간의 가격 관계는 비현실적일 만큼 격차를 두고 있다.

농업 경영관리의 결정권이 완화됨으로써 수입을 최대화한다는 의

미에서 경영학적으로 농업관리를 조직화하고 경영할 수 있게 되었음으로 특히 서방측 추정(推定)에 따라 정해진 가축부문의 가격은 지속적인 생산증가를 환기시켰다.

농업생산조합 관리(管理)의 결정권은 어떠한 상부의 조치에 의해서도 재차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가 또는 새로운 협동작업들(Kooperationsbestrebungen)을 함으로써 생산을 방해하는 실험(實驗)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차후 수년 간에 지속적인 생산율상승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생산증가를 국민부양에 필요로 할 것인가, 또는 수출을 강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 독일 국민의 1인당 영양소비량은 약 2,900 칼로리이고 서독에서는 79.9g의 단백질 소비량중 51.5g은 농산물 단백질이다. 동독에서는 72.3g중 38.7g이다. 여러 식료품의 질적 저하, 품종의 회소능은 차치하고서도 동독의 국민 부양은 확립되어있고 사용량의 상당한 증가도 연산할 수 있다. 설사 경작면적 1ha당 영양식료품생산은 아직 서독 수준에 미달한다 하여도, 돈육, 밀크, 계란등 대부분의 농산물에는 서독을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동독의 인구밀도가 희소함으로 인구 1인당 소비량에서는 그러한 계산이 나온다고 보겠다. 그래서 1966년에 있어서는 1인당 영양식료품생산이 동독의 11.4t에 대해서 서독은 9.7t로 평가되고 있다.

동독에서는 거의 모든 농산물의 공급이 전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것은 도표 8에 1966년도 계수에서 추정(推定)할수 있는 바와 같다. 마가린제조용 원료수입수요를 제외하고

는 곡물공급 면에 있어서의 큰 부족액은 서독의 경우와 사정이 비슷하다. 양 독일에 있어서 가축생산은 근본적으로 곡물공급과 관련되어있다. 서독에서는 가축생산의 22% 이상이 수입곡물에 의해서 생산되고 동독의 경우는 17%이다.

최근 수년간의 생산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동독도 농산물 생산 과잉 상태에 돌입할 것이며 수출에 육박할 것이다. 동독 통계에서 볼수 있는 한에서는 식료품수출을 Comecon 각국에는 하지 않고 있으며 분명히 서독과의 국내 교역에 한정하고 있다. 동독은 장차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농업생산 잉여분을 외환 확보를 위해서 서독 또는 EWG 각국에 매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동독의 농산물을 독일국내 교역의 액면에 또는 양 독일의 정상적인 경제적 협동에 의한 판로의 찬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쟁 전에는 엘베강 (Elbe) 의 동부 독일지역과 현동독이 주로 전립농산물, 특히 곡물 감자 설탕 야채등을 서독과 베르린으로 공급하였다. 장차는 공급의 중점이 가축 부문에 치중하게 될것이다. 장차 서독에 대한 판로가능성의 평가는 서독이 EWG에 가입함으로써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공급의 여지를 여타의 EWG 각국의 잉여분으로 충당하게 되리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수입수요는 주로 서독의 생산수준 보다는 EWG의 생산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여하튼 양단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도표 9는 EWG 가입국이 총소요량에 기여한 비례를 표시한 것이다. EWG의 자체공급정도는 90%에 달하고 있으며 가축생산 면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다. 77%에 불과한 서독의 자체공급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순수한 보급수요는 EWG 수요량의 56%인 식물성유류, 지방등이다. 이것은 해외에서

도입되어야 하며, 수요량이 16%인 곡물, 또는 정육도 보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소맥 밀크 설탕의 생산과잉분의 이용방도는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상당한 수출재정보조가 요구된다.

도표 8

농산물 공급실적

수요량에 대한 비례(%)

1966년도분

	동	독	서	독
빵 제조용 곡물		68		79
사료, 공업용 곡물		87		63
감		99		97
차				
설탕 (백설탕)		103		91
육		96		86
류				
계		99		86
란				
우		100		100
유				
버		93		97
터				

도표 9

EWG 가입 각국의 총소비량에 대한
자국내의 생산량 (1965~66)

소비량 = 100 에 대한 비례

(구라과공동체 통제국에 의거)

생 산 품	서 독	프랑스	이탈리아	화 란	벨 지 음 룩셈부르크	EWG
밀	73	147	102	65	78	110
기 타 곡 물	66	127	41	20	37	71
곡 물 전 체	68	137	71	37	49	86
감 자	95	104	97	118	94	99
설탕	94	131	75	100	126	103
야 채	55	96	115	185	112	102
정 과	46	104	117	107	61	88
포 도 주	48	96	110	2	14	97
쇠 고 기	78	102	57	107	88	84
돼 지 고 기	93	93	90	173	106	98
닭 고 기	42	104	99	295	128	95
계 란	83	-	93	144	119	-
치 즈	79	108	90	218	66	99
버 터	100	112	68	171	101	105

동독의 곡물사정은 비교적 고도로 성장한 축산가공업으로 인해서
국내생산품을 수출초과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EWG를 위한 곡물수입은 현재로써는 소맥의 경우 고려할수
없는 형편이다.

서독의 양조용곡은 동독의 건조한 지대에서 생산되는 특히 질이 좋은 것을 수입하고자 갈망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전쟁 전만해도 설탕생산은 주로 동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현 서독 수요량의 40% 이상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설탕생산은 독일 양단 이후 경작의 확대와 수확고의 놀라운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100% 자급자족할 정도로 증산되었다.

EWG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면서 설탕초과생산분을 세계시장에서 판매하여야 할 형편임으로 사탕무 재배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감자재배는 서독에 있어서 전쟁 이후 약 30% 이상 감소되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평당생산고가 상승하는데 기인함은 물론이다.

식용 감자 소비의 점차적인 감소와 동시에 돼지 비육용 감자사육의 감축등은 서독에 있어서 평당생산 고수확으로 인해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있다.

그 결과로 서독에서는 감자재배를 자연적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식용감자 판매 조건이 좋은 지역이나 또는 최근에는 가공산업용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방면에 치중하고 있다.

동독에 있어서는 감자수확이 저조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수출을 기대할 수는 거의 없다고 보겠다. 만약에 언젠가 동독에서 정상적인 감자 생산에 성공한다면 서부 베르린은 마르크 부란덴부르크(Mark Brandenburg)의 양호한 감자재배지로 부터 공급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폴란드로 부터의 수입과 대치할 수 있

을 것이다. 폴랜드로 부터는 매년 40,000t ~ 50,000t을 최근 수년간에 수입하였다. 다같은 독일 국경내의경우 식용감자의 유리한 판매조건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야채 재배는 동독 특히 마그데부르크 (Magdeburg) 평야지대가 전쟁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최대 야채재배지역이었다. 주산물은 양파 외, 완두콩, 시금치 등이며 주로 베르린과 일부 서독으로 판매되었었다.

서독의 야채통조림 수요증가로 인해서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고 있지만 동독도 통조림야채를 EWG로 판매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될 것이다.

특히 동독의 대단위 영농에 의한 많은 종류의 야채재배와 완전 기계화에 의한 염가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더욱이 그러한 기회는 유리한 것이 될것이며 EWG내의 경쟁능력 이상으로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동독 자신이 다량의 야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 한번도 통조림야채를 서독 시장에 출품한 일이 없다.

서부 베르린은 매년 95,000 t의 청소채 (수요의 95%)와 청과 150,000 t (수요의 75%)를 베르린시 근처의 동독 생산지역과는 상관 없이 타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청과 야채 총공급량의 25%정도가 여타의 동구라파 각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도시는 근처에 정원뿐아니라 농업경영의 여지를 부여하기도 하며 야채재배를 위한 특히 유리한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EWG는 우유와 우유제품을 완전 자급자족하였을 뿐 아니라 부단

히 상승하는 우유생산은 판매와 환금(換金)을 보장하여야 할 농업 시장질서의 중추적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EWG의 우유생산 초과량은 현재 이미 연간 4백만 t을 상회하고 있다. 동독이 버터를 서독에 판매해 보고자하는 시도는 상술한바와 같은 이유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장차도 거의 그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정선 내에 있다는 사실로 달미아마 베르린 근방 농업이 베르린에 대한 우유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신선한 우유, 요구르트, 크림, 연유의 판매가능성은 대단히 유리한 입지조건에 놓여있는 것이다,

EWG에 있어서는 도시근처의 우유공급이 지금보다 전망이 한층 유리하여 졌다. 그것은 제조용우유 보호를 위하여 생우유에 대한 부과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우유 청과 야채나 마찬가지로 양계, 계란생산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이득을 보고있다. 특히 식료품점 또는 소비조합에서 직접 공급할 경우 가격차가 하락하고 따라서 원거리 생산에 비해서 계란 한개당 생산자의 수익은 4~5 펜니히(Pfennig) 정도 상승하게 된다. 농독은 이러한 이득을 이미 최근 수년간 얻어왔고 그 비율도 상승해 가고 있다.

서독의 가금육류(家禽肉類)의 수요는 자체내 생산에 의하여 충당되는 것이 겨우 45%에 불과하며, 부족분은 거의 전부가 화란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금육류 생산은 판매시장의 근처에 있을 경우 일종의 경쟁우선권을 갖게된다. 그것은 현대식 내량생산

의한 가금은 냉동하지 않고서도 싱싱한 상태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고율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게된다.

동독은 여타의 동구라과 각국과는 대조적으로 서부 베르린에 대한 가금공급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동독에는 고성능 사료와 잡종교미에 의한 병아리 사육의 부족함이 명백하며 따라서 이득차가 지극히 적은 이 경영분야를 구라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육성시킬 능력이 없다고 보겠다.

쇠고기는 서독에 있어서나 EWG에 있어서나 가까운 장래에 생산초과의 우려성이 없는 유일한 가축생산이다. 뿐만 아니라 자체내 수요조차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독도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등한시하여 왔고 따라서 지금까지 서독에 대하여 거의 육류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양독일 국내 교역에 있어서 생우(生牛)공급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1966년에는 1,250만 DM 1968년에는 2,960만 DM에 해당하는 교역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 1,600만 DM 상당의 생우가 서부베르린에 공급되었다. 동구라과 각국은 이미 수년 전 부터 대 서독 쇠고기 수출을 하고 있다.

동독의 대 단위 농장에서는 생우사육을 위해서 젖소사육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서독의 개인농장에 있어서보다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서독의 개인 농업에 있어서는 농부의 잠재노동력을 생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젖소사육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서독에서는 전후에 생우사육량이 배로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단 한마리의 소도 수출하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독의 가축생산물 수출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돈육이었다. 주기적인 생산지수변동은 불문에 부친다치고 EWG 내에 있어서는 그 간의 돈육수요량을 자체내 생산으로 충당하여왔다.

1968년 초 서독내에서 돈육 공급량이 일시 대단히 증가함으로써 생돈수입은 현저하게 감축되었다.

그러나 항구적인 양돈 생산조파는 기대할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제란, 가금 생산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작면적에 구애되지 않는 경영분야인 경우 공급과 수요가 단기의 주기적 생산과잉에 의해서 비교적 급속한 상승 하강의 현상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서독내의 양돈경향은 점차로 일정한 수준의 규모와 관리가 갖추어진 경영체로 집중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농독은 대단위 양돈에 있어서 우수한 관리와 전문적인 사육에 의하여 전 독일에서 우수한 경쟁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서독의 비경제적인 잡다한 소규모 양돈을 시장에서 추출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농독의 양돈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서독으로부터 어분(魚粉)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돈시장경쟁에 있어서 우수한 징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독에서는 750만을 생산하였음에 반하여 서독에서만도 1,900만두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농독의 돈육공급이 EWG에서는 고사하고 서독 내에서 시장가격 조성에 별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상술한바에 의하여 서독과 특히 서부베르린이 EWG나 서독에 대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시키는데 없이 어떠한 관로나 판매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하였다. 동독이 장차 수년간에 계속 생산증가를 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증가를 기대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나— 수출은 판매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방향에서 달성해야 한다. 모든 생산증가를, 그것이 농업분야일지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간주되던 좋은 시절은 동독의 경우에도 지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응능력면에서 본다면 동독의 대단위기업체에 의한 생산신축성은 서독의 비교적 소규모의 기업체에 의한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서독에서는 기업체의 크기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산목적 달성을 결정한다.

일정한 농산물의 판매와 생산재의 수입이 동독의 긴박한 관심사이고로 양 독일 간에 이에 관한 협정은 의미심장하고도 등한히 할수 없는 요망사항이다.

농업이 현대 공업국가의 국민경제조건에 적응하
여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양독일 농업체제

논문작성자

게오르그 부르흐

Georg Blohm

I. 농업정책구상 및 경영초안

서독에 있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과 생활수준을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의 수준과 동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눈부신 경제계에 있어서의 농업 발전가능성등이 전체 농업정책의 핵심문제로 되어 왔다.

한편 동독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유에서 농업분야의 공업적 생산방법 도입을 부단히 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주요관심사는 여전히 생산증가에 있는 실정이다.

서방국가 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즉 기업체 대규모화의 합목적성, 농촌 가정기업의 존속여부에 관한 의혹 기업체 대단일화의 호소등이다. 그 결과 동서 양 독일의 광범위하게 상호 상이한 농업제도의 적성을 농업의 혁명적 적응과정에서 조사해보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농업체제의 진가가 확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적성이 결정인 것이다.

(1) 수입증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력의 증가가 요망된다. 즉 말하자면 일인당 노동력의 생산량 증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토지와 결부된 생산에 있어서는 수확과 농물의 증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덧붙여서 일인당 노동력에 대한 경작면

적도 증가되어야 소득증가 요구가 달성 되는 것이다 .

(2) 댓가가 비싼 요소의 노동 능률을 고도화 하고자 노력하려면 농업의 대 자본강화가 필요하다 . 농업에 투자한 자본의 생산성이 비교적 저조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자본재 (資本財) 를 가장 합리적으로 투입하고 그 자본재의 수용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이 필요한 것이다 .

(3) 생산의 만족할만한 수익성을 얻으려면 기술 발달의 고도화 , 발달한 기술의 이용이 요망된다 . 그것은 기업체의 시설완비 면에서나 지속적인 경영관리 - 소위 Management 라고 불리는 - 면에서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

(4) 판매가능성이 수시로 변하고 시장가격과 생산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변화하는 현실에 상품을 적응시키려면 생산의 충분한 융통성이 요망되는 것이며 특히 토지이용이나 노동력배치 면에서는 더욱 그 신축성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

(5) 동서 양 독일은 다같이 농산물의 가격수준을 세계시장의 가격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려면 식료품의 공급이 수요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생산과잉을 회피한다는 것은 유효적절한 가격정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

(6) 각 기업체 지배인들의 책임감에 넘치는 기업가로서의 솔선수범하는 태도와 모든 종업원들의 물자에 대한 관심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들 인간이 기업체의 수익에 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수입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2. 산단독일내의 농업생산 발전상황

전쟁이후 동서 양 독일내에 있어서 농업생산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독의 생산수준은 서독 생산수준의 25% 미만에 불과하며 동독에는 사실상 다만 대규모농업경영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서독에는 아직도 불충분한 경작면적과 생산조건을 가지고 대부분이 소규모 농장경영 또는 부업으로서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독에 있어서 생산의 집산화 (eine Konzentration der Produktion)는 아직까지 생산의 합리화라는 의미에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수년간에 이룩한 괄목할만한 발전이라는 것은 생산의 집산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련의 중요불가결한 농업정책상의 조처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다. 이러한 조처는 경영체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경영의 강화관리개선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조처란 다음과 같다.

a) 광물성비료, 식물보호수단, 특히 사료용 자재등 필요불가결하면서도 지금까지 등한시하여왔던 생산을 증가시키는 영농자재를 좀더 유리하게 농업에 공급하여 왔다. 그것은 서독에서 상당한 양을 도입해온 덕분이 적지 않다 하겠다.

b)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집권적 행정관리 농업의 감독제한

이 조치가 서독에서 시행되었었던 1960년 이래 본질적으로는 심한 물가상승을 초래하였다. 특히 1967년 이후 거의 모든 농업생산에 있어서 그 생산가는 서독의 생산가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 만약에 동독의 농업조합(LPG)이 소득최대화 원칙에 따라 경영하였더라면 이러한 가격상승은 지속적인 생산증가를 초래하였을 것이며 또한 조합원의 수입증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독조치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이미 동독의 수출여건은 충분하였으므로 생산초과의 위험성마저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c) 경영관리의 질과 실적을 본질적으로 개선한것 이것은 농업조합의 유능한 조합원이 경영집행에 있어서 자기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d)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경제적으로 효과가 충분한 경영관리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 그것은 기업관리를 하는데 좀더 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관리(行政管理)에 의하여 명령적으로 생산조정을 하는것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국가들도 지난 수년간에 다음과 같은 체험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즉 농업에 있어서도 역시 수요에 대하여 생산을 국민경제적 의의에 합당하도록 적응시키는 일은 관료적 행정관리를 하여 중앙집권적인 조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적인 기업체나 공장이 관리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합당한 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독(DDR)의 1968년 4월 6일에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도 적합한 것이다.

즉 헌법 46조에는 농업생산조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농업생산조합(LPG)은 법령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책임하에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형성한다>

<경영계획>은 LPG가 작성할 수 있으나 다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술한 보고를 토대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즉 적절하게 경영되는 농업조합은 실제로 경영과 경제적 관점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가지 여기에 필요한 것은 투자 또는 경영체운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을 경영수뇌부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자본은 지금까지 주로 <국가>에 의해서 부족한 액면에 불과하지만 처리되어 왔다.

재산과 자본의 형성은 그 생산적 투자나 마찬가지로 국가에 위임되어야 한다는 공산주의 제도의 원칙은 현대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헌법 10조에서 재산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 있다.

<사회주의 재산은 사회전체의 국민재산으로써 존재하고 작업공동체의 (Kollektiv) 단체조합 공동재산으로써 존재하고 인민의 사회적 기구의 재산으로써 존재한다>

그런데 실은 헌법 13'조에는 단체(조합)의 공동재산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농업수공업 기타 사회주의 단체(조합)의 기구 기계 건물 대지는 농업조합(LPG)의 가축전부 또는 토지를 조합에서 이용하거나 조합의 생산재를 이용하여 얻은 수익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재산이 된다>

다만 시민의 개인소유 재산을 위한 생산적 자본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개인재산은 오로지 <소비(Konsumtion)>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11조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은 시민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조합의 공동재산 형성은 다만 허용되거나 촉진되고 있을뿐 아니라 <축척(蓄積)Akkumulation> 즉 자본형성을 위한 자금(적립금)이 농업조합의 조합비까지 만들게 되었다.

독자적인 자본형성에 의해서 자본처리가 한층 신속성 있고 경영

면에도 적응능력이 더 크게 되었다. 이것으로써 농업조합의 경영 관리는 독자적인 자본으로 투자를 한 다든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기도할 자격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지금까지 주로 <국가>가 주관하고 재정부담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사태 변화는 결과적으로 농업조합(LPG)이 국가에서 받는 신용대부에 대해서 그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게 되었다.

여하튼간에 경제적 제도의 도입(die Einführung des ökonomischen Systems)에 의해서 또한 경영관리에 관한 새헌법에 의거해서 한 기업체를 경제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불가결한 방책과 권한이 생긴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설사 장차에 있어서도 계속 감독관청의 개입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영관리의 결정 권한 강화는 이제 시장에서 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안정세력을 잡기 시작한 경제면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농업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여건은 바로 제약을 받지 않는 결정권을 가지고 경영을 유능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중앙 집권적인 행정통활에 따른 관료적이며 까다로운 감독에 의해서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동독의 사회주의 대규모 농장경영과

서독의 가내노동법에 의한 자작농

<사회주의 대규모 농장경영>원칙에 따라 경영체를 대단위화 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제도가 가장 결정적으로 성공한 성과의 하나를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울부리히트(Ulbricht)는 제 10차 농민대회 석상에서 농업의 사회주의화가 가져온 이점(利点)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농민은 사소한 재산에 억매어 있던 쇠사슬에서 벗어났다. 재산은 각 개인을 자기 농장에 고립하게 만들었고 반 봉건적 재래식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을에 보존하여 왔었다>

그러나 Brüssel에 있는 EWG 위원단 부총재인 Dr.S.L Mansholt는 농촌의 가내경영에 언급하여 그것도 일종의 경영형태이며 시대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가내경영(Familienwirtschaft)도 상공 각분야의 많은 경영형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8년 2월 16일 Groningen에서 강연)

구라파 위원회에 의해서 제시된 농업개혁안에서 Mansholt는 경영체의 대규모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이러한 각기업체에 있어서 종업원의 수효가 충분하여야 하며 그것이 임금노동자이거나 또는 기타의 노동력이거나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업

원의 지나친 노동부담을 피하고 자유시간 휴가병 등에 의한 공백기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ansholt 는 상당히 대규모의 생산단위 형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단위 경영체에 있어서는 한 경영부문의 농부 일인당 노동가능성 (Arbeits Potential) 은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을만한 부담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 농업 기업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경영상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대단위 농장경영이나 가축의 다수사육이 경영면에서 어느정도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결국 한사람분의 노동력이 경작면적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가의 비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많은 노동력을 구사하는 대규모농장경영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나 또는 이미 경작면적과 가축수효의 최소한의 분량을 자작영농을 하는 경우 일인당 노동력에 대해서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동독에 있어서는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부문마다 계각기 생산을 무제한 확대하는 것이 수익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종업원의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형편에 처해 있다.

경작면적 600 ha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조합 제Ⅲ형의 규모조차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단위 영농체를 합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위 공업적 생산방법 (industrielle Produktionsmethode)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5~100 ha 크기의 동종작물재배구 (同種作物栽培区) 도 충분치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조합(LPG)에 몇몇개의 경작용기제로 구성된 조직체를 공급하여 주어 이러한 합동의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그러면 예컨대 LPG 하나는 다만 5개의 거대한 복식 수확기로 된 일개조만 구입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단위 농장에 사육하는 매도용 가축총수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소 1,000~2,000두, 송아지 6,000두, 돼지 40,000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작면적이 크고 가축총수가 크면 건물이나 기계등 자본재를 사용하여 해당면적당 생산수익을 용이하게 얻을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경작면적과 많은 가축수는 노동생산능력 즉 일인당 생산량을 용이하게 상승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다만 대단위영농을 할 경우 영농자들이 더 큰 경작면적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될 것임은 물론이다. 즉 말하자면 소규모영농을 할 경우보다 경작면적 100ha 당 노동력수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대단위영농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이익을 동독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농업조합으로 부터 노동력이 이탈하는 것은 법규로서 허용되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조합의 경작면적 100ha 당 노동력총수는 서독의 경작면적 50ha 이상의 농장에 있어서 보다 2배가 넘는 실정이다

최근에 비로소 LPG나 VEG에서 노동력총수를 강력히 감축시키려고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소위 <농민의 생존을 파멸>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장과 영농자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까닭에서이다. 이러한 감소는 농업에 있어서 노동생산력의 증가를 촉구하는 불가피한 여건이 되고 있다.

기타 개인이 가정에서 경작하는 과소지경영 (過小地經營) Parzellen betrieb) 이 동독 농업의 총생산고에 기여하고 있는 비율은 놀라울만큼 높은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공업적 생산방법의 도입과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다. 그리고 대단위 농장경영으로 생산을 집중시키려는 노력과는 지극히 모순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특별생산단지 (Spezialbrigade) (주) (동독에서 생산향상을 위하여 경쟁하는 집단중 최소단위인데 가정내 생산을 그것에 비유한 것)에서 종사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노동균형과 완전근무에 지장을 주는 결과가 된다.

동독에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경영상의 결과를 대단위 경영에서 이끌어 낼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요지부동의 사실로써 증명한다.

매 노동력당 청산총수익이 40,000~60,000 마르크에 달하는 노동생산성과 매 취득자의 총수입이 노동력당 20,000~40,000 마르크를 어느 농업조합에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독에서는 경작면적 30~50 ha 정도의 관리가 잘 되고 비교적 큰 자작농장의 대다수가 그만큼 실적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대단위 경영에 있어서 서방측의 현대식 자작농장에서 보다 더 비싸게 생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의 발전상의 비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즉 각기업부분에 문제한 생산확대는 점차 심해가는 원가하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생산용량 (Produktionsvolumen)의 최적조건 (Optimum)은 이미 다각적으로 초월해 버린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들이다.

공업에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을 무제한 농업에 전용한 결과 공산주의자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대단위로 생산을 집중하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착오는 물론 공산주의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방국가간에서도 각 경영부분의 바람직한 생산용량에 관하여 토론할때에 빈번히 이러한 평가착오가 생긴다.

투입한 생산수단의 용량 (Kapazität)을 완전히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또는 귀중한 노동요소의 가장 좋은 생산력이 보장되어 있을 경우 최적조건 (das Optimum)에 도달하는 것이다.

생산용량의 지속적인 확충, 경작면적의 확대, 가축총수의 증가등은 원가감퇴 (Kostendegression)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생산가상승 (Kostenprogression)을 초래하는 수 조차도 있다. 그것도 이러한 현상은 전답경영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답경영은 공업에 있어서와 같이 한 작업장에서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을 경작하여야 하며 따라서 부차적인 수단 즉 순수한 생산적인 노동시간을 소모해 버리는 준비시간이나 기타 한가한 시간이 생기게 된다. 농경에 있어서 비생산적인 시간의 증가는 대규모기계를 연결하여 하는 공업의 생산실적에 비하여 몇배나 결정적인 것이다.

판매용 가축사육에 있어서도 역시 소요되는 최소가축 수는 설치한
부축재(牧蓄材)를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규정된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노동가능성(Arbeitspotential)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이다. 이점에 대하여 다음에 경작면적과 상관의 없는 경영부분중
에서 양돈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총수량에 대한 예시를 해보겠다

우리간 기구능동의 용량(Kapazität)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
돼지 200 두 또는 연간생산 400 두에 달할 수 있다. 또한 노
동생산력도 이 수량정도에서 이미 최적조건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그것은 물론 돼지 400 두 생산을 위하여 다만 600 AKh(시간당
노동력)가 배당된다는 조건하에서 이다.

그러나 노동력하나가 일년간 양돈에 완전히 종사하려면 가축총수
600 마리와 큰돼지 연간생산 1,200 두가 필요하다. 가축총수를 그
이상 증가시킬경우 부차적인 생산가감하나 노동시간당 수입증가도
기할 수 없다.

돼지 10,000 두가 대략 16개 최적 가축총수준에 해당할 것이
다. 그리고 돼지 한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얻을수 있는 소득
은 각기 동비율로 나타난다. 따라서 각 경영부문에서 생산을 확대
함으로써 생산원가절감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

다만 생산확대에 의해서도 관리면에서나 경작면적 ha당 수확이
나 또는 가축생산실적면에서 손상을 입지 않는다면 각 경영부문의
생산확대 또는 각 노동력당 생산확대는 생산원가절감이라는 의미에
서 효과적이다.

한 기업부문의 소요최소한용량이 거의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관리(管理)의 질적문제가 경작면적의 크기나 가축총수보다도 생산의 수익성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더 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노동생산력이나 각 노동력당 수입의 최고점에 달하기 위해서 또는 최저 생산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농장경영 또는 막대한 가축총수가 필요치 않다고 본다.

서독에 있어서도 최고의 노동생산력을 달성한 것은 몇개 남지 않은 대단위농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되고 규모도 적절히 큰 가정노동제로 운영하는 농장에서 달성하고 있다.

임금노동제나 노동시간당 임금제로 운영하는 대규모영농-LPG III 형태 이에 속한다. -에 비하여 가정노동제(Familienarbeitsverfassung)로 경영하는 농부의 자작영농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즉 농가의 가족 각자는 시간당 임금제로 일하는 고용노동자 보다 근본적으로 더 적절하게 공백기 없이 작업이 필요한 때에 그들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다.

농업을 현대 공업국가의 국민경제 조건에 적응시키는 문제는 결코 가축총수나 영농규모에 관한 문제 뿐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기술성장을 발전시키고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과 영농체 운영과 관리의 실적문제이다.

동독농업에 있어서 기술적인 진보발달은 서독에 있어서 보다 지부진한 난행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후진성의 주요원인은 수확고를 증진시킬 요인이 될만한 영농재를 농업을 위하여 충분히 공급

하지 못한 점과 기계화를 위한 투자가 부족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계획농업관리체제 하에 있어서 영농관리에 대한 개인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술발달을 도입하는 사무를 전적으로 까다롭고 관료적이며 중앙집권적인 행정관리(行政管理)에 일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발전을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발전의 자주성마저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뒤늦게나마 서서히 서방측에서 이런점에 관하여 성공한 것을 차용하기에 이르렀다.

발달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역시 영농체의 크기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독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에 기술이용에 의한 가장 좋은 성과를 대단위 영농뿐만 아니라 가족노동제로 운영하는 중정도의 잘 관리된 농장에서 거두고 있다.

서독에서는 경영체의 수가 계속 증가함으로 경영기구 또는 경영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결론을 지금과는 다른 생산조건에서 이끌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정체 현상 없이 경영체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도를 강구해내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현대식 경영수단을 사용한다면 경영주의 능력과 실적이 경영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유능한 경영관리라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행정관리에 의한 감독으로 대치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은 최근 수년간에 공산주의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증명된바 있다

그리하여 OMECON 각 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소간에 또는 공공연하게 혹은 비밀리에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반사람들은 동독에 있어서 불과 16,000 개의 사회주의 대단위 경영농장을 이끌어내야할 적합한 지배인을 선출한다는 것은 약 400,000 개의 완전 영리기업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서독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한편 서독의 농장중에서 불과 158,000 개 만이 경작면적 20 ha 이상의 전답을 경작하고 있다. 동독의 모든 대단위농장들은 최소한 보통정도의 영농은 필히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단위농장 경영관리에 요구되는 교육과 능력은 영농관리자이며 동시에 노동력의 주력(主力)인 한 농부의 경우에 비하여 더 크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농업조합의 농장관리는 점차로 기술의 진보를 이용하여 관리를 충분히 해나가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농장 경영관리에 의해서 적절한 노동력의 배치 <축척> (Akkumulation)을 넘어서 자본화한 기금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같은 자본재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것 등은 서독의 잡다한 자작영농의 경우보다 더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음직한 일이다. -

농업조합(LPG)에 있어서는 결정권과 책임이 농장관리부에 있다. 한편 조합원은 책임도 적고 시간제로 임금이 지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자연 이에따라 책임도 대부분 면제되어 있다. 따라서 장래를 위해서 감독관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농업정책을 수행한다면

영농자의 수입을 평준화하고 다른 직업에 종업원의 수입에 뒤떨어지지 않는 평균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숙련공(熟練工)의 수준을 능가하는 고액소득은 농장관리인 농학자 전문가만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서독에 있어서도 많은 자작농부는 현재 농업노동자가 받는 수입만큼도 벌지 못하고 있다.

이익배당시에 농장관리인 전문가들은 이익배당시에 물론 경영성과를 최대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물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타의 조합원은 III형 농업조합에서(LPG Typ III) 지급하는 이익배당을 실적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기치 않았던 위험이 닥쳐올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비용이나 책임하에 영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정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물질적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은 다만 해고와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 심중판구이다. 이러한 것은 보통 농업에 있어서는 공업에 있어서와 같은 비율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농업조합에는 충분한 노동력이 있어 상호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들에게 충분한 자유시간과 일정한 휴가를 준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공산주의제도 하에서는 영농자(營農者)들이 일하는데 위험성은 서독농부에 비해서 적다하겠으나 수입을 건물 찬스는 한층 제약을 받고 있다.

서방국가에 있어서는 농업에서 얻는 수입 즉 자본이득과 노동이득을 모두 자작농이나 그 가족이 취득한다.

그들은 자신의 경비와 책임하에 영농하며 영농소득은 그들의 수입이 된다. 따라서 상여금 등을 지급하여 업적을 올리도록 특별히 격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독자적인 기업가로서 생산과정에서 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부는 영농관리인일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유일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과 영농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서 휴가나 질병고(病故) 중에 어떻게 교체하느냐 하는 것은 곤란한 사회적 문제이다.

농림향 입지 조건에서 영농성과는 오로지 농부와 그가족의 능력과 실적에 달려있다. 농부들이 경영하는 농장 수가 대다수이고로 농장운영면에서 어느정도 비등한 수준에 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으로써 또한 영농자의 수입을 평준화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최근 수년간에 서독에 있어서는 농업분야에 수입불균형은 계속 증가하여가고 있다.

기술적 진보발전의 혜택을 입어 오늘날 유능한 농부들에게는 지금까지 알려지고 **않**았던 수입증대의 가능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본투자농업에 있어서 이미 그릇된 자본투자와 경영실의 실패등이 민감한 경영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하여 현재 가족단위로 관리를 잘하는 적당한 규모의 농장에서 거두고 있는 수입은 과거 10년전에 수입을 대폭 상회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농업조합에서라면 농장지배인 정도나 거둘수 있을지 모르나 기타 조합원으로서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는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농을 포기하여야 할 처지에 빠진 농부가 속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세농민으로서의 요구조건이 많은 현대식

농장을 운영할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서방식 농업제도 하에서는 농장경영에 있어서 기업적 위험성이 많고 영농자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항상 변화하는 까닭에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의심할 여지도 없다.

농업생산과정의 규격통일이나 도식화가 불가능하며 또 농장에 따라 계절에 따라 노동조건이 변하는 까닭에 영농자의 농장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발적행위가 다른 부문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보다 한층 중하다.

농업발전의 최고수준에 달하고 현대공업국가의 국민경제 조건에 가장 유리하게 적응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가족단위 자작농장에서 농업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U S A에 대해서만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에 필요 불가결한 책임감이나 위험에 대한 각오등은 농부들에서 기대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들은 자기 소유지에 자비로 충분한 생산조건하에 영농하고자도 결국에는 자기노동의 보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4 . 생 산 의 신 축 성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변화하는 판매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업생산의 신축성이다. 생산의 신축성은 토지와 결부된 생산물의 경우 공업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으로 한층 제한을 받게 된다.

노임고용제로 운영되는 대단위 농장의 농업은 가족노동 단위제로 운영하는 농장경영에 비하여 생산신축성이 자유자재이다. 특히 일인당 노동력에 대한 경작면적이 협소한 가족노동제 영농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실사 LPG Typ III의 조합원들이 토지대장에 등기한 대지와 토지의 소유자이며 조합의 공동재산의 배당을 받는 경우이라도 그들은 그 재산을 자유처분하거나 현금을 받고 매도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서독의 자작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바와 같은 재산에 대한 연고관계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조합에서 농장에 종사하는 영농자의 임의이주권(任意移住權)은 대지와 토지를 무제한 소유하는 서독의 자작농의 경우보다 크다. 하겠다. 그 결과 노동배치나 농업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수는 국민소유 농장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농장조직의 경영상 필요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서 대체로 농토가 빈약한 서독의 농장에 있어서는 가족노동제로 영농을 하고 있어서 농장조직과 경영관리를 영농자의 확고한 노동능력을 철저하게 이용함으로써 달성하여야 한다. 그 결과 농업생산은 일반적으로 농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인근노동

제 (Lohnarbeitsverfassung) 로 운영하는 농장에 있어서 보다 적응능력이 적고 노동력 배치도 신축성이 약하다.

이러한 사실이 현재 서독에 있어서 젓소사육 과잉생산 제한을 지극히 곤란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부가 경영하는 농장의 수가 허다하여 농부의 노동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경영분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내의 농장을 본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곧 젓소사육제한을 하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농부의 노동수입 개혁을 초래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가족노동제로 좀더 큰 농장단위를 경영할때의 이익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즉 농부의 노동력은 주로 노동생산성이 특히 조방(粗放)적인 영농부류에서 노동시간당 그 임금을 지불하고 주입(注入)되는 것이다.

대단위 농장 창설은 전답에서 생산하는 집중영농부류의 생산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다.

서독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에 농부들이 외래노동력은 해고시켰는데 그것은 수입인상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으로써 그들 자신의 노동생산력도 상승시켰다.

노동생산력과 수입의 개선을 위하여 이 조치가 충분한 구실을 하지 못하는한 농장규모의 확대는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농자들이 장차 바라고 있는 수입인상요구는 서방국가의 농업제도면에 있어서 계속적인 농장규모 확대를 요망하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 생산조합에서는 농업조합의 조합원수 감축은 영농자들에게 더 큰 경작면적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구실을 한다. 따라서 노동력 배치를 함에 있어서의 큰 신축성은 농업조합 내부에서 커져가고 있는 수입증가요구에 대처할 적응성을 형성할

수도 있게 되며 토지를 무제한 소유하고 있는 자작농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USA나 스웨덴에서 얻어진 경험에 따르면 농장의 확대는 국민경제 조건이 그것을 원하거나 또는 이농부(離農夫)가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충분히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경우 놀라울만큼 유익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동독과 서독에 있어서의 협동문제 (協動問題)

동서 양단 독일내에서 현재 농업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토론의 중심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협동(協動 Kooperation) 문제이다. 협동은 현대 공업국가의 국민경제요구에 농업이 적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처라고 간주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협동의 과제나 개념의 적용에 관한 해석도 대략 동서 간에 비슷하다. 그리하여 생산과 판매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각 기업체 간에 계약상 규정된 모든 공동작업(Zusammenarbeit)을 협동이라고 생각한다.

협동은 농업경영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것이나 농업적 기업과 비농업적 기업간에 공동작업을 토대로 할 수도 있다. 협동이라는 의미에서 경영체들이 공동작업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참여한 경영체의 독자적 경영이나 또는 개별적인 경영분야의 독자적 경영은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개별적인 경영부분의 공동경영이나 경영업체 전체의 공동경영을 계획하게 될 경우 서독에서는 이것을 동격화(Koordi-

nation) 또는 연합 (Fusion)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 LPG Typ I 이 농부들의 동격화 또는 합동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부들은 농업이라는 경영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한편에서는 판매용 가축사육 이라는 가장 중요한 경영부문에 관한 결정권은 그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의 구상이나 실천 면은 동서 양독일 간에 대단히 차이가 크다. 다음 고찰에서는 <협동>과 <동격화>가 생산과정의 합리화 즉 농장 경영에 미친 효과에만 한정시키고자 한다.

공산주의 제도에서 흔히 있는 바와 같이 동독에 있어서 <협동>도 중앙 행정관리기관 a Priori () 에 의해서 계획되고 또한 제기(提起) 될 뿐 아니라 감독 실천되고 종국에는 법적으로 규정된다.

이에 반해서 서독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다루고 토론도 해보고 추천도 하여 어느정도 국비보조나 장려도 해준다. 예컨대 EWG 내에 <생산자 공동체 (Erzeuger-Gemeinschaften)> 같은 것이 바로 그 예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발전이나 어느 부분에 도입하는 것은 독자적 기업가의 자유 경영이나 판단에 맡겨 둔다.

그러나 <협동>외를 위한 농업정책적 또는 농장경영 상의 여건은 양독일 간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자적이고 자비로 경영하는 동부는 공산주의 제도하에서 필요치 않다. 그것도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서 만은 아니다. 즉 농업조합의 생산은 대단위 농장에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조합원도 이득활당에 참여하기는 하나 다만 독자적인 결정권 것이 상담할 권한만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은 고용인 또는 임금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서방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자비에 의해서 경영하는 농부가 농업 정책 구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협동>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농부들에게 경영적인 면에서 생산조건을 개선하고 그리하여 농부의 수입을 증가시켜주는 임무밖에 없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기업가의 자유결정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진다.

동독에서는 협동의 목표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내세우고 있다. 공업에 적합한 생산방법의 도입, 생산증가와 노동생산력의, 양양 자체비용 절감과 주간산업분야의 전문화등

따라서 <협동>에 의해서 총생산과정의 능률상승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취농자의 수입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코 <협동>에 대한 구상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못된다. <협동>의 효율은 몇몇개의 사회주의 대농장이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주의 대농장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서독에 성립되어가고 있는 대농장보다 경작면적이 훨씬 크다.

이러한 공동작업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나 또는 공동으로 장만한 기계 건물등을 공동사용 함으로써 생산재를 합리적으로 투입하자는 것이다. 그런것 중에 전조장 혼합 사료공장 토지개량조합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협동>은 서방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흔히 있는 일이며 비교적 소규모 영농이기 때문에 대단위 농장에 있어서 보다는 본질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특히 상술한 대규모시설이 문제되지 않는 한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동독의 <협동조합> (Kooperationsgemeinschaften) 들의 구조와 법적 형태도 이미 구상이 끝나 확정되었고 법규 (法規)도 명령에 따라 이미 규정되었다. 이 조합의 최고기관은 전권을 위임받는 회의 (Bevollmächtigtenversammlung) 이다. 이 회의에서 회원업체는 전권을 위임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협동조합의 회원업체 상호간의 관계는 노동규칙과 협동에 의해서 계약형식으로 규정된다. 족장제도적 (族長制度的) 으로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협동평의회 (Kooperationsrat) 는 각 기업체의 공동작업을 조직화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1966년 7월 10일자 각령 (閣令)에 의하여 법인체로서의 권리능력 (die Rechtsfähigkeit einer juristischen Person) 을 협동조합에 부여할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이 법인체는 조합소속 공동재산을 상당한 수준까지 형성할 권한까지도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상당수의 협동조합들이 생산조합 또는 개인 소유 농장들이 참여함으로써 생겨났으며 그러한 조합들의 작업범위는 3,000~7,000 ha LN (주 LN는 경작면적) 을 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동조합들을 창설한

것 만으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아직 생
 기지 않은 영농별 단위 즉 예를 들어 곡물재배 감자재배, 사탕무우
 우 재배, 젖소사육, 생우사육, 생돈사육등등으로 분류해서 특수생산분
 야 별로 완전히 나누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독립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독립된 생산분야들은 모든 단계의 생산자 (Stufenprod-
 uzenten) 들의 <협동연합회들>(Kooperationsverbänden) 에
 가입하고 나서 총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선두에는 <최종생산자>
 (Endproduzent) 즉 가공업체가 서게 된다. 이것은 바로 농업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관생산 (一貫生産) Verbundproduktion)
 을 포기하고 외부와 폐쇄된, 경영상 자체내에서 껍도는 경영단위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류된 생산분야에서 필요한 생산재
 나 생산물을 상호간에 교환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또는 <조합돈>
 (Gemssenschaftsgeld) 로 지불하여야 한다.

노동의 균일화는 한 경영단위 내에서 개별적인 경영분야의 제작
 기 다른 노동요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각 생
 산단위 사이에서 제약할수 있는 규약에 의해서 합칠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얻어진 농업생산의 전반적 전진화는 지금까지의 사회
 주의 대단위경영의 한계를 넘어서 새롭고 거창한 실험을 하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런것은 아직 어느 타국에서 공산주
 의 국가에 있어서조차도 일찍이 시도한바가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거대한 투자가 특히 대규모 사육장을 위해서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상황을 그것이 초래할 최종결과 까지 고찰한다면 농
 업조합 (LPG) 의 농장단위는 해체되고 광범위하게 획득한 독자적

것 만으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아직 생
 기지 않은 영농별 단위 즉 예를 들어 곡물재배 감자재배, 사탕무
 우 재배, 젓소사육, 생우사육, 생돈사육등등으로 분류해서 특수생산분
 야 별로 완전히 나누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독립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독립된 생산분야들은 모든 단계의 생산자 (Stufenprod-
 uzenten) 들의 <협동연합회들>(Kooperationsverbänden) 에
 가입하고 나서 총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선두에는 <최종생산자>
 (Endproduzent) 즉 가공업체가 서게 된다. 이것은 바로 농업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관생산 (一貫生産) Verbundproduktion)
 을 포기하고 외부와 폐쇄된, 경영상 자체내에서 껍도는 경영 단위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류된 생산분야에서 필요한 생산재
 나 생산물을 상호간에 교환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또는 <조합돈>
 (Gemeinschaftsgeld) 로 지불하여야 한다.

노동의 균일화는 한 경영단위 내에서 개별적인 경영분야의 제각
 기 다른 노동요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각 생
 산단위 사이에서 제약할수 있는 규약에 의해서 합칠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얻어진 농업생산의 전반적 전진화는 지금까지의 사회
 주의 대단위경영의 한계를 넘어서 새롭고 거창한 실험을 하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런것은 아직 어느 타국에서 공산주
 의 국가에 있어서조차도 일찌기 시도한바가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거대한 투자가 특히 대규모 사육장을 위해서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상황을 그것이 초래할 최종결과 까지 고찰한다면 농
 업조합 (LPG) 의 농장단위는 해체되고 광범위하게 획득한 독자적

결정권은 <협동조합> 또는 <협동연합회>로 이양될 것이다. <협동연합회>는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생산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거대한 행정단위에 의해서 이러한 행정단위는 아직 농업분야에 적용된 적이 없다. 이미 협소한 생산지에서도 대단히 차이가 나는 생산조건에 하물며 농업생산을 신축성 있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서방국가에 자작-농업에는 전혀 없는 행정비용이 점차 증가해가고 있는데 이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자체비용의 효율적인 절감을 군소영농단위에 대해서 단행하는바 없이는 상기한 농업생산의 적응성 또는 신축성은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사회주의 대농장>이 농업의 초대단위화를 위하여 LPG가 겨우 획득한 경영상의 자주성이나 또는 영농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다시 지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감독청을 대치한다면 이러한 실험은 최근 수년간에 생산의 합리화면에서 달성된 진보는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혹시 <농촌에서의 광범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발전은 경제적 입장에서 볼때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사실 농촌 촌락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수년전에 선전한 <농촌도시> (Agro-Städte) 를 창설한다는 것이며 농업을 공업화하기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광작(広作) 하는 것과 결부시켜 농촌도시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서독에서 가족노동제로 운영하는 자작농이 지배적인 영농업체라면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농업정책 초안은

기초자의 견해에 따라-바람직한 농업구조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 a) 농업에 있어서 수입은 주로 자작농의 소득이 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작업으로 취득하게 되어야 한다.
 - b) 농업에서 충분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영농자가 노동에 의한 수입이나 자본에 의한 수익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 c) 따라서 영농자는 원칙상 농장의 재산소유주이며 또한 농장의 본질적인 노동력이어야 한다.
 - d) 생산능율이나 영농자의 수입에 대하여 결정적인 것은 농장단위의 크기 그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인당 노동력이 처리할 수 있는 경작면적과 가축총수의 용량에 달려있다
 - e) 자작농의 <동격화> (Koordination) 또는 <연합> (Fusion) 등은 그것이 경영상의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조합원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동시에 재산소유주가 되는 그러한 조합형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농토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수익은 재산소유자가 얻게 되고 노동수입은 임금제 고용노동자가 얻게 되는 까닭에서이다.
- 예를 들어 산약에 <동격화> 형태로서 조합이나 GmbH (유한책임회사) 또는 A.G (주식회사) 가 된다면 거기에서

이하는 사람들은 조합원 또한 회사원 주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독의 농업에 있어서 <협동> (Koo peration) 은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특히 가족노동제로 경영하는 자작농 경영을 존속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I) 협동은 영농재를 공동 사용 함으로써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값비싼 자본재의 적절한 수용력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값비싼 자본재라 함은 예를 들어 대형 연결기재 (連結機械) 건조시설, 배합시설 품별설비 (品別設備) 를 말한다.

이것은 옛부터 보존되어 온 동료적인 협동이라 소위 말하는 기계카르텔 (Maschinenringen) 이니 기계은행 (Maschinenbanken) 이니 하는 형태로 실시되어 온 것과 같은데 그런것은 아직 바람직한 보급을 못하고 있다.

(II) 협동은 경영체의 다수가 합동작업을 함으로써 품질이 일정한 상품을 대량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는 사정에 따라서 시장화하는 것에 까지도 개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급의 집중화는 <협동가입회원>의 생산달성에 관한 공동 협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것에 의하여 가능한 한 유리하고 고정된 가격조달을 위하여 노력할 뿐 아니라 회원들이 관리개선을 위하여 생산협의를 할 기반이 만들어지기

도 한다. -이런것은 EWG 위원회에 의해서 촉진된 생산자조합이다. (Erzeugergemeinschaften) 생산자조합은 서독에 있어서 시장조직법 (Marktstruktursesetz) 속에 그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III) <협동>은 농업 생산자와 대도매상간에 특히 가공공업과의 거래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자 조직체는 만족할 만한 계약농업을 (Vertragslandwirtschaft) 위해서 불가결이 여건이며 특히 유리한 계약조건, 풍족하고도 가능하면 고정된 가격을 견지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이 그렇다.

(IV) 협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야 한다. 즉 영농자가 경영체와 노동경제적으로 결합하는 문제 (Arbeitswirtschaftliche Bindung) 와 가족노동제에 있어서 부족한 노동력 대치가 불충분하다는 문제등이다. 경영협조조합 (Die Betriebshelfergemeinschaften) 은 협동하는 농장들에게 농부나 가족이 병이 나거나 또는 휴가이행을 하고 자할 때는 보조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협동형식은 서독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나 점차 보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작농의 대부분이 자기집을 가진 몇몇 자유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가장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다. 농부가 경영하는 농장에는 최소한 결혼한 농촌노동가족 한세대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금까지 여러번 제출되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60 ha LN 정도

까지는 농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까지 인정한 협동 형태에 있어서의 결정권이 자유(자작농의)는 침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서 몇몇개 농장의 Koordination 또는 Fusion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다.

(V) 부분연합 (Die Teilunion)은 개별적 경영분야의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협동한 농부의 결정권은 해당경영분야만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경영에 대하여는 결정권이 있다. 부분연합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하겠다.

경영상 비중이 적은 경작과 같은 경영분야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공동관리되고 이러한 노동력은 수입성이 강한 생산분야 예를 들어 포도재배 과수재배 호두재배 등등 특수재배에 투입되어야 한다.

젓소 사육 양돈과 같은 가축개량 농업 같은 경영분야는 공동으로 경영관리하게 된다. 그것은 경작면적과 가축수를 증대함으로써 생산가절감과 노동생산력의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대량 가축관리를 목적으로 한 부분연합의 완전한 효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즉 농부자신이 작업을 수행할 때 따라서 임금제노동력을 고용하지 않을 때에 나타난다. 이러한 고용노동력은 수입의 일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연합에 대한 대표적이고 유의할만한 실례는 동독의 LPG Typ I 과 폴란드에서 볼 수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용가축은 농부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다만 농토만 공동 집단으로 관리한다. 가장 중요한 영농분야인 유용가축사육은 농부 자신의 비용으로 하고 그 결과 농부가 전체생산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을 확보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동독에 있어서 가축생산 비용이 높은 까닭에 LPG Typ I 의 농부들은 상당히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어 그만 못한 Typ의 생산조합들은 점차 해체되어 Typ III으로 이양되어가고 있다. 서방국가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부분연합이 발전한다면 경작면에서가 아니라 주로 가축사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경작을 합리적으로 해나갈려면 일반적으로 이웃사람의 조력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어느 영농부들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고용인부를 거느리고 농부가 자비로 해나간다. 그것은 이에 관여한 농장이 질적으로 훌륭한 생산재를 가지고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어린가축들을. 이것은 예를 들어 공동 양돈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농부는 일류급 새끼돼지를 가지고 사육을 담당한다. 사육은 가장 좋은 사육조건 하에 양돈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개별적인 농장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사육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 경영분야의 이와 같은 분리는 개인영농을 하여도 농부의 노동력을 충분히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일

거리가 충분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전체 경영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완전연합 (Die Vollfusion)

상술한 협동의 장점과 더불어 완전연합은 조합원을 그들의 능력과 흥미에 적합하게 전문화하거나 노동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협동의 경우에는 좀더 생산적으로 능력을 이용한다든가 상당히 많은 가축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든가 농부 상호간에 노동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완전연합의 단점은 개별적인 경영관리인의 자주성을 포기한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농장조직과 경영운영 면의 모든 조치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동료적인 경영관리> (die Kollegiale Betriebsleitung) 에 참여하는 모든 농부들의 <집단결의> (Kollektive Beschlüsse) 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문제점은 연합회원에게 자본이득이나 노동수입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연합이 만족할만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회원상호간에 무한한 신임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되겠다.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진실로 동료적인 친밀한 경영관리를 수행하려면 참여자수를 최고 4~6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은 불가피하다. 회원의 조화(調和)가 비상하게 필요한 까닭에 그 결과로서 완전연합은 무의미한 이례적인 것은 삼가하여야 한다.

특히 완전 연합의 여러가지 장점은 이미 <협동>이나 <부분연합>의 온전한 형태에서 거의 달성되었다고 하겠으니까

소규모 농업 지역에서는 <협동>이 협소한 영농면적의 확대를 대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어 평균 15 ha LN 의 농장 10 개가 상호 협동한다면 경영상의 효율은 겨우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부의 50%가 이농해서 농업이외의 일을 찾는다면 전토지 경영은 남은 농부 5 명에게 위임되는 셈이다.

대단히 경사진 중부산맥지대 같이 많은 불리한 입지상황 하에서는 영세농업에서 상당한 크기의 대단위 농장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동독에 있어서조차 아직 12,000 개의 자작 영세농장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영세자작농은 입지사정으로 인해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중부산맥지대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영세농을 집단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협동은 입지사정의 곤란성을 어느정도 완화해 주는데 유일한 협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고지대의 지극히 불리한 입지조건하에서는 농업용으로 이득을 취득한다는 것은 부업삼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농업생산으로는 현대 생활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입을 도모할 수 없는 까닭에서 그런것이다.

협동 (b i e k o o p e r a t i o n) 이 나 동격화 (K o o r d i n a t i o n) 은 농민의 사회적 위치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한 수입을 만들어 준다든가 보장하지는 못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농장의 크기와 관리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 즉 경영의 질적문제이다 .

가족노동제로 운영하는 서방측 자작농을 여러 세대가 같이 일하는 대농장식의 상당한 광작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전혀 애써 그럴 필요성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 .

상호 경제원조 평의회와
독일 국내 경제관계

논 분 작 성 자

칼 . 시 . 탈하임
(Von Karl C. Thalheim)

1950년 9월 이래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은 1949년 1월 23일 창설된 <상호 경제원조 평의회> (Der 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 RGW)의 회원이다. RGW의 성립사와 발전에 관해서는 이미 주지된 사실이며 본 보고분의 다른 부분에서 상세하게 취급된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하는 것은 그 결과이다. 즉 동독이 소련 영도하에 있는 블록에 소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독일 국내 경제관계에 미치게된 결과이다.

우선 이 평의회가 미친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양단 독일 간에 상품 노부(勞務) 교환의 수준이 대단히 저조한 것도 Comecon 내에 있어서 동독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라는 점도 의심할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1949년 스탈린이 RGW를 창설하였을때 그의 눈 앞에 떠오른 것은 소련 지배권(圈)을 위한 자급자족지역의 확대이었으며, ERP (European Recovery Program)의 적극적인 영향에 대비해서 당지의 위성국가들을 차폐(遮蔽)하려고 한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저서인 <소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분제>에서 스탈린은 가장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단일 경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날카롭게 상호 분리된 두개의 경제가 있을 뿐이며 좁은 다리로 상호 결부된 세계시장이 있을 뿐이다. 그 하나는 민주적 세계시장이며 또 하나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이다.》라고.

이러한 스탈린의 명제는 그후 수년 간에 소련과 위성국가의 전

체 문헌에 이의 없이 수록되어 무한히 반복되었다. <정치적 경제> (Politische Ökonomie) 라고 하는 교서의 초판 마지막 장 (42) <사회주의 진영 각국의 경제적 공동작업> (Die wirtschaftliche Eusammenheit der Länder des sozialistischen Lagers) 같은데서 볼 수 있다. 이 명제는 사회주의 국가 간의 경제관계의 확고성과 지속성을 주장하고 또 모든 R3W 가입국가의 완전한 동등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동 교서는 또 주장하기를, 그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은 불안정, 점차 더해가는 내충의 빈궁과 그 결과로 생기는 발전의 위축, 점차 증대해가는 판매의 곤란성, 독점에 의한 약자 착취 등으로 특색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서 말하기를 :

<사회주의 진영 각국 간에 경제적 공동작업은 발전하고 새로운 분업, 사회주의적 국제적분업의 기반 위에 확립된다. 이 분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국제적 분업과는 원칙적으로 판이하다. >

동독에 있어서 이 근본적 견해를 계승하고 있음은 예를들어 동 베르린 학술원 경제학 연구소 소장이었던 Günther Kohlmey 박사의 저서 <민주적 세계시장,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성립, 특징과 의의> (Der demokratische Weltmarkt. Entstehung, Merkmale und Bedeutung für den sozialistischen Aufbau) 에 표현되어 있다. — 물론 그 <교서> (Lehrbuch) 보다는 지적 수준이 높다 하겠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성장하는 민주적 세계시장은 붕괴하며 위축되어가는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병행하여 자본주의 세계시장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할 시기에 생존한다. >

바로 이 인용분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다. 즉 농독의 지도적 국민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사상적 속박으로 인해서 사실을 인식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세계무역량은 1955~1967년 간에 다음과 같은 정도로 증가 하였다.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 공산 치하의 국가는 포함되지 않은것)

1955 년 188.1

1967 년 396.4

(1936 년을 100 으로)

세계무역은 이 시기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며, <위축되어가는 자본주의 세계시장> 운운하는 것은 추호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실은 스탈린에 의해서 제정된 <사회주의 세계시장>의 이데오로기도 목표로 삼았던 완전 자급자족은 이루지 못하였다. <정치적, 경제> 교서 초판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사회주의 진영각국 간에 경제적 공동작업의 광범한 발전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통상 관계 확대를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을 위한 유리한 예전과 조건을 만들었다. …… ……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통상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생활수준을 상승시키는 요소중의 하나라고 간주한다.

양대 진영 각국 간에 있어서 통상관계의 발전은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에게 더 큰 의의가 있음은 특히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점차 격화해가는 위축에 의하여 입증된다.》

교서 4판에서는 한층 더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

《사회주의 세계시장은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상호 의존함으로써 발전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쇠국적 경제불력이 아니며 그렇게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단결은 다른 국가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평화로운 여건하에 인류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양대 체제 간에 경제관계가 깊어지고 세계시장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그와 동시에 세계사회주의의 생산력 증대는 국제적 공동작업에 전도양모한 미래상을 전개하는 것이다.》

소련의 정치사상이나 경제학은 현재도 아직 이러한 근본적인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출판된 방대한 분량의 소련전집(사회주의 세계경제제도 4권)에는 다시 이 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즉 세계시장이 사회주의 세계시장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좋은> 경제정책이나 또는 <나쁜> 경제 정책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붕괴에 의해서 생겼으며 또한 그것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세계조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통일, 또는 세계시장 통일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세계조직이 설립되기 이전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전집은 다른 곳에는 그러나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사회주의 세계제도는 넘을수 없는 성벽으로 자본주의 제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외무역, 신용거래관계, 학술 기술 교류 등등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일정한 경제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경제관계 발전은 한 객관적이며 정당한 과정이다.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이 세상에 성립됨으로써 양대 제도 국가 간에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

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이 관계에 있어서는 비단 소련 경제정책 뿐 아니라 소련식 중앙집권적 경제를 계승한 모든 국가들의 경제정책도 이데오로기와 현실의 요구 사이에 빗어진 모순에 빠져있다.

과동이 없는 안정된 사회주의적 세계시장 이념, 사회주의 국가들의 봉료적인 결속의 명제(회원국의 완전한 주권 존중과 독립이 RGW 설립기본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불려내부 시장에서

가능한 한 광범한 내외무역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계획 조직의 결과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중앙의 계획은 잘알수 없는 계획의 규모 또는 계획의 가정(추량)등을 최소화 할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내외무역을 그러한 계획의 일부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판매 용량이나 취득 가격, 또는 지불 가격 등이 그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제도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이고 장래의 계획과 일치하는 통상조약 체결에 의한 것이다.

1948년 여름 모스크바와 벨그라트 간에 갈등이 폭발한 이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동구라파 블록의 경제 봉쇄라든가, 소련과 중국 간의 갈등이 날카로워진 이후 중소 경제관계가 급속히 후퇴한 사실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비한다면 이러한 경제적 안정성은 상당히 그 정도가 높다 하겠다.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본다면 이렇게 재빨리 경제관계가 후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기업가 개개인이 우선 대외무역업무를 결정하는 국가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정치적 대립이 명실공히 관세전쟁 또는 무역전쟁을 이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극히 회소한 예외적 현상이기는 하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은 현재 동구라파 블록 내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른다. 불럭내 통상에 너무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 부당함을 실증할만한 경제적 요소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구상의 경제에서 비교적 협소한 한 단면에 한정한다는 것은 대외통상의 확대가능성을 극히 제한시킨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우선 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동구라파 불럭의 비교적 국토는 적으나 경제적으로는 고도로 발전한 지역에 대해서 소련이나 강대국에 대해서 보다 더 불쾌한 작용을 할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권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자체 영토내에 있는 자원이 (그것에 의해서 자급자족능력이) 다양적일 수록 세계 경제에 의하여 강력히 보완할 필요성은 적어지는 법이다. 그 이유는 이미 생산력을 전국적으로 연합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기에 충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세계 경제의 양대국인 USA와 소련이 사회생산 (Sozial produkt)면에서 비교적 외부경제와의 관계가 적다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농독의 실정 :

1937년 현재 국경선 내의 전 독일 시대에 소유하고 있었던 천연자원은 미약한 것에 불과하였다. 민족사회주의의 자급자족 정책은 이러한 실정을 유감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농독은 SED (독일 통일사회당)가 <독일 민주 공화국>이라고 선언한 전 독일의 소 부분에 불과하다.

농독은 이러한 정도 내에서 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그 결과 공업용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농독 내의 완제품 산업을 위한 판매시장이 여러가지 경우

에 국내 만으로는 부족한 까닭에 충분히 효율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차적인 판매가능성을 독일의, 다른 부분(주로 현재의 서독)에 또는 외국에서 찾아야 할 필연성에 놓이게 되었다. 삭센주와 튀링겐주의 공업단지(Sächsische thüringische Industriegebiet)가 이미 전부터 세계시장과 고도로 결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분단된 독일 각지역 상호간의 경제적 연결관계에 관한 통계자료가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는 불확실하여 이것을 자료로 사용하여야 함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만 Bruno Gleitze가 그의 소중한 저서 <동독의 경제>(Ostdeutsche Wirtschaft: Probleme Industrielle Standorte und volkswirtschaftliche Kapazitäten des ungeheilten Deutschland)라고 하는 출전(出典)속에 해명하고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과 수출 양면에서 동독 경제는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몇개안되는 통계숫자이나마 아래의 도표가 1936년 당시의 동독영역내의 경제 실정을 명백히 할 수 있다.

한편 1936년에 현재의 동독영역 내에 당시의 전 독일 국민의 약 24%가 거주하고 있었다.

여기에 나열한 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총생산량에 대한 동독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동독의 생산만가지고도 전독일의 대부분에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비중이 큰 것이다.

현 동독의 담당분

	종업원중에서	총판매량중에서
함 석 공 업	31.8	25.5
공작기계공업	33.1	29.4
방직기계공업	55.0	54.1
포 장 공 업	37.1	35.0
제지가공공업	41.7	37.5
편물직조공업	61.8	63.0
모피가공업	96.2	94.1

1928 ~ 1937년에 현 동구라파블력 각국과 당시의 독일과의 교역 상황은 수출 확립면에서 다음과 같다.

	수 입 비 율		수 출 비 율	
	1928	1937	1928	1937
소 련	2.7	1.2	3.3	2.0
체코스로바퀴아	3.8	2.6	5.4	2.6
폴 렌 드	2.5	1.3	3.3	1.2
항 가 리	0.5	2.1	1.3	1.9
루 마 니 아	1.3	3.3	1.4	2.2
불 가 리 아	0.4	1.3	0.3	1.2
알 바 니 아	0.0	0.0	0.0	0.0
	11.2	11.8	15.0	11.0

따라서 상기한 도표에 의하면 현재 동구블럭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이 전 독일 대외무역에 참여한 비중은 11~15%이다. 한편 1928과 1937년 사이에 남구라파에 대한 경제관계 확대를 지향한 민족사회주의(Nationalsozialismns)의 대외무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여전하였기 때문에 수출이 오히려 감퇴되기까지 하였다.

독일 수출품의 생산지역, 별로 분류된 수출통계표는 없다. 그러나 동구블럭이 현재 동독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을 상대로한 무역에 전독일을 상대로한 무역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삭센(Sachsen)주가 경계선지역에 위치하는 까닭에 체코스로바키아의 삭센주에 대한 무역 분량이 독일에 대한 분량의 평균수량보다 약간 높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결정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동독지역의 국외 무역관계는 주로 서방측에 주력하여 왔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다. 따라서 동독이 전후에 정치적으로 소련에 예속되어 있고, 또 RGW에 소속되어 있어서 동구라파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동독 경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결정적인 구조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독일 국내에서의 상품, 노력(勞力)의 교환이나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를 소련 또는 소련권내의 각국과 교환하기 위해서 때로는 중공과의 교환등 때문에 최소한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배상정부(das Reparationsregime)가 본질적으로는 끝나게된 후 동독은 어느정도 정상적인 대외무역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동독이 RGW에 소속되었던 초기 수년 간에는 사실상 블럭 내부에서 회원국가를 상대로 무역분량을 점차 증가시키는 정도로 제한

하였으며, 실제로 상당한 무역량을 달성하였다. Kohlmeier는 동독의 대외무역의 지역별 구조에 대하여 1950 ~ 1953년 간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총 대외무역에 대한 100% 비례)

	1950	1951	1952	1953
소련권 대공산국가	65.2	75.0	74.0	76.4
(그중에서) 소련	35.8	44.7	41.7	47.9
중공	-	2.7	4.6	5.7
자본주의국가	34.8	25.0	26.0	23.6

이러한 대외무역의 구조변화, 지역을 초월한 무역관계는 특히 동서 양 독일에 있어서는 생산구조의 변화와 일치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독에 있어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련 점령구역에서 감행한 물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즉 많은 동독의 기업가 또는 기업관리인들은 그러한 처사로 말미암아 서독에 와서 새로 건설하는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제 과거에는 동독에 주로 있었던 생산이 서독에서도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경우를 말한다면 동독의 공급능력이 너무 적어서(소련의 공장해체능의 결과로) 서방측이 배상용으로 공장건설에 투자를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동독 자체에 있어서는 구조변화는 오히려 고의적인 계획의 큰 성과이었다. 이 계획에는 두가지 목적이 설정되어 있었다. : 즉

하나를 가능한한 서독에서 독립할것. (따라서 과거에는 동독에 비교적 발전이 비약했던 철·강철공장을 대폭 증강한 것이다.) 다음에는 동독이 소련 또는 기타 RZW 회원국들에 대하여 중요한 공급원이 될수 있기 위한 공업분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미 Ulbricht가 1948년 6월 말 제11차 SED 정당간부회의에서 《평화산업 재건과 발전을 위한 2개년 계획 (Zweijahrplan zur Wiederherstellung und Entwicklung der Friedenswirtschaft) 1949~1950년간》에 관한 발표를 하기 위하여 한 보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당시만해도 비교적 신중한 형식이었다.) :

《소련 점령지구의 무역정책은 이 연도중에 있어서는 목표를 특히 동구라파와 남동구라파의 인민주의 국가들에 대한 경제관계 수립에 주력하나 서구와 북구와의 통상을 등한시하지는 않는다.》

그후 수년간 발전을 통해서도 이러한 양상의 특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즉 미소한 변용은 있었으나 동구라파 블록이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5%이며 (대외무역 중에서 독일내 교역은 제외된것) 대외무역과 독일내 (동서 양독간) 통상을 합산한 것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동서 양독 간의 통상과 소련과의 대외무역 거래 대조표에서 보면 소련이 월등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수 있다.

대 조 표

(백만마르크단위)

년 도	소련방으로의 수 출	동서독간통상 에서 수출분	소련방에서 수 입 분	동서독간통상 에서 수입분
1960	3,883.6	1,013.5	4,023.8	897.9
1961	3,830.2	922.4	4,496.7	856.7
1962	4,589.7	885.2	5,233.8	823.1
1963	5,361.4	1,020.5	4,925.8	828.5
1964	5,811.2	1,113.5	5,086.6	1,077.3
1965	5,504.6	1,235.0	5,061.1	1,106.7
1966	5,361.1	1,287.9	5,814.8	1,469.1
1967	5,912.5	1,249.0	5,954.3	1,288.5

서독의 EWG 가입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즉 구라파 경제 공동체 내에서의 상품교류는 관세 기타의 장애물 철폐에 의해서 지극히 촉진되었고, EWG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과 서독간의 무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급속한 무역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대외무역에 있어서 블록구속성의 강도는 EWG 내의 사정이 동구블럭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으로 약한 편이다. 즉 1967년에 서독 수입의 39.37%가 5개 EWG 회원국가로 부터이고 수출의 36.78%가 EWG 회원국으로 수출되었다.

동서독 간 통상은 서독에 대해서는 물론 극히 미미한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 1966년에는 지금까지 동서독 통상 실적 중에서 최고의 매상고에 달하였다. 양독 통상 무역 실적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서독수입량	서독수출량
대외무역에 있어서	72,670	80,628
동서독간 통상에 있어서	1,345	1,625

(백만 DM 단위)

동서독 간의 상품교류가 저조한 원인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 들 수 있는 일이다. 즉 양단 독일이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서독은 동독에서, 동독은 서독에서) 구입하던 물품을 자체 생산을 하거나 또는 제 3의 공급처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특히 대표적인 한가지 예는 동독의 경우 석탄이다. 석탄은 동독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으나 서독 탄광에 의해서 필요한 분량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실제로 1966년에 동독 석탄공급량은 다음과 같았다.

자체생산	1,987 (백만 t)
수입	9,168
(수입내역)	
소련으로부터	5,982
폴랜드	1,986
체코슬로바키아	0,843

따라서 동구블럭 3개국이 공급해준 석탄총량은 거의 서독편에서

수출하여 동독편의 근소한 자체내 생산량을 보충해 주었던 것과 같다.

코크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1966년 자체생산량 3,191 (백만 t)에 비해서 수입량은 3,232 (백만 t)이다. 그 중에서 1,457 (백만 t)이 소련에서 0,899 (백만 t)이 폴란드에서 0,808 (백만 t)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수입되었다.

서독으로 부터의 석탄, 코크스 수입에 관한 동독측 통계는 전혀 없고 서독측에서 기록된 양독일내 통상 계수에는 1966년도에 29.0 (백만 DM)이라는 극소액분이 공급되었다. 한편 1959년도에는 121.7 (백만 DM)이나 되었었다.

다음과 같은 실정은 거의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할수도 있을 것이다. 즉 동독은 현대 공업경영에 필수 불가결의 내량불품의 수요를 서독에서 구입하고 있지 않다. 한편 서독에는 그러한 불품이 충분할 뿐 아니라 잉여분 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수송거리가 월등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품의 총 수입필요량의 약 $\frac{2}{3}$ 를 소련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것은 석탄이 소련 수출품 중에서도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는 불리하게 가격차별을 하는 품목이라는 점이다. 1955 ~ 1963의 소련 석탄 수출가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소련 석탄·평균 수출가격

(t 당 Rubel)

국 별	1955	1956	1959	1960	1962	1963
공산 국가들	57.62	67.45	59.61	60.61	59.03	58.90
그중에서 동독	57.86	-	61.05	-	-	62.04
비공산공업국가	46.76	62.86	43.59	40.10	37.62	34.19
전 체 평 균	55.81	65.97	56.35	55.59	52.86	51.71

따라서 동독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소련산 석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였다. —비 공산주의 공업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불리한 격차는 이 조사 기간에 오히려 더 확대되어갔다. 이 통계표를 인용하여 원고를 작성한 사람은^(*)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정하고 있다.

《공산주의 치정하의 국가들이 비공산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입은 총부담은 이 기간을 통해서 12억 Rubel 이상에 달한다.

그 중에서 동독은 수입분량이 대량인 까닭에 775 (백만) Rubel 을 부담하고 있으며, 한편 체코슬로바키아의 부담은 219(백만)Rubel, 폴란드 125 (백만) Rubel 에 각각 해당한다.》 동독은 이 기록 작성 기간중에 소련에서 수출한 석탄 총량의 44 %를 구입한 셈이다.

※주 Gaizago 저 「 1955 년서 1966 년까지의 소련 해외무역에 있어서의 가격상승과 가격 정책 」
(Preisentwicklung und Preis politik im sowjetischen Außenhandel 1955 his 1963)
Köln 1966. 49 - 55P 참조

소련산 코크스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비공산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그 한 예로써 1963년도에는 비공산 공업국가들에 수출 가격은 t당 60.23 Rubel 인데 비하여 공산국가들은 103.76 Rubel (농독은 103.57)을 지불하였다.

코크스의 경우에도 농독은 1955 ~ 1963년 간에 9.6 (백만 t)을 구입함으로써 최대 구매국이였다. (헝가리 4.8 로마니아 3.8 백만 t)

또다른 공업용 원료는 선철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 하에서라면 서독에 발주하여 농독의 추가 수요를 대부분 충당할수 있음은 확실한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Comecon의 구속에 의해서 소련을 최대 공급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농독은 1955 ~ 1963년간에 4.6 백만 t을 발주함으로써 소련 선철의 최대 매입국이 되었다. 농독이 1963년에 지불하여야 했던 평균가격은 t당 267.30 Rubel로서 공산국가에 대한 수출평균가격 127.44 Rubel에 비하여 막대하게 상회하고 있다.

소련측이 수입할 경우에 가격조정은 본질적으로 곤란하다. 그 이유는 소련이 수입할 경우는 수출할때와 달리 대량물품에 관계될 경우가 아주 적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련 대외무역통제에 나타나 있는 것은 다만 용량이 적은 농종류(同種類)의 물품 뿐이다. 따라서 이런 물품은 가격비교에 적합한 것이다.

농독의 수출에 중요한 생산물로서는 발전소용전선(電線)이 지적되어있다. 농독은 1955 ~ 1963년 간에 체코슬로바키아 다음으로 제2의 수출국이다. (총 109,300 km 중에서 19,800 km) 1963년에

설정된 가격 km 당 17,089 Rubel은 기타 공산수출국의 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비공산 공업국에서 수입가격보다도 상회한다.
(13,632 Rubel/ km)

농독의 다른 중요 수출품은 합성고무 (Buna)이다. 1955~1963년 간에 220,600 t을 수출하였으며 이것은 소련 총수입량의 $\frac{2}{3}$ 이상에 해당한다. 1959~1963년 간에 농독이 수출용으로 설정한 가격은 비공산주의 공업국가의 수출가격보다 분명히 비싸다. (1963년도 : 2,167 대 1,636 Rubel/t)

여기에 소개한 소수의 실례만 가지고서는 빈번히 들을수 있는 과잉과 같은 선해를 증명할 수는 없다. 즉 소련이 동구블럭 내에서 경제적 최상실권자라는 지위를 RGW 회원국가의 수출가격 억압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참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즉 소련의 수출가격에 관해서 Gajzagò가 실시한 조사는 너무 단편적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근거로해서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을 정도라는 점이다.

농독이 소련에 대한 수출품목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생산물을 농독별로 나누어보면 기계 기구류, 자동차와 전자공학 세밀기계 광학 공업생산물들이나 수출가격 형성에 관하여 쓸만한 증거가 없다.

동구블럭 구속력이 농독의 수출에 미친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나의 생각으로는 우선 가격형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고 본다. 즉 농독은 소련이나 기타 동구블럭과

의 수출관계가 고도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면에서 볼때 자
국 내에 투자가능성이 제한 되어있으며 또한 동독 대외무역 확대
를 위한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공산 국
가나 독일의 다른 지역을 상대로 하였을 경우나 마찬가지이며 따
라서 동서독 간의 통상확대 가능성도 제한되어있는 것이다.

동독의 대외무역 통제는 여전히 불충분한 발표이기는 하나
1966년 이래 몇몇 보고를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선택한 생산품의
수출이 생산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생산품들도 부분적으로는 높은 수출 코타를 보이고 있다.

생산 100에 대한 수출코타

	1960	1963	1967
사진·영화필름(흑백)	09.3	77.7	80.1
인 화 지	22.4	22.2	35.2
합성 탄성고무	57.0	46.1	44.5
선박 디젤모터	50.7	67.5	169.1 (※)
선 박	42.5	49.2	54.4
후라이스기계	81.8	70.3	87.6
Lapp-ton 기계	46.9	45.2	102.8
전 기 기 관 차	51.0	50.8	48.0
객 차, 화 차	38.2	60.8	21.3
계 산 기	83.0	100.7 (※)	93.7
운 선 기	32.5	51.1	58.5

(※주 100% 이상은 전년도생산분 가산)

일반적으로 수출코타는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것은 농구라과 불력에 대한 수출이 점차 증대해져 간다는 전부터의 관점에서 장기계획은 생산능력확대를 평가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그러나 수출의 지역별 구조에 관해서는 수출코타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독 대외무역에 결정적인 금속가공 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동독 대외무역 통계에서 농구라과 불력에 대한 수출이 지대한 의의가 있다는 증명을 얻을수 있다.

국가 크립별 상품수출 (1966)

단위 : 백만마르크

생 산 품	상품수출 총계	R.F.W 각 국	기 타 사회주의 국가	후진국	EWZ	기 타
전기기계 제작품 (그중에서)	6,269	5,149	398	364	199	95
전기기계가야닌것 (그중에서)	3,541	2,988	192	177	112	33
사무용기계	430	348	22	11	27	7
제작기계	598	469	51	23	31	13
방직기계	111	103	3	3	1	0.2
압축, 가철, 연결기계	173	100	13	30	18	5
조립, 광산기계	484	435	23	23	2	1
기중기, 추진기	179	165	5	4	4	1
전기기계 및 기구	1,229	936	116	95	54	15
수송용 차량 (그중에서)	1,499	1,225	90	91	33	37
수상용선박	474	418	15	2	9	28

이 도표에 수록된 기계제작 생산품은 1966년에 동독 총수출량의 거의 절반이 된다. 이것은 동독이 각기계회에서 특히 급속도 성장을 예상하였던 수출량에 해당한다. RZW 회원국가들이 동독의 판매지역으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기 도표에서도 명백하다. 그것에 비해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비중은 미소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Moskan-Peking 간의 논쟁이 점차 격화되어가고 있음으로 동독으로서는 중공과의 통상을 엄격히제한 하여왔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함은 당연한 일이다.

금속가공 공업 수출량이 이 정도의 분량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가공이 전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동독의 경제에는 막중한 부담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이러한 수출품이 생산능력의 여유에서 생산된것이 아니라 다른데에 사용할 생산능력을 그만큼 삭감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동독이 동서 양독일간의 통상에 있어서 공급할수 있는 가능성분제는 동일한 사정이다.

상기 도표에는 2개 기계류가 기록되어있다. 전쟁 전만해도 전독일의 수요를 대부분 동독의 중당해온 품목들이다. 그 중에서 방직기계와 서적인쇄기와 제본기는 현재 RZW 지역으로 판매하는 분량에 비해서 서독으로 공급하는 량은 미소한 것에 불과하다.

이 기계들은 한때 동독의 공급가능성이 감축되었었던 것이다. 즉 이 두 기계의 공업분야는 소련의 공장해체에 의해서 격심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독 내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재건을 위한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지 않고 있었다.

한편 서독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상당히 많은 생산공장이 새로 설립됨으로써 서독으로의 판매가능성은 감축되었다. 서독에 이런

분야의 공장이 생긴 이유는 대부분 농독에서 헤쳐된 결과이다.

농독에서 공개한 통계에 의해서는 다만 소수의 상품분류를 대 소련방 수출과 대 서독 공급을 대조해 볼수 있다.

1962년과 1967년도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어 볼 수 있다.

	대 소련수출		대 서독수출 (서베르린 제외)	
	1962	1967	1962	1967
생활필수품공업용기계류 (1,000 마르크단위)	58,496	102,779	1,518	2,037
농수업용기계, 기구 (1,000 마르크단위)	135,539	235,380	4,604	3,137
가구 (家具) (1,000 마르크단위)	74,501	235,380	4,604	36,660
내의 (內衣) (1,000 개단위)	12,102	16,485	6,379	7,427

여기 소개한 몇개개의 농독 통계자료에 의해서 소련이 농독의 공업과 공산물의 판매지역으로 일대 이약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품목은 과거에는 동서 양독간의 물품 교환 대상품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었다. SED의 통지의욕에 따라 이러한 발전은 더욱 계속할 것이다.

Ulbrist는 1968년 9월 28일 장기계획위원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사회주의와 개국주의 간에 계급투쟁의 법칙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즉 사회주의 국가 공동체는 모든 중요한 정치적, 과학 기술적, 군사적, 경제적 또기 기타의 분계를 독자

적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소련방과 그 동맹국가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여기에는 자연 힘과 노력과 고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불가결이며 또한 가능한 일이다.》

Ulbricht는 소련의 RFW내의 강력한 통합정책에 추종하는 선언을 많이 하였고, SED의 지도적 인사들 중에서도 그러한 정책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선 후르시초프에 의해서 1962년 여름 공개되었고 다음에 1962년 11월 KPSU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에서 채택되었다. 그 결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최단 기일 내에 RFW에 소속하는 모든 국가의 전권 대표로 구성된 국제 계획기관을 창설할것. 그것은 과학적, 기술적 주요점에 기인하여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적인 문제를 결정할 임무가 있는 것이다.》

이 결의가 RFW의 현저한 구조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 결의에는 지금까지 아직 성립되지 못했던 가능성 즉 한 회원국가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결의를 하는 가능성이 부여되었을 것이었다.

소련 통치는 이렇게해서 개별적 국민경제계획을 좀더 잘 평준화하는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1956년 이래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전도요원한 데 지역단위 경영 분업을 —특히 공업생산에 있어서— 추진하려는 의도 이었다.

이러한 소련의 계획은 지금까지 아직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루마니아가 강력히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회원국,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에서도 1968년 8월 21일 무력간섭 이전의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두하였다. 즉 고차적인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성장한 비공산주의 공업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유대가 긴급하다는 견해가 높아져 갔다.

농독도 역시 국제 사회주의적 노동분업의 목적에 이념적으로 강력히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적 압력에서 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양 독일간의 통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중대한 경제적 희생을 부릅써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EWG 협정 체결 시에 양독일 국내 통상과 그것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특별 의정서에 의해서 양단 독일 간의 통상이 명확히 고정되었던 것이다.

1961년에는 SED 정부는 소위 이른바 <서독 제국주의 방해공작 (Störaktion des west deutschen Imperialismns) >과 관련시켜 <방해 추방 (Störräumung) >이라는 스토간을 내걸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경제정책 스토간인 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자체생산 확충과 또 다른 편에서는 동구라파 블럭과의 무역증강에 의해서 서독으로 부터의 수입을 봉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이 얼마 안가서 드러났다. 왜냐하면 1961 ~ 1962 년간에 일시적으로 서독의 대 농독 수출이 -그와 마찬가지로 농독으로 부터의 수입도- 후퇴하였으나 1963년 이후 부터는 계속 상승하여 서독측의 수출은 1966년에는 최고수준에 달하여 1962년에 비하여 가격면에서 보면 약 80%

의 증가분을 서독에서 수출하고 있다.

여기서 특색을 이루고 있는 점은 동독의 곡물공급이 현저하게 상승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공업 완제품분야에 있어서도 교환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1961년~1967년 간에 서독이 동독에 발주한 상승비례는 다음과 같다.

전자공학기계	16.8 백만 DM에서
정밀기계 광학기구와 시계	50.8 백만 DM으로
화학제품	67.7 백만 DM에서 88.4 백만 DM으로
세공도자기	12.4 백만 DM에서
유리, 유리제품	23.0 백만 DM으로
섬유류와 의류	137.1 백만 DM에서 230.1 백만 DM으로

서독측에서 동독으로의 공급량도 그와 동시에 중에 상승하였다.

(단위 백만 DM)

기계류와 지상용차량	116.4에서→256.4으로
화학제품(비료제외)	93.7에서→237.3으로
비료	18.7에서→100.2으로
섬유류와 의류	42.2에서→94.6으로

상술한 숫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동독이 대외무역을 농구라파 방향으로 주력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서방측과, 특히 서독과의 교류

에 의해서 보충하여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67년에는 여전히 농서 양독일 간의 통상에 있어서 동독이 서독에 발주한 분량은 EWG 회원 각국에서 수입한 총액의 2배 이상이 된다.

<Störgeimachung>이라는 스로간을 창안한 장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파한 것이었다. 즉 동독에 있어서도 부단한 경제발전과정으로 인해서 항상 새로운 수요가 생기며 이러한 수요는 자체생산이나 또는 소련과 기타의 동구라파 블록 각국으로 부터의 수입만으로는 충당될수 없고 비공산 국가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생기는 이익은 이러한 수요를 충당할때에 분명히 공산국가들과의 통상에 의한것보다 크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동독의 경제개혁 진행중에 경제적 비율이 강경하게 관찰될수록 이러한 종류의 음미불 더욱 하게 될것이다.

과거의 동독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해외 경제에서 오는 영향에 대비하여 국내시장을 격리시킨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좀더 큰 경제적 효과를 위하여는 본질적으로 노동력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NÖS () 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액션 내에서 대외경제적 관계에 의한 성과가 생산기업의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의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혁을 해외경제에 까지 확대시킨 것은 일종의 특별한 지리적 가치까지도 갖게 되었다.

만약에 한 기업체에 대해서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분야에 있어서 세계 정상에 까지 달하도록 충책을 부가시킨다면 필연적으로 비공산국가들과의 대외교역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예전에 효율적인 생산재 구입을 위해서도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예기(豫期)한다는 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다. 즉 현재 동독내에서 진행중인 경제개혁에 의해서 정치·사상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농구라파 블록의 결속과 세계적으로 경제적 유대를 확대하여 경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운농파의 사이에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양 독일간의 교역확대는 결과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달성될 것인가, 또 언제 실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기다려 보아야할 문제이다.

우선 당장에는 소련의 영도 목표는 농구라파 블록의 결속을 계속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소련 자신의 이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1969년 4월 23일~26일에 모스크바에서 제 23차 R3W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이다. 그러나 어휘는 풍부하나 내용은 별로 충실하지 못한 공동성명을 보면 RGW 국가들의 투자은행 설립에 관한 협정을 제외하고는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못하여 소련의 영도목표 설정이라는 의미에서는 거의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성명문

《제 23차 R3W 임시총회 참가회원국은 경제적 공동협력에 의하여 각방면의 발전을 함에 있어서 비상한 정치적 의의를 강조하였다.》라 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Comecon 내에 있어서 경제적 긴밀한 유대는 농구라파 블록의 정치적 결합을 위한 물질적 확고한 기반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련의 영도에 의해서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동독의 경제적 효율이 지극히 중요하다. 한편 동독 경제 발전을 위하여서는 비공산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 나아가서는 동서 양독일간의 교역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동독이 가장 우수하고 세계적 수준에 합당한 생산재를 얻음으로써 경제실적이 상승한다면 이러한 교역에 의해서 동독의 전반적인 수출능력도 또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동독은 양 독일간의 교역이나 비공산주의 공업국가들과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더욱 많은 수출을 한다고 해도 생산능력이 증대하기 때문에 결코 내 소련 수출이 감소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역에 의한 대가(對価)로써 서독 또는 기타 서방국가에서 고도로 효율적인 생산재를 수입할 수도 있게 되며, 그것에 의하여 자체내 생산능력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동서 경제 단위 간에 있어서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의 법적 형식」
—한 법률가의 서설 (序說) 적 관찰—

클레멘스 플라이어 씀

Klemens Pleyer

“ 협력 (Kooperation) ”, 즉 · 경제적 기술적 공동작업은 -- 우리들의 주제 테두리 안에서는 서방의 기업체와 동구라파의 국영기업체의 협력으로서 이해 되어 지거나 -- 우리나라 (즉 서독) 에 있어서는 동구라파에서와는 다르게 규정 되어 진다.

동 구라파 에서는 단순한 업적 교환, 심지어는 단순한 구매 계약 까지도 벌써 협력의 형태라 부르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극히 일반적 정의는, 서방 과 동구라파의 경제단위간에 있어서 중간 기업적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공동 작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그 개념을 한 절협의로 해석 하고 생산 영역에 있어서의 공동 작업만을, 그런 경우에는 이에 포함시킨다.

여하간 협력 이라는 말은 항용, 공동 투자가 행해지는 경우에 쓰인다. 그러나 결국 한계는 유동 적인 것이다.

본 관찰문에 있어서는 유독히 엄격한 척도가 요구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는, 단순한 구매계약 및 교환 계약 형식의 통상을 넘어선 모든 경제 관계가 포함 되어져 있다.

다음과 같은 이미 시험된 계약을 통한 법적 형식들이 있다.

허가 계약 (Lizenzueitrag)

인금처리위탁 (Lohnfertigungsaufträge)

인금개선위탁 (Lohnveredelungsaufträge)

허가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등의 사용 및 이와 관련되는

문제들만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밖의 기술적 및 조직적인 지식의 매개도 또한 문제 되는 것이다.

이 모든것은 자주 경험교환과 공동작업의 보다 앞선 형태로 이끌어 준다. 이와 비슷한 발전은 예컨대, 설사 종업원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의 파견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동구라파 여러 나라에 있어, 완전한 공장 시설을 판매할때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술적 및 조직적 지식을 전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 처리 계약의 경우에는 서방이 공급하는 재료가 동구라파에서 최종 상품으로 개조 또는 가공 된다.

실례들 : 의복은 서방의 상점들을 위해 서방의 복지(服地)를 갖고 동 구라파에서 만들어 진다. 자동차는 서방을 위해 동구라파에서 조립 된다. (서독 폴크스바겐 버스 조립공장에 대한 루마니아의 계획안), 서방의 기업체들은 다시 말해서 생산품과 모델을 제공 해 주고 동구라파는 서방을 위해서 생산품을 생산 하는 것이다.

동서 교역에서 노상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사업은 그나마 아직 우리가 의미 하는 협력은 아니다.

허나 아마도 임금개선의 경우 동구라파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일부가 「 보수(Lohn) 」로서 당지에 남아 있는 ^{주1)} 경우에 한 해서 진정

주1) 1969년 5월의 보도에 의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버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무역 결산을 평균 시키기 위해 서독의 기업체들에게 허가 생산품을 위해 자유로운 공장용량을 제공 해 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한 협력의 첫 기본 형태라 말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동구라파에 의해서는, 서방으로 부터 시설을 주문 할 때와 이 시설을 서방의 인력에 의해 세워질 때에 그 구매가 격이, 동구라파가 이 시설로서 획득하는 상품으로 상쇄되는 일이 혼연히 실시 되고 있다.

여기서 말 하는 것은 이른바 “Pay - as - You - earn” 제도로서 이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실시 된바 있다. 이것은 동화가 안정되지 못한 나라에게 공장시설의 값을 치루는 것을 가능케 해 준다.

서방 세계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대개 흥미를 끌지 못 한다. 왜냐 하면 자기자신이 문제 되는 시설을 소유 하고 있어 이로서 이런 종류의 자국산물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협력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저이 말 할 수가 없다.

최근 동구 블록 여러 나라에 서방기업체들을 통해서 (피아트, 르노) 이룩되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공장 건립은 원칙적으로 협력이 아니라, 단순히 시설의 판매이다.

애프터 서비스 공장의 건립도 예컨대 승용차 수리 공장을 위한 경우 처럼, 근본적으로는 다를바가 없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대개 약간명의 서방 전문가들이 동구라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따라서 일종의 Know how 증개가 수행 되는 바, 이로서 우리들의 테에 마와의 관련성이 주어 지는 것이다.

시설 자체는 그러나 국민·재산이 되는 것이다(헌데 이것이야

말로 본질적인 문제이다)

1969년 5월 초 공포 된것 처럼 튀센 파이프 공장이 소련내에 큰 파이프 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 단순한 업적 교환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 관계가 생기게 된다.

즉,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공장에서 소련 역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니 말이다.

이러한 관련성 속에서 독일과 소련의 기술자들 및 양국간에 발전의 결과가 교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대 생산품(大生産品) 채택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 하는 것이다.

서방에게는 동구라파에 예컨대 지사(支社)의 설치와 같은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물론 당장 소유 관계와 운영 및 관리 권한의 문제가 제기 되는바, 여기에서도 첫번째 문제가 가장 많은 난점을 야기 할 것이 뻔 하다.

생산 수단에 대한 외국의 설사 부분적이라고는 하더라도 「사유 재산」에 대한 생각에서 연유 하는 이념적인 장애가 강력할 것임은 이해 할 수가 있다. 하기가 이러한 장애들은 뛰어 넘어 질수 있을것 처럼 보인 일이 있긴 했다. (1965 - 65). 「쿠륀(Krupp)」에 의해서 발표된 보도에 의할것 같으면 폴란드에 독일·폴란드 공동기업체가 하나 세워 질 것이 있다.

폴랜드는 부지와 건물과 노동력을 제공 하려 했고 「쿠륀」은 기계 단지와 전문적 인력을 투입함과 아울러 상업적 및 기술적

경영을 맡아야 했다.

국내 및 국외 판매는 국립 무역 협회의 관여 없이 그 기업체 자체에 의해서 수행 될 것이 었다. 세부에 있어 재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국의 노동력을 「자본 주의적」 감독하에 둔다는 문제가 그당시에는 분명히 해결 될수 . 있는 것으로 생각 된것 같았다.

이 계획은 일견 벌써 여타의 동구라파 블록 여러 나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 관심을 발견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가서 폴랜드의 정치 지도층에 의해 뒤 었어졌다.

오늘날에는 다만 유고슬라비아에만 서방 투자에 관한 법 규정이 있을 뿐인데¹⁾ 이것은 사실상 이제까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 문제 되는 것은 생산 수단에 있어서의 사회 재산(공동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자본 투자 일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의무적인 권리뿐이지 기업 자체에 있어서의 배당은 아니다.²⁾

주1)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것은 이 뒤에 따르는 R.Meimberg 의 「외국 자본가들의 사회주의 기업 참여」 에 관한 논설을 보라.

H. -J. Moucke 저, 「경영안내」, 1968년판, 382 페이지 참조

하여간 유고슬라비아는 독일 연방 공화국에 대해서, 1968년 가을, 서방의 자본이 들어 있는 기업에서 공동중역 회의의 동수 의석 점유를 제의 했다.

한 동구라파 나라에 있어서 생산 수단에 가담한 「서방」의 개인 개산을 위하여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음이 분명 하다.

1964년 6월의 서방과의 공업 협력에 관한 RGW 결의에 곧 뒤 따르며, 루마니아에 의해서 발전 되어진 초기의 안들은 이미 낡아버린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 구상 되었던 해결책은 매우 흥미가 있다.

이 서방에서 가져 온 투자재화들 전세 내거나 추후에 구매 계약으로 변경 한다는 조건하에 임대차 계약에 합의 하려는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이다.

예컨대(마치 헝가리가 제의 한 것 처럼) 20년 후에는 인민 재산으로 넘어 간다는 협정 하에, 시설 재산을 서방의 투자자들에게 그냥 두어 두자는 계획도 결과에 있어서는 비슷 하다 할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서는 양도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 또는 거기 상응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체하는데 대한 합의를 통한 「자동적」 이행(移行)의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들은 예컨대 소유재산 유보를 중계 해주는 것과 같은 유사한 법적인 상황을 목전에 갖고 있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각 할 수 있는 일은 서방의 회사들이 그들의 재산을 동구라파 제국이 맡기고 이들측에서는 이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거기 합당하는 권능을 갖고 전세 낸다는 안이다.

단순한 수익권을 서방의 투자자들에게 맡기는 일은 동구라파 측으

로 본다면 오히려 헌법에 합당 되고 또 이념적인 관점에도 영합이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모든 경우에 있어 제약완료 전의 재산 박탈을 막는 특별 보장이나 최소한 보상 금액에 관한 합의에 대해 관심이 야기된다. (이양자는 정치적 분류를 자아낼 것임이 분명 한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는 RGW 국가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형태건 생산 수단에 따르는 「자본주의적」 재산을 몰수하려 하지 않고 있음이 뚜렷하다.

내가 얻은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서방 출자에 합당 하는 비율의 이익분배를 감수 하되 단, 서방의 파트너가 소액의 이익 배당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만 그것을 행한다는 방향으로 오히려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의 조용한 사회와 부분적 대역의 근본 사고는 이 마지막에 지적한 문제의 조정을 위해 거침 없이 끌어 들여 질수가 있다.

결과에 있어, 현재 동구라파 국가에 있어서의 「공동 기업체」의 건설이라는 형식으로 조차도 「진정한」 서방 세계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서방 국가와 중립 국가간의 공동 기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구라파 국가는 이 경우에 있어 시장 경제적·법률 형식을 사용한다. 예컨대 헝가리가 오지리, 스웨덴, 서서에 있어서의 통그스람 공장의 주역인 것도 이에 연유한다.

1969년 1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콘티 화학 교역 유한 회사가

설립 되었는데, 이것은 서독과 루마니아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루마니아 화학제품들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한 기업체이다.

핀란드에는 핀란드와 헝가리 공동의 전기 기구 판매 기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헝가리의 주도하에 움직여지고 있다.

동구라파 경제 단위에 의한 독일 회사들에서의 배당 취득은 우리나라(서독)의 시장 경제 질서 내에서 여하간 아무런 원칙적인 난립에 부딪치는 일이라곤 없다.

모든 협력(서방과 동구라파 기업체간에 있어서의 그것도 그러하거나)의 이익은 경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도 또한 띠고 있다. 그것은 더욱이 양측이 다 그러한 것이다.

경제적인 이익은 명명 백백 하다.

서방 기업체에서는 보다 큰 판매 가능성과 보다 낮은 생산 가격이 구미에 당긴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당면해 있는 노동력 부족이 문제에 대처 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산업 노동력에 대한 점증하는 부족에 봉착해 있는 중부독일(동독)을 제외 한다면, 동구라파 국가들에게는 본토의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의 마련이 관심의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 보다도 동구라파에게 본질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것은 물론, 동구라파가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기술적인 수준을 부분적으로는 독자적인 경비를 소요함 없이 우리들의 그것에 동화케 하고 현대적인 생산 공장을 만들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서술된 방법으로 외화를 절약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의 형식을 통해서 가끔 서방의 수입 제한의 장애를 피할 수가 있다.

특히 큰것은 서방과 동구라과 단위간의 「공업적」 협력을 위한 가능한 과업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 제공 되는 것은 동력 공급이다.

베를린의 경제 국장“ 쾨니히. 는 이미 그와 같은 것을 제의 한바 있었다.

그는 이로서, 서 베를린과 독일의 다른쪽(동독)과의 사이의 전기의 연결망을 형성 할것을 생각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RGW 제국과 OEC 제국간의 대륙 횡단 전기망으로 발전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동력 경제 영역의 전문가들 견해에 의할것 같으면, 서방과 동구라과간의 석유 연결망이 좋은 전망을 갖일수 있을 것이라 한다.

알려져 있다 싶어 소련은 그들의 원유 판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슈베르 까지의 송유관이 예컨대 독일연방 지역내에 까지 연장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기름은 정유 되고 최종 생산품이 일부분 동구라과로 역 공급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연결망의 참여자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필경 소련과 양독 일일 것이다.

자본 회사의 법적 형식은 이를 위하여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

이 질수 있으리라 .

비슷한 해결책이 아마도 서방과 동구라파간의 천연 가스 공급을 위해서도 실현 되어 질수 있을 것이다 .

이미 대대적인 천연가스 연결망이 존재하고 있어 그 파이프 라인 이 시베리아에서 오지리에 까지 이르고 있음에랴 .

이런 역시 이 파이프 라인망에 연결되어져 있다 .

이 연결망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태리와 불란서에 연장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

전 독일이 이 연결망에 연결 되어 질수는 없을 것인가? ¹⁾

이러한 계획들은 개개의 서방 기업체와 동구라파 국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체를 초월한 「지역적」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 될 수가 있는 것이다 .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심지어는, 구라파 대륙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 개개의 나라들을, 이룩 되어질 협력사회의 회원으로

주1) 1969년 5월초 소련이 자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새로이 건조될 파이프 라인 계통을 이용 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 공급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알려 졌다 .

이 경우 중부 독일(동독)도 포함된다고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소련의 원유를 가공 하기 위해 잘쓰기터에 새로운 정유소를 세우려는 의도가 생겼던 것이다 .

위에 제기된 생각이 이로서 확인 된것 처럼 보인다 .

간주 하는데 까지 나갈수가 있을 것이다.

개개의 국가는 아주 큰 계획을 위하여는 이것 없이는 너무도 약하다.

개개의 협력체 회원국가들의 경제질서에 대한 고려 없는 대륙적 협력은, 이에 가담 하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구라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공동으로 투자 할 제 3국에 있어서의 공동적인 계획을 위해 예컨대 서방과 동구라파 간에 연합체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 분야에 있어 다만 조그만 시작만이 있었을 뿐이다.

협력의 정치적 이익은 아마도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적 기술적 협력과 이와 연결된 업무 분할은 자연히 상호간의 의존을 재래케 한다.

동 구라파는 항상, 이 의존이 필경 서방측이 가지는 보다 큰 경제적 잠재력 때문이겠지만 동구라파측에게 시간이 갈수록 너무 강해 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을 양측에게 어떻게 흥미 있게 만드는가 하는 것은 계약형성상의 문제 일 뿐이다.

나아가서는, 모든 경제적 기술적 협력은 상대방을 공통적인 여러 문제에 관해 끊임 없이 대화 하도록 강요 하는 것이다.

그것은 따라서 동 구라파와 서방과의 사이의 정치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굴에 대해 가지는 동구라파의 우려는 물론 현재 극복 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기술적 협력에 대한 제의는 항상 침략적 경제 정책의 표현으로 풀이 되어 지는 것이다.

“장애제거”와 독립이라는 관념들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예들이 보여주듯, 동구라파의 우려를 제거하고 경제적인 이성의 바탕위에 양측에 유익한 협력에 도달하는데 성공한 경우도 물론 있다.

여기에는 영리하고 선견지명이 있으며 대담한 경제 정책을 위한 넓은 터전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 놓고, 동구라파도 장래에 있어서 예민하게 계산하고, 좋은 제의가 가져올 이익을 올바르게 평가 할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데 입각해도 좋을 것이다.

모든 정치적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양측에 다 같이 유용한 공동 작업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가들을 끌어 들임으로서 도달하는 것이 양측의 독일국가들 사이에서도 가능치 않을까?

공동 관심의 과업 영역이 충분 하리 만큼 있음에 있어서라.

이 관심을 공동으로 인지 하는 일을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케 하는 방법과 길을 경제 실무자, 경제 학자 및 법률가들이 제시 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서로 대항해서가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일은 양측 독일을

위한 독자적인 이익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며, 예컨대 우리 서독
보다 동쪽 부분에게 그것이 이복한 고도의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겁게 저울질이 될 분단에서 야기된 결과를 극복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동 구라파의 국민 경제에 있어
금융 개혁과 경향들」

루돌프 마임베르크 씀

Rudolf Meimberg

동구라파에서는 개혁이 일거났으며, 이곳에서 질서·이론적으로 용
미로울 여러 경향이 엿보인다.

만일 이 개혁으로 인하여 총 경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제 결정의
중앙집권이 완화되는 것이라면, 이 개혁속에 서방류의 시장경제에의
접근이 표현되거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이제까지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거온 독단론에 대해 새
로운 입장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와 반대로 이 변화들이 존립하는 질서의 공고화를 뜻하는 것
일까? 경제전반의 형성에 대한 그 영향이 별로 의미없는 것이라
고 일컬거 질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언급된 경우들 중에서 두 경우는 투자지원이고, 또 하
나의 경우는 자본형성 그 자체와 관계된다.

이 경우는 그밖에도, 독재정권내에서의 경제적 사건에 대한 개인
저축가들의 태도에의 일별을 중개해 준다.

네번째의 경우는, 투자자본의 준비와 관련하여 생산 수단에 있거
서의 사회재산의 취급에 관한 것이다.

조사된 개혁들 중 처음의 세가지는 주로 농촌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된다.

그러나 거기서도 같은 종류의 경과가 관찰되거지는 여타의 동구
라파 여러 국가들을 또한 고려에 넣거서 논의해야 할 몇가지 점
들이 있다.

네개의 경우중 마지막 것이 현실화 된 것은 이제까지 다만 유

고슬라비아에 대해서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전적으로 계획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이 상론(祥論) 되거진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투자자본과 사회재산에 관한 것이다.

1. 생산기금 조세

1964년까지만 해도 모든 동구라파블록국가들에서는 (그에 반해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국가기업체들의 계속적인 경제결산에서 자금비용은 고려되지 않은채 있었다.

그와 반대로 투자계획시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에서 고정화된 「효율기준」의 사용하에 「효능조사」가 행해졌다. (예컨대 투자된 재화의 일정한 「역류기한」을 미리 주고), 그런데 이 효율기준은 이자비용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중앙에서 결정된 투자계획의 가장 경제적인 수행방법에 관한 「변이 비교」만을 허용하였다.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있는 착취의 도구로서의 자본이자에 대한 이단시는 자본비용과 이득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작용을 가져다 주었었다.

국가기업체들의 자본장비의 보다 나은 이용에 대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역시 투자된 재화의 일정한 최소수익의 보장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60년대의 초기에는 그러나, 기업체에게 제공된 자본에 대한 보상의 포기는 선택기준의 상실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인식이 관찰되었다.

그렇것 같으면 자본이 집중된 기업체들의 경제성이 적절하게 단퇴거 질 수가 없고, 각기 다른 자본투입을 한 기업체들의 업적이 서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 뚜렷해 지는 것이다.

국고에게 유리하게 징수되는 「생산기금조세」는 이 결함을 없애기 위한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법을 통해서 동독과 기타 동구라파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조세징수방법이 확정되어져 있긴하나¹⁾, 조세가 비용 성분으로 간수될 것인지 또는 이득 성분으로 간수될 것인지 조세가 판매가격에 합산 되어져야 할 것인지, 투입된 자본의 조달가치 또는 시간가치가 조세의무의 계산시에 그 기초에 참여져야 할 것인지, 조세가 시설자본으로서 아니면 회전자본으로서도 징수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데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생산기금조세의 세율은 이 조세를 선택된 기업체에 시험삼아

주1) 동독에 있어서의 기업체들의 조세의무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는 「국민소유의 공업과 국민소유의 건축업의 영역에서 생산기금조세의 그밖의 사용에 관한 결의」와 이를 위해 반포된 1967년 2월 2일의 법령 및 해당된 법령에 대한 GBI, II, 19번, 115면이하, 제 1시행령, 게다가 H. Nick의 「생산기금조세 - 생산적 기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렛대」, 「독일 금융경제」지 1966년 제 9, 10, 13권, 동일작자의 「이자-금전지출 「기금입체」의 척도 및 금전표현」, 「경제과학」지 1965년 제 5권, 709면이하, 그리고 R. Goldschmidt, E. Langner의 「생산기금조세」, 1966년 동베르린 경제출판사간 및 그밖의 동구라파제국에 있어서의 해당되는 조치에 관하여 그곳에 인용된 문헌을 참조할 것.

도입하는 오랜기간 동안의 실험끝에 이제까지 주어진 가격에 따라 도달한, 국가기업체들의 이득을 감안하여 비교적 낮게 책정되었다.

세율은 너무 낮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자유로이 상쇄하는 경우 나타날 자본의 궁핍도를 나타낼 정도이다.

가장 높은 세율조차도 현재 6VH로서 분명히 시장 이윤이 그러한 것 보다 낮다.

생산기금 조세에서는 이로써 투자계산시에 하나의 이자 대응물만이 간취될 수가 있다.

자본관리는 따라서 이 조세를 끌거 들임으로 해서 없어도 되는 것일 수는 없다.

하여간, 새로이 투입할 자본의 분배에 관하여 생각하는 곳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이, 자본이 궁핍하며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 보상이 고려에 넣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완화를 의미한다.

계획을 담당한 곳들이 가졌던 만능의 권력은 이로써 사실상 제한된 것이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와 똑 같은 규모로 투자의 긴급도를 계획의 경제성을 고려에 넣음 없이 확정지우지 않는다면 말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도 국가의 일로서 간주되거나 그밖의 계기로 그 일에 대해 중앙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투자에 관한 결정이 이제는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러나 여하간 옛날 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기업체의 수익성에 그리고 새로운 투자의 기대되는 수익성에 의존케 되어져 있다.

얼마나 많은 생산수단이 소비재의 생산을 위해, 그리고 소비재의 어떤 범주가 추가적으로 준비되지 않는가에 관한 결정은 그러나 이제까지나 마찬가지로 중앙관서의 손에 들어 있다.

그와 똑 같은 것이, 수출상품의 생산을 위해 분기되지 질 용량과 수단의 범위 및 종류에 관한 결정에도 해당이 된다.

조세율이 현재 농독에서는 1.4와 6VH 사이에 놓여 있다.

많은 완성부분에 있어서 기업체들이 최고의 이윤을 치룰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경우는 단지 그들 생산품에 대한 가격이 원가에 적응할 때, 다시 말해서 인상될 때에 한 한다.

지나간 수년간의 (1964년에서 1967년에 이르기까지) 공장가격 개혁은 전적으로 가격구조와 경비구조에서의 큰 불일치를 제거한 것 처럼 보인다.

이제까지는, 생산기금조세가 가격구조로 하여금 이제까지 보다 더 많이 경비와 궁핍정도에 적응케 하는데 까지 작용을 미친 점을 찾아 볼 수는 없다.

조세율이 일반적으로 일불적인 때에야만 비로소, 그리고 그것이 예컨대 금전자본의 결핍에 부응하고 경비요소로써 취급될 때에야만 비로소 조세는 경제에 있어서 중앙집권화 정도의 영속적인 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본에 대한 보상의 도입에서 지배하는 이념이 침범당한 징조를 볼 수 없는가?

만일 그것이 틀거 맞는다면, 이로부터 조만간 경제질서에 대한 영향이 기대될 것이다.

만일, 마르크스주의적 소련의 문헌에서 착취의 도구로서의 자본이자에 대해 거머한 주의가 주거졌는가를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가를 생생하게 그려본다면, 방금 제기된 질문이 긍정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소련적 유형의 근본 테거제들은, 특히 생산수단에 있어서의 재산의 사회화와 소위 자본주의에 있어 인간을 통한 인간의 착취 현상에 관한 근본 테거제들은 자본이자의 — 생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기형화된— 자본 이자의 현재의 도입에 의해서 견드려지지 않는 것이다.

옛날의 자본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유죄판결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에 영합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한 하나의 실례를, 그러나 동시에 또한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외관상 타고 난 것 처럼 보이는 요소에 대한 실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¹⁾

자본이자 그 자체는 생산기금조세의 도입 이제 실제적으로 명에 회복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주1) 여기서 자본이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견해에 도달한것에는 O. Sik저,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계획과 시장」 1967년 빈에서 출간, 301면이하, 마르크스 주의적 소련적 이론가운데서 돈에게 부여된 과업에 대한 책자가 있다.

이제까지 생산기금 조세에서 오히려 생산과업, 투자과업 및 분배과업의 중앙집권적, 의무적 확정의 체계에, 체계자체를 변경하기에 그것이 적합한 대신, 경제성의 보다 높은 정도를 부여할 수 있을 도구를 볼 수 있었다고 우리는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 정치적인 지도층이, 경제적 사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결정의 중앙집권 그 자체를 관찰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동안만큼은 통용이 된다.

그것이 더 이상 보증되지 않고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지배하고 있는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결정들의 다수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형성 및 분배의 범위와 종류가 증가하여 나갈 때 그와 반대로 조세는 원한건 원하지 않든, 시장 경제적 경향을 꾸준히 통용케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은행의 새로운 기능

옛날에는 은행에게는 다만 재산경제적 계획목표의 성취를 위한 소박한 기능만이 주어졌었다.

은행은 세밀한 규정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대여를 할 수 있는 화폐를 보존하고 그것을 지출하고 인계할 의무를 가졌었다.

생산증, 투자 및 재화의 분배에 대한 의무적인 규격통일이 완화되면서 은행의 더 많은 결정자유가 불가피해 되었다.

은행은 이제 자기측에서 저축성을 향해 작용하고 신용 융자선정

을 통해 계획완수를 위해 약간의 융통성을 가져오면서 보다 고차적인 업적을 위한 충동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은행에서 약간의 자치권을 주자는데 대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공장가격 개혁이었다.

아마도 의도했던 것 보다 더 많이 가격구조의 수정은 공업생산품에게 있어 계획시에 그 근거가 될 비용과 가격에 관한 계획담당기관에게 불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기업체들이 세목으로 되어 있는 대수지표(對數指標) 목록의 도움을 빌어 이전보다 덜 완전하게 중앙집권적으로 규제되게 되고 이러한 업적 대수지표의 충족에 관하여 이미 더 이상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보고를 낼 필요가 없게 된 이래 일전정보의 지각될만한 빈틈이 생겨났다.

은행들은 이제 공업기업체들과의 접촉의 도움으로 계획 관청에서 필요한 계획서류를 조달하는 일을 도와야 하는 과업을 진다.

1967년 지금 막 서술된 과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때까지 독일 태환은행에 합병되어 있었던 중앙은행의 기능 및 상업은행의 기능이 기구상 분리되었다.

공업, 건축, 상업 및 교통을 위하여는 동독의 「산업 및 상업은행」이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몇몇 특수 소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로써 신용업무에 있어서의 손실을 피하는 일이 은행의 독자적

이익이 되기 버렸다.

1968년 6월의 법률에 의하면¹⁾ 은행들은 심지어 「적극적인 신용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적으로 신용대부를 투자의 이용효과와 회전자금의 효율에 따라 행해야 하고, 자체의 재원의 투입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

단기 및 중기 은행신용대부의 이자구조는 개혁의 양상에서 꺾 달라졌다.

계획신용대부와 추가신용대부는 한결 더 뚜렷하게 구별지어졌다.

신용대부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규율을 확고히 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위에 서술된 원칙을 제한없이 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기준 및 분배기준의 중앙집권적 의무적 계획수행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다만 부분적인 목표를 상부에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목적에 유리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의 도움을 빌어서 확정 지우는 가능성만이 남게 될 것이다.

정치 지도층이 생산, 투자 그리고 분배의 범위와 종류를 대대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집하는 한에 있어서 그와 반대로 신용기관은 자기들의 농농업부의 범위와 종류를 같은 정도

주 1) 「국민소유의, 중소비조합의,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신용대부를 위한 원칙에 관한 법률 -사회주의적 기업의 신용공급-」 1968년 6월 19일자, GBI, II, 82 번 653면이하 참조

로 결정할 수 없으며 자기 사업 파트너의 금융배정에 대한 영향을, 마치 시장 경제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될 것 처럼 취하지는 못한다.

만일 은행들이 지배적인 상황하에서 비교적 큰 결점의 자율권을 요구한다면,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중앙집권을 광범위하게 유지하려는 의지의 결과로 고정가격 및 최고가격제도가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지도 총이 가격구조를 비용관계에 —최소한 소비물자영역에 있어서— 궁핍정도에 적응하도록 애를 쓸지라도, 그럼에도 은행들의 자유는 특히 재원이 지원된 계획의 선발에 관한 결정시에 심히 제약을 받고 있다.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야기지만 가격과 비용이 시장조건에 부응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은행들의 수익성계산과 산업기업체들의 이른바 효율검사는 팍팍한 하계에 놓인채로 있다.

불론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개개의 생산과 계획이 보조금에 얼마만큼 의지하는가를 인식하도록 개혁이 손을 쓴다.

여기서 끝으로 내리는 판단은 생산기금조세에 대한 그것에 맞먹는다. 다만 동독의 정치적인 관서들이 그들의 경제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본의아니게 상실할 때에만 그곳의 은행체계는 제도상으로 시장경제에의 돌파구를 넓히고 그것을 촉진할 만큼 많은 독립적인 상업적 결정의 가능성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날 사재의 현황으로 보아, 경제성의 표준의 보다 강력한
순수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그것은 완화에 이끌거 주는 대신 기
본적인 결정의 중앙집권체제의 공고화에 이끌거 될 가능성이 있
다.

3. 개인저축의 증가

이 논문의 테두리 안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현상은 동독에서 개인살림의 저축행위가 지난
수년동안에 크게 증대해졌다는데 있다.

관의 통계에 의하면 동독에서 각 가정마다 모든 저축형태로
된 해마다의 화폐재산형성액은 1961년에 487 마르크, 1964년에
633 마르크 그리고 1967년에는 811 마르크였다.

각 가정마다의 저축금액은 1961년에 2964 마르크에 달했고,
1964년에는 4010 마르크 그리고 1967년에는 5273 마르크에 이
르렀다.¹⁾

이에 대해서 서독에서는 개인살림의 금전 재산이 매 세대마다

주1) 포테이토·바터, 일정한 고기 종류(고객 가격표제도)의 공급이 가끔 제한되
는 것을 제외한다면, 동독내에서의 소비물품은 더 이상 관리되어져 있지 않다.
제기되는 수요가 딸리는 물품인 경우에는 높은 계획가격이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다.

1961년에는 906마르크, 1964년에는 1371마르크, 1967년에는 1484마르크씩 증가했다.

당좌예금 및 건축예금액은 각 세대마다 1961년에는 3370마르크, 1964년에는 5026마르크, 1967년에는 7457마르크에 달했다.

양측 독일에서의 증대량과 저축량의 비교는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는데 그것은 특히 서독에서는 금전 재산을 물건으로 변형시킬(자동차·토지·아파트, 그밖의 고가한 소비재와 실용품·주권……) 매우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재산의 훨씬 많은 부분이 돈으로서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동독의 마르크의 구매력은 개인살림의 수입액과 그것의 용도가 서로 비교되지 하는데 따라 서독 마르크보다 10배 내지 25% 낮은 것으로 거림 잡을 수 있다.

동독에 있어서 매 세대마다 평균해서 기천마르크의 금전 재산이 정치부서의 뜻에 따라 또는 그 뜻이 없는데도 경제와 사회에 영향력을 갖는가 또는 영향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저축금액은 합의된 기한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물든 자유로이 쓸 수가 있다.

이것을 자기 큰 범위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구속력있는 경제계획제도의 지속적인 기능 발휘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소비재영역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사태가 시장경제에 있어서 저축금과 은행
잔고의 집단적 인출의 경우 인출된 금액이 이제 부가적으로 구매
에 쓰이거나 우선 다만 돈을 긁어 모아 두기 위해서 거나, 여
하간 일거날 것임은 분명하다.

양쪽 제도에 있거 이와 같은 일을 대처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서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에 있거서는 그것이 질서 그 자체를 위해
시장경제에 있거서 보다 더 적은 영향력을 사용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동안 언급된바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조치를 고집하는
경우에만 국가적인 간섭이 초래될 것이니 말이다.

첫번째 경우에 있거서는 그와 반대로 거차피 특색있는, 중요한
결정의 중앙집권의 원칙이 한결 더 강화되고 내용적으로 변형되어
통용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 가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체계변용으로 이끌 것인
지의 여부는 취해진 국가적인 조치의 본질이 얼마만큼 크게 달라
지느냐 하는 것과 불문 또 구체적으로 체계 (SYSTEM)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는데 달려 있을 것이다.

만일 지금 막 언급된 특별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농복내에 있거서
의 개인저축이 그곳의 경제질서 및 사회질서에 대해서 가지는
가능한 영향의 가치를 인정키 위하여는 이러한 저축과 그 목적의
추축상의 이유에 일변을 던질 것으로 권장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소비물품의 총체적인 공급이 소비물품에 대한 가격이

주거졌을 때의 수요가 있는 양보다 적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강제
저축은 그 곳에서 의미를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¹⁾

공급되는 상품들의 가끔 놀라움을 자아 내는 높은 가격과 종종
부족하다고 간주되는 질로 인하여, 여전히 변화된 종류의 강제 저
축이 결과적으로 생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특히 관리상의 그리고 그밖의 장애로 인하여 현금 부동산으로
(토지·집) 바꾸기가 매우 힘들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저축동기는 또한, 후에 호화스럽고 오래가는 소비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재정적으로 가능케 하려는 소망가운데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고급 수요물품이 동독에서는 대개 훨씬 비싸고 소비자 신용대부
가 거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계기에서 서방에서
보다 더 많은 재력이 필요한 것이다.

주2) 관보에 의할 것 같으면 동독에서 새로 지어졌거나 수선된 아파트의 경우
총체적 건축업적에 대한 개인 주택의 비율은 1963/64년에 있어 5프로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주택건조가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조하
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 이래로 개인주택건조의 역압이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비교적 높은 개인저축은 즉 그 시초가 여러가지 모양이긴하나, 동독시민들이 입수할 수 있는 물품의 양과 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상황의 덕택으로 돌려진다.

개인저축에 있어서의 또하나 다른 특별 제기는, 의무적인 연금 보험에 대한 회비제산 한계가 600 마르크이고 바로 이것때문만이라 하더라도 동독에 있어서의 연금액은 비교적 낮다는데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인 저축을 통해서 노령에 있어서의 부가적 생계비를 확보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방금 서술된 이유와 목표 설정의 영향하에 이루어지는 개인 저축은 소비물품과 소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거느정도까지 이것이 시민들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에 대한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원칙에 대한 태도에 있어 중요성을 띠고 있는가는 확실히 여러가지 상세히 규정할 수 없는 제 영향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하여간, 언급된 종류의 저축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 자유가 확대된다는 상황에서 출발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점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개인 저축은 여러가지 강제가 따르는 사회질서의 조건하에서 조차도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일치성에 감하여 그 전과성을 감소하는데 작용을 미칠 것이다.

아무리 독재주의 국가에서 교육제도가 짜임새 있게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엄격성이 존재할지라도, 수입과 저축 보다

높은 생활수준에의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나 정확히 규제화 되어 있는 소비의 가능성에만 봉사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에의 기회에 대한 지식에 관한 자유력이 개인적인 관심과 평가와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특히 중앙집권적인 경제 기구의 확장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업적능력의 증가와 함께 여러가지 점에서 보다 높은 판단력 업적과 그것에 동용되는 표준의 뚜렷한 차이점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정부가 여러가지 점에서 그와 같은 것을 권장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것이다.

동구라파와 서방에서의 개인적인 관심과 욕구의 근접은 양 사회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생활태도의 차이와 특수하게는 개인재산 형성의 차이가 한층 더 커질 때에만 위에 서술된 이유로 해서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기야 많은 것이 이에 지적인 조건하에서는 매우 상이한 제도 하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들의 여하간 밀접한 결합성은, 겉으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것 보다는 덜 해이 해 진다는 논제가 정당함을 이야기 해 주고는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개인살림의 비교적 높은 수입과 저축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유에 대한 생각이 여러가지 점에서 똑같은 것으로 규정되거진다는데로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제도의 차이가 굳어지는 것 처럼 관찰되고, 정치수뇌들이 외적질서와 행위가운데서 그들이 표시하는 한에 있어서지

만 인간들의 정신적 조정을 계속하는데 있어 강력하고 무자비한 수단을 고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개인 금전 재산의 증가는 중앙집권 경제의 주인공들을, 중앙집권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거절 수 없는 처지에 점차적으로 몰아 넣는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않을까?

개인살림의 비교적 큰 자발적 저축이 축적되어 있는 마당에, 소비물품의 비교적 능숙하고 다양한 공급없이 최소한 잠정적으로나마 계획수행을 방해하는 부분적인 수요초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커진다.

만일 국민경제에서 비교적 높은 수입과 저축을 가진 시민들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경제업적 능력에 감하여 그리고 국제적인 비교의 인상하에서 실현가능하고 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많고 다양한 물건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실적의 지를 손상케 하고 독재적인 정권과 그 원칙에 대한 비판의 경향을 강하게 해 준다.

소비불자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산품·투자 및 소비의 범위와 종류에 관한 결정의 보다 확대된 분산이 이룩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설사 소비불자 영역에서 시장가격이 널리 형성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 생산·투자 및 분배 목표의 중앙집권적 확정은 중앙집권의 완화에 유리한 부수적 압력에 내 맡겨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개인적인 사용의 자유를 중앙집권적 결정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행사하려고 애쓰게 될 것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동독에 있어서의 개인살림의 수입과 저축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한에 있어서 —이것은 국민경제적 업적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대하는 경우 예기되는 일이거니와— 국민에게는 조만간 새로운 범주의 소비물자가 제공될 것이다.

보다 낮은 공급은 선택 가능성을, 즉 소비자로서의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킬 것이다.

강력한 정치지도층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축에 대한 개인의 임의권을 새로이 제약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마도 또한 소비물자에 대한 새로운 높은 조세보담을 과하는 방향으로 도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중앙집권적인 계획을 위태롭게 하는 작용을 (저축 태세의 후퇴, 수요초과, 능률의욕의 감소) 예기해야 할 것이다.

요약컨대 : 돈에 대한 개인 임의권의 증대에서 여하간 개인의 또는 정치에서 지배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심, 평가, 목표를 기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단순한 결정 관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일컬어 질 수 있으리라.

사회 경제적 결정의 중앙집권하의 범위와 종류는 항상, 그러나

거떤 방법으로도 결코 지배적인 영향이 아니라 잡다한 영향의
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약간의 요소의 약화는 다른 요소의 강화에 의
해서 상쇄된다는 일이 일거날 수가 있다.

중앙 권부의 과잉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독재자의 정치적
능력 또는 외부의 힘이 주는 뒷받침, 혹은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그들 권력이 실제적 또는 가상적으로 위협을 받는 경과로써, 특히
여론형성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적 영향의 결과로써 중앙권부의 활
동이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불수용가결인 것 처럼 보이게 하는
때 과업의 결과로써 정치 지도층 내부에서의 단결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검소한 생존의 유지나 표준화된 지위의
안정에 봉사하는 경우 금전에 대한 개인적인 임의권은 공공연하게
또는 잠재적으로, 정치적 정신적 강요에 대해서 이로써 생활방식의
규제화에 대해서 방기태세를 복돋아 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처럼 보인다.

4. 사회주의 기업경영에 대한 외국자본가의 참여

1967년 7월 10일 / 11일자의 유고슬라비아의 법률에 의하면 유고
슬라비아의 기업체에 외국인과 외국회사가 전체자본의 49프로까지
투자할 수가 있다.

이 법률은 생산수단에 있어서의 사회 재산 취급에 새로운 표준

을 가져온다.

만일 유고슬라비아의 연방의회가 일정한 경제 분야 또는 경제 활동의 발전에 그 나라의 특별한 관심을 승인한다면 외국의 투자율이 심지어는 19프로를 상회할 수도 있다.

만일 계약이 그것을 통해서 생산, 생산성 및 수출의 향상이 현대적·기술적·공학적 조직형태의 사용이 보장되는 협력을 예견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본국의 경제 조직체내에서 학문적인 연구를 진작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그리고 또 본국의 경제와 외국 투자가 사이의 동등권이 근본적으로 장애를 받을 때에는 해당 계약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관청에서의 등록이 거부될 수가 있다.

「.....만일 외국 자본이..... 독자적인 청산권을 지닌 특별한 단위에 (공장과 같은 것) 투자 되거울 때에는, 자본이 투자된 기업체가 그 가치를 초과해서까지 이 의무를 진다는 것이 계약상 예견되지 않는 한 이 단위의 자본가치의 금액고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영업행위에서 야기되는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외국의 계약 상대자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외국인이나 다른 유고슬라비아의 기업체에게 이양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자가 자기의 제

주 1) 저자 없음. 「유고슬라비아 내의 외국자본」, 남구라파 학문봉사지, 제 2차년, 제 8권, 1967년 8월, 125면 이하글 보라

주 2) 외국자본투입에서 제외된 것으로는 은행업·보험업 국내 교통 및 상업등이 있다.

약 상대방에게 판겠다고 내놓았다가 거부 당했을 때에 한한나」…

「외국인은 그에게 배당된 공동의 영업행위에서 나온 이득의 몫으로 기본자본에 대한 자기의 몫을 증액할 수가 있다. …… 또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그것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는 취득세 액수만큼 감소된 이득의 몫의 20프로를 같은 기업체 또는 다른 유고슬라비아의 기업체에 투자하거나 유고슬라비아의 은행에 공탁하여야 한다.」 나머지 이득과 이자는 외화규정의 테두리안에서 대체되거나 질 수가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득의 20프로가 넘는 액수의 할당금은 해당국에 남기도록 세법에 의해서 조정한다.

이 개선은 일견, 경제적인 가능성을 열기에 내자가 미치지 못하고 그 전에 실천된 투자자본의 중앙집권적 분배가 주효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국가에 의한 외국의 사채보다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가 더 활발하다는 경험이 작용한 것 같다.¹⁾

이 개선에 대한 동기로서 천명된 것은 「세계경제내에의 넓은 참여……」 「현존하는 경제의 변혁과 새로운 문습 및 국제적인 경제협력의 형식을 풍부화」 하려는데 대한 관심이다.²⁾

주 1) 「남 구라파 학문봉사」 지, 동문 126면

2) 「콤무니스트」 지, 1967년 5월 4일, 「남 구라파 학문 봉사」 지에서 인용, 동문 126면.

이 개혁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의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다.)³⁾ 공업생산수단에서의 사회 재산은 이 개혁에 의해 건
드려지지 않았다.)³⁾

여기서 이야기 된 법률이 장차 미칠 작용에 대해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은 틀림없이 그 나라의 정치 및 경제사정의 안정에
대한 신뢰도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얼마나 유고슬라비아측에서 외국인 파트너에 대해 확
신을 갖고 흥미를 갖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외국의 관심있는 자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거
느한계까지 그들에게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기업상의
공동작용이 관심거리인가 하는 것에도 또한 달려 있을 것이다.

주로 예외적으로 높고 속히 대체될 수 있는 이득을 얻으리라고
기대하여 영위되는 사업은 개인투자자와 기업가의 동기와 행위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써 그 나라 정치적인 요로에서 필경 그다지 달
가롭게 맞아 들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3)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유고슬라비아의 법률이 반포된지 1년반이 막 지나자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경제계 일별」지, 1968년 12월 23일자) 외국
의 5개 상사가 유고슬라비아의 기업체에 투자했다.

가장 중요한 케이스는 Kragujevac 에 있는 「적기 (赤旗)」자동차 공장에
대한 Fiat 회사의 투자인데 이 「적기」자동차 회사는 수년내 Fiat 차 생산
권허가를 받아 생산해 왔다. 중부 독일 (동독) 의 「국민소유의 페인트
및 염료공업연합체」가 슬로베니아의 Celja 에 있는 아연공장에 자본참여를
한것도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밖에도 두개의 이태리 상사와 한개의 미
국상사가 투자를 했다.

자본 참여는 각기 10프로 (Fiat의 경우처럼) 와 49프로의 사이이다.

지불교통의 관에 의한 검열은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득대체에 있어 난데없는 곤란이 야기될 끊임없는 가능성은 그 나라에 장기적인 금융참여에 대한 외국인들의 용의를 손상시킬 것이다.

우선은 유고슬라비아에서 외국의 기업체들이 대대적으로 공동작업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서술된 개선에서 공동 재산을 다룸에 있어 서방의 개인투자자와 기업가들은 온갖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으로 자극할 수 있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려는 용의의 주의할만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한마디 말의 영향으로 거리동절하게 되지 않도록 유고슬라비아정부의 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공업생산수단에 대한 재산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우선 그러한 생산수단에 대한 권력 또는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기 바란다. 그런데 이 경우 이러한 결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생산수단의 양도 권리에서와 생산수단을 파괴하거나 씌일 수 있는 권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관심을 주는 관련성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산수단에 있어서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 있어서도 온 인원, 인원 집단, 그리고 기구들에게 딸려 있거나 딸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종류의 영향력이다.

여기에 넣거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는 우선 기업을 위해 부착된 수단을 마련하는 영향력이 있다. (개산, 공동재산)

둘째로는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기업가들(매니저), 즉 한 기업체의 간부로서거나 감독으로서거나 아니면 그 밖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거나 등차 지대에서의 기회를 감지하는 일 및 일반적으로 기업체의 선전 능력을 보지하고 개선하는 일을 담당한 그 사람들이다.

세째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종업원의 이해를 돌보는 공장의 노동자 대표가 있다.

네째로 공동소유자의 위촉자로서 활동하게 되건 또는 거뭇던 기업체에 제공된 외국의 금전에 대한 관리인 또는 중개자로서 활동하게 되건간에, 신용기관과 그 밖의 자금이 축적된 기관의 대표자가 그것이다.

다섯째로는 공장운영에서 일정한 공장 테두리를 넘은 이해 관계를 통용하게 하는(자치단체) 공장외의 기관과 인적집단의 대표자와 마지막 여섯번째로는 기업 관리부내에서 또는 그것의 외부에서 일반의 일정한 이익을 보존하는 과업을 질머진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영향형태는 무엇보다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자유를 위한 테두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관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생산수단에 있어서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특히 보다 큰 단위체로 통합이 되거 있는 그러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실제적 또는 가능한 영향력의 넓은 계층이 존재한다.

상업적 기술적 기업관리부의, 공장의 자본가의 대표의 노동조합
자치단체 또는 그밖의 지방기관의 나아가서는 자본을 중개하는 은행의 비교적 광범위한 권한은 공업재산에 대해서 전체로서의 사회를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좁혀준다.

외국의 자본투자가에 대한 권능의 양보 용의와 함께 이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의 분리를 위해 한 걸음이 더 떠거졌다.

실제로 이곳에서 논해진 조정의 의미에서 외국과의 협력에 도달하는 한 이론부터, 상업적 기술적 기업능력내에서의 권한의 다른 분배만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중심부에서 인지되지 지지 않는 저권능의 확장도 또한 기대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여기 관심있는 공동재산제의 나라들에서는 주로 정부와, 정부지시에 달려있는 기관들이 공동재산을 위해 투자원의 마련에 대한 책임을 져왔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 자본 축적 기관에게는 약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져 있었다.

여기서 이야기 된 사실과 그것과의 관련성 속에서 행해진 고려에서, 그 경우 재산질서에 대해 관계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경제질서의 비교시, 생산수단에 있거 개인 재산이 존재하는가 공동재산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묻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 아무리 큰 비중이 이 기준에게 승인 해 준다 하더라도

비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생산수단과 그 생산고에 대한 결정권의 분배 분석이다.

이 논문의 저자처럼, 정치적인 권력이 우두머리에게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일당 제도에 있어서 공동재산에 대한 권한의 실제적인 분배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 헌법의 조건하에서 보다 훨씬 좁은 한계에 부딪친다는 견해를 사람이 갖고 있다. 순치더라도 여기서 행한 속고에 따라 생산수단에 있어 개인 계산을 인정하는 제도와 생산수단에 있어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와의 사이에 거절 수 없이 가로 놓이는 도량을, 일면 서방에서는 그리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른 면에서는 마르크스 주의적 쏜련적 교훈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 처럼 그렇게 깊고 넓다고 수는 있을 것이다. — 특히 그것은 양측이 경제성장을 중요시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다.

5. 경향들은 ?

외국의 자본주의에게 기업관리와 공장경영의 모험에 가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생산수단에 있어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의 정부에게는 때가 감에 따라 장구적으로 내국인들에게 비교될만한 자유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서술된 종류의 협동에서 외국인에 의하여 아무런 착취도 그밖에 공동재산을 취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의 손상은

볼 수 없게 되면 만일 내국인이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때 그 때에는 그것이 전혀 주장되지 질 수가 없다.

내국인은 그러나 외국인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국가 법률에 속종하며 그들은 오히려 국내재판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나 동구라파의 다른 나라에서 내국인이 투자할만큼 큰 자본금액을 보유하기까지에는 물론 아직도 오래 걸릴 것이다.

1968년 5월과 6월의 벨그라드에서 발간되는 「폴리티카」(Politika)지의 두개의 논설은 위에 제기된 질문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²⁾

첫 논설은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증권의 발행은 실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긴하나 시민들이 증권을 살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그동안 별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존하는 신용 제도의 두번째의 보다 큰 결함은 경제조직체(기업체)에게 독립적으로 채권과 주권을 조사할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만일 노동자조직체 자체가, 시민이 그들 경영체에서 돈을 투자하

주 2) 저자없는 논설 「국내자본시장에의 길」, 1968년 5월 23일, 벨그라드 발행, 「Politika」지에서 뽑은 축소된 복사

저자없는 논설 「노동자가 증권을 산다」, 1968년 5월 12일, 벨그라드 발행 「Politika」지에서 뽑은 축소된 복사

두 논설 다 1968년 11월 29일자 「동구라파문제」지, 본 발행, 제 24권, 558면이하에서 인용함

도록 「요구」한다면 결합있는 채무자선정에 관한 많은 소문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거디에다 자기 돈을 투자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여하간 최선의 발전 가능성을 가진 저 노동자조직체에 보다 큰 금전집중 현상은 일거 날 것이다.

만일 채권이 인쇄된다면 물론 그것의 거디에선가 판매 및 구매 되거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고려한 이름을 갖지 못하리라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에 넣음 없이 증권시장이 무조건 필요하다』

두번째 논설에서는 기업동채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 되고 있다.

이 일은 좋은 방향을 얻었다고 거기서 확인되고 있다.

구매의무의 최소가치는 노동자 조직체에게는 5만 신 디나 (Dinar) 이고, 이에 반해서 시민들은 최소한 500 디나를 (한몫에 전 또는 할부인전) 사지 않으면 안된다.

6프로의 이율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묵어 있었을 자금을 동원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저축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발행종류로서 우리는 증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채권을 채택하였다.

증권은 자본을 동원하는 일종의 형식이며 이것은 기업의 난리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주주 업무이다.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주권이 절대적 정당성을 가질 것이다.」……「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자본주의적 방법의 도입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적 독자관리 경제를 위해 『공동 자본의 시장』에 대한 일정한 요소들과 사회주의적 사회사정과 일치하는 우리들의 『노동규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에 깃들여 있는 것중 약간은 그 형태에 따라 볼 때 우리들의 경제에서도 이용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채워서 말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문제삼지는 않는다.

막 인용한 논제의 옹호자는 개개의 공장파 개인자본제공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유리성을 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실사 인용된 생각이 실행되는 경우에 단지 진짜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생길뿐, 유고슬라비아에서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기업체들간에 허가되지 않은 것과 같은 관계가 생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대부를 받는 공장의 관리부 및 거뒀는 기업체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개인자본제공자의 이익을 감안하도록 강요

를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개인자본 제공자의 관심을 일깨우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만일 단순한 채무자·채권자 관계로부터 자본제공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관계에로 넘어가는 과정에 도달한다면 그러한 유의 감안이 한결 더 높은 정도로 되거져야 할 것이다.

만일 거차피 기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여러가지로 실라져 있다고 다시 말해서 몇몇 담당자에게만 기업체내에서 집주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¹⁾ 가능성이 주어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러한 과정은 훨씬 더 쉽게 상상될 수 있다.

방금 이야기 한 종류의 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한 전망이 거떠한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고찰 될 수가 없다.

벌써 그러한 종류의 계획들이 공공연하게 논의된다는 상황속에서 만도 생산 수단에 있거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에서도 생산수단을 다툼에 있거 여러종류의 인적집단에 대해 고려되거져야 하고 생산수단에 대해서 권한의 완화가 고려되거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계속 나타나는 뚜렷한 뒷받침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생산 수단에 있거서의 공동재산의 기구는

주1) 동독에서도 근년에 개인유가증권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채무자는 물론 국가기관 또는 준 국가기관뿐이다. 거기서는 시민들을 위한 기업채권의 발행이니 심지어는 개인자본 제공자의 일정한 공동발언권의 양도가 그 이전에 기업관리부와 종업원들에게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제까지 보다 높은 정도의 독자성이 귀속되도록 고려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끝내 금기인채 남아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그러한 생산수단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원칙들은 오늘날 이미 쓸재치 않는다.

「쏘련 사회주의적 견지에서 본 동서무역」

파울 헤젤 씀

K. Paul Hense l

I. 마르크스적 이론에 있어서의 세계시장 문제

1. 카를 마르크스 (Karl Marx)는 자기의 경제 이론을 「정치적 경제의 비판을 위하여」라는 제목하에 여러권의 소책자로 출판하려고 의도하였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두권은 외국무역 및 세계시장 그리고 위기를 취급할 예정이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계획을 여러가지 이유에서 실현하지 못하였다.¹⁾

그런데 그가 남기고 간 선집속에는 완성된 국외 무역이론이 결여되어 있다.

하여간 Marx는 다른 연관성속에서 여러가지로 세계시장과 국제적인 경제관계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흩어져 있는 그의 표명들 하나의 초안으로 모을 것 같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타난다.

주1) 다만 그 첫권만이 1859년 「정치적인 경제의 비판을 위하여」라는 제목하에 출판이 되었다.

이 글은 K.Marx, F. Engels저: 전집 (MEW), 제13권, 동베르린 1961년간, 제1면에서 160면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Engels의 비평도 참조할 것.
상계서 468면에서 477면까지에 수록.

-마르크스의 의도변경에 대하여는 MEW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제23권 843 4면 주1, 제13권 7면 그리고 제25권 132면 참조

첫째 : 세계무역은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의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건이었다.²⁾

Marx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발전은 15세기말경 「세계시장의 혁명」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 혁명은 북해리의 무역주도권을 파괴하였고 포르투갈·화란·스페인 그리고 영국으로 하여금 대서양 국가들로서 세계무역에서 주역을 담당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³⁾

식민지 무역에서 얻은 큰 이득으로서 착수된 공업화의 금융적 기반침으로 살았나.

이것은 마침내, 영국이 경쟁하는 해운국들을 능가하고 19세기에 공업국과 무역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은 전적으로 국제적인 잉여물교환의 이기들 그만둔다.

무역자본은 이제 공업생산의 영역에까지 파고 들어 오고 이것이

주2) MEW, 제 25권 335면에서 349면까지 참조

3) Marx는 여기서 특히 15세기말에 있었던 위대한 지리적 발전이 가져다 준 경제적 결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MEW, 제 23권 860면, 1면, 주 1.62 참조.

상업적 사고를 생산적인 자본의 소유자에게까지 중계해 준다.
이제부터는 외국무역이 걸트기 시작하는 기계적 생산에 봉사한다.
그것이 지상에서 접충하는 상품제공에 점점 더 넓은 여지를 열
어 준다.

그리고 원료공급을 개선한다.

바로 이로 인하여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의 발전에 기여
한다.

Marx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발생은 온 세계에서 자본주의적 생
산방법의 일반화를 가져다 주었다

국제적 경쟁이 이제 모든 기업가들로 하여금, 상품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술적 발전을 끊임없이 안중에 두
도록 강요한다.¹⁾

둘째 : 노동가치는 세계 시장에서의 교환 관계에도 적용된다.²⁾

개인가치를 바탕으로 한 이 생산가격의 형성과 이것을 중심으로
한 시장가격의 변동과 유사하게 Marx는 그 주변에서 세계시장
가격이 진동하는 그러한 국제가치를 형성하는 메카니즘을 생각한다.

국제적인 경쟁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장가격의 작용은 이렇게 해
서 국민경제내에서 만들어진 잉여 가치의 국제적인 재분포에도 이

주1) MEW, 제23권, 349면 및 K.Marx저「자본론」, 제3권, 동베르린
1957년간, 365면 참조

2) K.Marx저「정치적 경제비판의 요강」 동베르린 1953년간 제808면이하
에 나오는 리카르도(Ricardo)에 대한 피평을 참조할 것.
다음에서는 「요강」으로 인용됨.

끌어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arx는 외국무역에 대한 Ricardo의 이론을 답습한다.

이때에 그에게 있어서는, 국제적인 노동분화에 있어 생산성의 이익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Ricardo이론의 귀결들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Ricardo에 의하면 국내시장의 규칙이 국제무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반하여 Marx는 가치법칙 및 평균이익의 작용을 국제적인 무역관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무역의 유리성은 따라서 보다 생산적인 나라로 흘러들어가는 순 이윤으로서 실현화되는 것이다.³⁾

「그러나 가치법칙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데 있어서 아무리 자주 보다 생산적인 국가가 그들 상품의 판매가격을 그것의 가치에까지 내리도록 경쟁자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시장에서 보다 생산적인 국가의 노동이 마찬가지로 보다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연동된다.

한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하는 정도와 똑 같은 정도로 거기서는 국제적인 수준위로 국민적 상업도와 노동의 생산이 또한 솟아 오르는 것이다」⁴⁾

주3) MEW 25권, 266면 참조.

4) MEW, 제23권, 584면.

세계 :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지양은 단지 세계시장의 분규의 결과일 수 있을 따름이다. 5)

마치 개개의 사회적 기관이나 사회실서가 그 몰락의 조건을 스스로로부터 발전시키는 무상한 역사적 형식적인 것처럼, 자본주의적으로 영위되는 세계무역에는 선 자본주의적·야생적 질서를 짓 짓 거 발기는 경향이 깃들여 있다.

「세계시장을 만드는 경향은 자본의 개념 자체속에 주어져 있다. 모든 경계선은 극복되어야 할 장벽으로 보인다.」⁶⁾

「후자는 그 경향에 따라 본다면 자본을 마치 자연 신격화를 넘듯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일정한 경계선에 자기 만족적으로 말·뚝박힌 고대의 생활방식의 현존하는 복수 및 재 생산의 단축을 넘듯 국민적인 울타리와 선입관을 넘어 떠돌아 가는 것이다.

그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생산력의 발전, 수요의 확대, 생산의 다양성, 자연력 및 정신력의 이용과 교환을 제동하는 모든 장애를 내려 부순다」¹⁾

세계시장을 증계로 한 세계 포괄적 균명예의 도상에 있는 온갖

주5) MEW. 제 9권, 226면, 「요강」, 상계서, 175 면 참조.

6) 「요강」, 상계서, 311면.

주1) 「요강」 상계서, 313면.

장애의 지양을 Marx는 자본의 역사적 업적이라 본다.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이 장기적 해결책으로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넘은 길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2중 생각을 그는 다음과 같이 형용하고 있다 :

「지금으로부터 자본의 문명화하는 위대한 영향 .

그것에 대해서 모든 이전의 단계들은 다만 인류의 지역적 발전이며 자연우상숭배로서 보이는 그러한 사회단계의 자본의 문명화에 의한 조성」²⁾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이 끊임없이 찾아서 표류하는 보편성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그것 자체를 이 경향의 최대장애로써 인식케 하고 그러므로서 자체를 통해서 사체의 지양으로 표류해 가는데 대한 장애를 자체의 천성에서 발견한다.」²⁾

전체적으로 보아 국제적인 분업은 세계시장유종과 무엇보다도 세계시장가격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 한에 있어 Marx와 Engels

주2) 상계서 13.4면.

F.Engels의「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MEW, 제21권.

에 의한다면 어떤 나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문명 발전을 뜻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경제의 민족적 고립은 문명의 퇴보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경제적인 연결관계없이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3)

2. 세기 전환기에 국제 사회 민주주의 세력은 자본주의의 안정에 대한 대외무역의 의미에 대해 격렬히 토론되었다.

이때에 특징적인 것은 세계의 일방적 시점이었던바, 이 시점은 특히 축적과 과잉생산과의 관계가 고찰의 중심점에 세워졌다는데 귀결된다.

이 이론적 논의의 의도는 오히려 정치적인 성격의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제도의 예기되는 붕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었다.

Marx의 축적이론에 관한 토론의 발전은 「자본론」의 제2권 및 제3권 그리고 「잉여가치에 관한 이론」(K. Kautsky, 1905년에서 1910년까지의 사이)의 출판할 통해서 아마도 크게 진작된 것 같다.

후자에는 Ricardó의 축적이론을 비난적으로 손질한 말이 들어

주3) Annenkow에게 보낸 Marx의 서간, MEW, 제27권 451면이하를 참조할 것.

있다.

물론 그 밖의 중요한 Marx의 텍스트가 — 「정치적 경제비판의 개요」가 그렇거니와— 30년 후에야 비로소 (1939년에서 1941년까지) 초판되었는데 이것이 그 토론에 다른 방향을 주었음 수도 있었을 뻔 했다.

특히 세계 시장적인 연결의 긍정적 양상, 국제적 분업 및 생산성 이득은 예외를 제외하고⁴⁾ 과소 평가 되었다.

오히려 「국민생산의 모든 모순은 일반적인 세계 경제위기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¹⁾라는 Marx의 말이 세계시장의 작용을 서술하는 일이 문제될 때에는, 강조되어졌다.

hosa Luxemburg는 기술적 발전에서의 지속적인 진보를, 과잉 생산을 받아 들일 수 있을 국내 및 국외시장의 비자본주의적 영역의 존재에 달려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만일 비자본주의적 영역이 사라진다면,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다²⁾

주 4) R. Renner 저 「마르크스주의, 전쟁과 인터내셔널」, 슈투트가르트 1917년 간, 110면이하 참조.

Renner는 세계경제공동체는 문화성장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대표하고 있다.

주 1) MEW, 제 26권, 제 2부, 535면.

또한 H. Grossmann 저, 「자본주의체제의 집적법칙과 붕괴법칙」, 라이프치히 1929년 간, 참조.

2) R. Luxemburg 저 「자본의 축적」, 라이프치히 1912년간.

이에 대한 비평으로서는 N. I. Bukharin 저,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함부르크 1929년간 참조.

Lenin 은 Sismondie³⁾의 추종자들과의 논쟁에서, 자본주의가 할
가피하게 세계시장에 의존함은 그것의 존재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배격했다.

자꾸만 더 발전해 가는 생산수단의 교환은 자본주의에서 판매문
제를 야기하고 그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상품을 단기간에 판매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은 자본주의
가 제도로서 기능을 발휘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을 아직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확고한 자본의 이러한 보다 큰 사용은 교환가치라는 술어로서
표현이 되는 생산력 발전의 고차적 상태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빠 발전하는 『생산수단』의 주요부분은 원료
기계, 도구, 건축물 그리고 대생산과 특히 기계적 생산을 위한
그밖의 모든 시설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⁴⁾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교환을 위한 이러한 확립된 객관

주3) 러시아에서 Sismondie의 추종자들은, 러시아의 자본주의는 소비불품에
대한 근소한 수요때문에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견해를 대신하였다.
W. I. Lenin 저작집으로부터의 발췌, K. Marx저 「자본론」 제 2권, 동베르린
1958년간 545면에서 594면까지 참조

4) W. I. Lenin 저작집, 제 3권, 동베르린 1956년간, 43면

적 경향이야말로 소련에서는 수입구조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약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 즉 Marx 와 Lenin 은 모든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얽혀 있는 현상가운데서 인류의 문명적 진보를 위한 필요불가결의 조건을 보았다 라고.

2. 소련에서의 대외무역의 기능

(1917 년에서 1945 년까지)

1. 1917 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세계시장의 일원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규칙에 예속되어 있었다.

전시 공산주의와 함께 중앙집권적계획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신경제정책시기(N Ö P)를 제외하고는— 오늘날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이 새로운 경제체제는 질서논적으로 보아, 경제과정의 국가적 계획, 생산수단에 있어서 국가 및 사회적·협동조합적 재산의 우세, 계획충족의 원칙, 국가적인 가격설정 그리고 —전체체제의 논리적 귀결로서—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 독점등으로 인해 성격지어졌다.

경제 정치적 주요분제의 하나는 이제는, 세계시장에서의 그밖의

주로 자본주의적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중앙관리체제가 어떠한 농
상관계로 형성할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이 분제와 특히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독점에 관한 의견들은
20년대에 항상 일괄적은 아니었다.

10월 혁명후의 첫조치들 중의 하나는 전체 대외무역의 국유화
였다.

1917년 12월 우선 상함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잠정적인 금지
및 허가제도가 도입된 다음, 1918년 4월에는 외국과의 모든 개인
통상이 금지되고 대외무역이 국가의 독점불임이 천명되었다.

「대외무역은 소련에 있어서의 계획경제의 일부이다. 소련에서는
경제의 최고 사령권이 국가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¹⁾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독점의 목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획의 가장 빠른 실현 및 노동자들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있었다¹⁾

「소련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의 사회주의적 계획적 성격에」 맞추어
다시 말하여 그 대외무역의 성격에 맞추어 국가는

「직접적인 대외무역업무가 수행되도록 허용된 경제부분 및 그것
을 하도록 권능을 부여받은 이들 상점과 기관의 범위를 확정짓는

주1) 「소련 대백과사전」(GSE), 제1권, 제2판, 동베르린 1952년간, 1082면

경제적 및 사회주의적 건설의 과업을 근거로 하여 국가는 수출 및 수입계획에 따라 수출 및 수입되도록 허용된 물품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생산허가와 할당제도에 의하여 국가는 직접적으로 수입 및 수출, 아울러 대외무역기관들의 작업을 조정한다」²⁾

처음 건설 20 년간에 있어서 러시아는 아직도 세계시장에서 약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적 미개발국가로써 간주되었다.

이 시절에 국제통상의 과업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졌다.

「무산자 국가의 대외무역기관은 자본주의적 주권을 감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과업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자기나라의 생산력 발전에 대한 최고의 고취와 자극 b) 건설중에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를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공세로부터 방어하는 일」³⁾

공업화는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의 수입으로서 쟁취되어야 했다.

수출은 주로 농업생산물에 의해서 맡아졌다.

1921 년부터 소련은 그들의 대외무역을 통상조약과 그밖의 국제적 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이로써 영국·미국·불란서와 그밖의 다른 나라들의 금 봉쇄와 신용 봉쇄에 대응하려고 기도했다.

주 2) 소련공산당 결의, 「소련」 라이프씨히 1959 년간, 451 면에 인용되었음.

3) 소련공산당 결의, GSE, 상제서, 1083 면

대외무역 독점은 특히 N O P 시기에 논란되었다.

Bucharin 과 Sokollikow 는 그것을 높은 물의 보호관세로서
대체하려 했다.⁴⁾

실제에 있어서 1922 년과 23 년에는 일정한 경제기관과 협농조합⁵⁾
본부가 외국과의 독자적인 동상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물론 대외무역독점의 규칙을 무조건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서였다.

나아가서는 외국의 참여하에 본성주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것
은 그러나 30 년내에 다시 국유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nin 은 독점화된 대외무역을 필수불가결하다
고 생각했다. :

「이러한 독점화 없이는 우리가 『공세』(貢稅)를 치름으로써 해서
외국의 자본으로부터 우리를 『되 살』 처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은 선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과도
기 동안에 일정한 공세를 외국의 자본에게 치름으로써 우리들의
내적인 경제의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¹⁾

주4) 상계서, 1084면.

5) G. S. E. 상계서, 1088면.

주1) W. I. Lenin, 저작집 제33권, 동 베르린, 1962년 442, 3면.

Stalin에 의하더라도 대외무역 독점의 철폐는 :

「우리나라의 공업화의 포기, 새로운 공장건설의 포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들어 온 상품으로 소련이 홍수상태가 되는 일, 비교적 약세로 인한 우리 공업의 폐장, 실업자 수의 증가, 소련의 경제적·정치적 입장의 악화(릿)결국에 가서는 MÖP 추종자들의 강화와 새로운 부르주아지의 강화를 의미할 것이다…」²⁾

그리하여 대외무역 독점은 다시금 「소련정부의 발판」으로서, 그리고 「대외무역 이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고로 사회주의적 축적의 원천의 하나로 간주되어졌다.

2. 30년대에는 소련의 대외무역이 점점 더 심하게 최초의 5개 5년계획들의 두가지 주요목표에 예속되어 갔다. 즉 국민경제의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의 . . .

대외무역의 범위와 구조는 따라서 「국민경제의 계획적이고 비례적인 발전법칙의 요구와」⁵⁾ 일치해야 했다.

「국민경제계획수행을 목적으로 수입계획의 정확한 충족의 필요성과 검약하게 관리하고 가능한 한 외화보유를 압리적으로 농원할 필요성은 이 계획들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다.」⁶⁾

주2) J.W.Stalin, 「레닌주의의 제 문제」, 제10판, 179, 180면 GSE에 인용됨, 상계서, 104면

주5) 소련, 상계서, 451면

6) GSE, 상계서, 1098면.

그밖에도 소련경제는 「자본주의에서 불가피한 경제 경기인동과
이와 결부된 가격변동의 불가피한 교체」⁷⁾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제무역은 「나라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데」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업은 1935년 Stalin에 의하여 특별히 강조되었다 :

「불론 우리는 50억 루블의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것을 우리는 엄격하기 이를데 없는 저축성을 통해서 모았고,
우리 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원료수입과 대중수요물품의 생산을 높이기 위해
쓸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계획』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갖고서는 우리는 농상공업도 기계제작
도 트랙터도 자동차도 또한 비행기와 전차도 갖지 못했을 것이
다.

그러면 우리들은 외부의 적과 아무런 무기도 없이 대치하게 될
것이다.」⁸⁾

1939년 그 당시의 대외무역담당인민위원이었던 MikojaL 은 이 대

주7) 상제서, 1083면, 또한 W. I. Lenin. 저작집, 제 33권, 상제서 444.

5면 참조.

8) G S E, 상제서, 1083면.

외무역정책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수요를 본질적으로는 수입없이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수입은 주로 일정한 경제분야의 발전을 그것없이 우리의 현재의 가능성이 형성할 수 있을 것보다 한결 더 강력하게 쟁취하는데 봉사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위기가 수출과 수입의 제한을 야기케 한다.

그와 반대로 우리들은 대외무역을 일정한 관점에서 제한했는데 그것은 확대된 소비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이 증가되기 때문이다.」¹⁾

3. 그 시절에 소련에게는 즉 주로 국제적 분업의 경제적 이익을 소련 국민경제에 유용하게 만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자체의 생산구조의 빈틈바구니를 수입을 통해서 메꾸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절대적 또는 비교적 경비이득의 이용이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대외무역에 대한 이와 같은 Stalin시대를 특징지어 주는 「빈틈메꾸기 이론」은 그 시절에 소련 대외무역이 범위·종류·지방적

주 1) GSE, 상계서, Sp. 1093.

구조를 결정지었다. 2)

그러나 중요한 기계, 작업대 등등의 수입에 자체 생산의 확장들 통해서 자신을 의존치 않도록³⁾, 동시에 애를 썼음으로 제도의 정치적 및 경제적 목표에 의해 정해진 대외무역은 소련경제구조의 발전에 대한 표준적인 요인이었다.

제 2 차 대전 종말까지 소련은 한결같은 세계시장에서 스스로를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뜻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그후 경제과정의 관리상의 계획 및 조종의 소련제도를 답습한 여러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기자, 「소련은 최초로 같은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대외 무역의 본질적 부분을 맺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이제까지 대외무역과 결부된 모험을 현저하게 감소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⁴⁾

주2) K.C. Thalheim 저: 「동 구라파제국의 대외무역과 경제제도간의 관계」.

「현대 세계」지. 제재. 1968년 제3권. 243면 이하 참조.

여기에 대해서는 244면 참조.

3) G. S. E. 상계서. Sp. 1094 참조.

4) K. C. Thalheim 씀 「동 구라파나라들의 대외무역과 경제제도간의 관계」 상계서. 245면.

3. 세계시장의 균열

(1) 사회주의적 세계시장의 생성

1. 1945년에 시작되는 동 구라파블록의 형성은 소련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한결같은 전부를 포괄한 세계시장의 붕괴에서」 그리고 「평행적인 민주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세계시장의 형성에서 생겨난 제2차대전⁵⁾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Stal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던 것이다.:

「두개의 서로 대립된 진영의 존재의 경제적 결과는 한결 같은 전부를 포괄하는 세계시장이 붕괴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서로 대립해 있는 두개의 평행적인 세계시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및 영국 그리고 불란서는 물론 그러한 의지는 없었지만 새로운 평행적 세계시장의 형성과 확립을 스스로 고무하였다는 점은 특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 나라들은 소련·중국 및 구라파의 인민민주주의적인 나라들

주5) K. Pritzel 저 「동 구라파 블록내에서의 SBZ의 경제적 통합」, 제2판, Bonn/Berlin 1965년간, 45면 참조.

즉 Marshall Plan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 나라들 위상, 그것으로서 이들의 목을 졸라 죽이려는 희망속에 경제적 봉쇄를 덮어 써왔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목졸라 죽인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시장의 확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본질적인 점은 그러나 물론 경제적인 봉쇄가 아니라 이들 나라들이 선후의 시기에 경제적으로 단합하고 경제적인 협력과 상호 원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¹⁾

이러한 경제적 단합은 1949년 「상호 경제원조평의회」(RGW = Comecon)²⁾의 설립을 통해서 1949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평의회에는 소련 외에 우선 불가리아·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체코·알바니아가 그리고는 1950년에 동독이 속하게 되었다.

프라우다지에 발표된 코뮌니케에서 일컬어지고 있듯이, 이로써

「미국·영국 그리고 그밖의 서구라파 여러나라의 정부들에 의한 동구라파 여러나라들과의 무역관계 보이콧트가 무효화 되고 인민민주주의의 나라들과 소련간의 경제적 협력이 한결 더 강력하게 확대되어졌다.」³⁾

주1) J. W. Stalin 씀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들」, K. Pritzel 씀 「경제적 통합……」상제서, 45면에 인용됨.

3) 1949년 1월 25일자 「프라우다」, K. Pritzel 「경제적 통합……」, 상제서, 43면에 인용됨.

자유세계와의 경제적 접촉은 위협시되고, 세계시장을 확장하려는 서방측 노력은 「민족주권의 원칙에 대한 음험한 공격」⁴⁾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소련의 대외 무역성은 그 당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던 것이다. :

「아무런 장애가 없는 통상에 관한 온갖 지꺼림은 낭설적인 허무한 미사여구로서 가면 벗겨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미국의 제국주의는 이 미사여구하에 외국시장에 미국 상품을 자유로이 침투시킬 것을, 국가공업을 자유로이 목졸라 죽이고 다른 나라들을 담핑 값인 미국의 열등상품으로 자유로이 범람하게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⁵⁾

이 힘을 중립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그들은 COMECON 제국의 상업정치적 재계몽가운데서 보았다. 갈수록 더 심하게 이들 나라의 대외무역은 서방시장에서 분리되어 사회주의적 세계시장에 통합되었는 바 사회주의적 세계시장은 소련의 경제적 목적에 맞추어 결정되어갔던 것이다.

다음의 표가 이러한 경위를 뚜렷이 해 준다. :

주4) 「Voprosy Ekonomiki 지」 1950년제12권, K. Pritzel의 「경제적통합…」, 상계서 45면에 인용됨.

5) 「Vnesnjaja Torgovlja」지, 1950년 제15권, K. Pritzel의 「경제적통합…」, 상계서, 46면에 인용됨.

각국 순서로 본 대외무역매상고에 대한 동 구라파 늘룩의 붓

(대외무역 매상고 도합 = 100 프로)⁶⁾

나 라	1937	1948	1949	1950
알 바 니 아	4.8	38.3	100.0	100.0
불 가 리 아	9.6	74.5	82.3	88.2
항 가 리	13.3	34.1	46.5	61.4
폴 렌 드	7.1	34.4	43.3	59.2
루 마 니 아	17.7	70.6	81.8	83.3
체 코	11.2	30.2	45.5	53.0
평 균	11.7	33.5	51.5	62.2

COMECON 제국의 대외무역 매상고¹⁾
(도합 = 100)

	1955	1960	1965
COMECON 제국 상호간	62.1	59.6	64.3
서 방 공 업 국 과	17.5	19.5	21.0
저 개 발 국 과	5.2	7.8	10.1
기 타 의 나 라 들 과 ^{☆)}	15.2	13.1	4.1

☆ 중화인민공화국, 몽고인민공화국, 북한피뢰 및 북 베트남 포함.

주6) K. Pritzel 의 「경제통합...」, 장제서, 52면에 인용됨

동독의 대외무역 판매고

(동독내 상업제외)

판매고는 백분율로

	1958	1963	1964	1965	1966	1967
소련	48	53	51	47	46	46
소련제외 Comecon	26	29	28	30	30	30
Comecon 합계	74	82	79	77	76	76
그밖의 공산국가	9	4	5	5	5	5
공산국가 합계	83	86	84	82	81	81
서방공업국 및 저개발국가들	17	14	16	18	19	19
총 판매고	100	100	100	100	100	100

2. 사회주의적 세계시장의 성립을 진작시킨 것은 소련 사회주의의 견해에 의하면 두가지 측면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으로 성립된 관계를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로부터 독립했다.

주1) W. Föwster 「동 구라파내에서와 동 구라파와의 경제적 협력」, 「경제 및 사회적치적 기본정보」지, 독일공업연구소의 교양 분과발행, Köln 1967년, 제8호, 제Ⅲ항, 제12번, 32면 참조.

그 결과로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이 발전하였는 바 그것은 구조에 따라서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능등 동지적 협력과 사회주의 제국의 비이기적 원조」가운데 들어 있는 그 본질에 따라 그러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로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전체내에서의 경제적 힘의 강화를 위해」 온갖 역량과 수단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의 가능성이 결과로서 나온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국제적 분업의 목표는 그 발전의 첫단계에 있어서는 「주로 대외무역협정의 도움을 빌어 각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경제의 병렬과 조정」이고, 두번째로 높은 단계에서는 그에 반해서 「계획에 맞고 합리적인 생산의 전문화와 협력의 형제로서의 생산의 직접적인 조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에 합당하게 1955년 이래로 COMECON 제국의 장기적 국민경제계획의 기간들이 서로 조정되었다. 여러나라의 생산을 「공농계획」에 따라 전문화하고 협동하는 제 2의 고차적 단계는 1962년까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COMECON의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질서, 정치적 조건이 일률적이었고 생산수단에 있어서의 국가재산으로 해서, 그리고 대외 경제관계를 포함하여 국민경제과정의 국가적 기획으로 해서 저 공동적인 초국가적 계획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긴 하나 이 계획은 COMECON 내부에서의 서로 대립되는 의견때문에 좌절되

었다.

특히 루마니아는 개개의 나라의 주권에 저촉되고 갈수록 더 심한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화를 초래할 초국가적 기획에 대해 반대했던 것이다.

(2) 제도간의 동상

동구라파블록 내부의 강력한 통합기도 불구하고 Comecon 제국의 서방국가들에 대한 —표가 보여 주었던 것 처럼— 통상간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개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점증하는 공업발전 및 Comecon 내부에 적의 효과적으로 되어 가는 분업과 함께 마침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처럼 동시에 보다 증가한 체제내의 협력을 위한 가능성과 또한 필요성이 마련되어졌던 것이다.

「구라파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RGW의 모든 회원국들이 공업국 내지는 공농국가로 탈바꿈한 뒤— 점증적으로 공업적 국제적 및 동시에 또한 동일체제내의 분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변화된 생산 및 통상구조는 달라진 국제적, 그리고 동일 체제내의 협동구조도 요구한다.」

이러한 동일 체제내의 통상의 본질적 이점을 그들은 기술적 진보의 수입가운데서 보았다. :

「독자적인 연구의 선행주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구매 또는 협력볼(공동연구, 최고생산품의 Comfilation 등등), 또한 상응하는 자본주의적 최고업적볼 이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밖의 긍정적 양상으로서 간주되는 것은 기술적 진보의 수입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가격 낮추기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 등등을 위한 자주이었다.

각기 다른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이와 같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분업은 다음과 같은 발로서 이념적으로 설명되어졌다.

「여기에서는 그 본질에 있어 각기 다른 두개의 재 생산과정이 서로 결합되어져 있고 여기서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법칙성과 자본주의의 경제적 법칙성이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법칙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경쟁성의 법칙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와의 사이의 국제적 분업의 성격은 이로서 체제 한정적 법칙성의 싸움을 통해서 정해진다는 바 이 싸움속에서 사회주의적 국제적 분업의 본질이 마지막에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재산의 바탕위에서 그것은 사회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동상관계에서, 우리들의 정치적 원칙을 관철하는데엔, 동시에 우리들의 경제적 법칙성의 관철도 표현되어

나타난다.

우리들 법칙성의 관철은 그 안에서 동시에 자본주의적 경제학의 영향이 제한받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다.

이때에 우리나라는 생산관계로서의 국제적 분업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으로서의 국제적 분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무역의 기획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들은 언제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떤 범위내에서 행동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절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즉 우리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필요성에 맞추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국제적 분업구조를, 계획에 따라 변경한다는 말이다.」

50년대에는 동서교역에 대한 이념적 판단이 아직 가지 각색이 었다.

Kohlmeier 에 의할 것 같으면 국제적인 분업에서 동서교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결과한데 반하여 Enderslin 과 Dondey 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구속이란 오로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거나 「방해받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Kohlneoy는 세계시장관계를 상충경제의 범주의 입장에서 평가하였는데 이 관계에 따를 것 같으면 동서교역에서도 「가치형태와 시장법칙의 일반 통용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Enderlein는 「중립적인 세계시장관계」를 거부하였다.

그것이 동서교역에서 계급 무차별적 관계를 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분업은 생산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통일체로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nderlein의 이와 같은 견해는 60년대에 Hofmann에 의해서 수정되었는데 그는 전자의 견해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과도한 강조를 보았던 것이다.

각기 다른 사회질서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생겨난 분업과 아울러 생산력의 발전은 경제체제들을 분업적으로 서로 연결지어 주기 위한 갈수록 더 커지는 전제조건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Comecon 지역에서도 또한 자본주의적 공업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점층적으로 「체제내의 전문화와 생산조정」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내 분업의 본질은 예나 이체나 체제에 의해 조건지어진 경제적 법칙성들 사이에서의 당분간 승부의 결정이 나지 않는 잠재적 싸움가운데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의 배제는 「사회주의적 경제학의 객관적·경제적 바탕과 조건들의 이에 맞먹는 변화」를 요구한다고 한다.

자본주의적 경제의 객관적·경제적 현실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우월성에 의해서만 무효화되거나 보상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우선은 체제내 분업은 「경제적 잠재력과 발전경향의 힘의 장(場)」에 의해서 함께 결정되는데 이러한 「잠재력과 경향은 현재 그리고 일부 생산력의 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동생산성에서, 과학과 기술에서 시장 조직 등등에서 결과할 수 있고 이로서 보다 낮은 비용보다 유리한 배달조건, 전매특허와 자본주의 제국의 보다 나은 부속품 봉사 및 애프터 서비스에서 결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학 사이의 싸움은 과도기에 있어서는 「양쪽 세계제도의 평화로운 경제의 일부로서 아직도 꾸준히 잠재적이고 또 공공연하다. 이에 반해서 역사적 해결책은 「단지 자본주의적 분업을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으로 대체하는데에만 있다」

그밖에도 이 싸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국주의적 전매특허와 그것의 「위험하고 유해로운 실행과 방법」에 대해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다. 특히 「반동적 동합현상」의 직접, 간접의 위협에 대해서 국가는 경제적 및 경제 외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사회주의적 동상정책, 생산과 생산선의 상승, 과학과 기술만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시장의 구조하에서는 세계무역의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미국과 OPEC에 의한 목표를

설장해 놓은 국가 독점적 방해 공작하에서는 보호조치로서 결코 충분치가 않다.」

그러므로 대외무역 독점의 주요기능의 하나는 예나 이제나 자본주의 경제의 부정부성, 경쟁 그리고 위기 작용에 대한 보호 및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국가 독점적 조직체에 의한 차별정책과 수출금지정책 그리고 목표가 뚜렷한 음모와 방해공작의 방거」라는 것이다.

대외무역독점의 두번째로 본질적인 기능 즉 「평화로운 공존의 바탕위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통상정책과 협력」은— 이것은 70년대에 갈수록 더 강력하게 강조되었거니와— 방거기능과 아울러 대외무역독점의 외적기능의 변증법적 통일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3. O E C 에 대한 평가

국제무역같은 문제를 이념적으로 올바르게 정리하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어떠한 곤란성을 사회주의적 이론가들에게 가져다 주는가를 특히 뚜렷하게 보여준 것은 O E C에 대해 그들이 평가하는 경우에서 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의 논쟁은 일률적이 아니었고 수년이 경과되는 동안에 현저하게 달라졌다.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에서 결과하는 경제적인 성과와 더불어 처음에는 오로지 정치적 논쟁적이었던 관찰이 1959/60년 이래로 눈에 띄게 현실적이 되었고, 경제적 양상이 전면에 나오게 되었다.

O E C가 설립된 후 그들은 우선 이것에서 그 도움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구라파에서 강화되어질 N A T O에 대한 경제적 상대불을 보았다.

그들은 미국과 서 구라파 독점 주의자들의 「성스럽지 못한 연합군」이라 말하고 그 경쟁자들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지배적인 위치를 경고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적인 위치는 유리한 출발점을 근거로 하여 얻어질 것이었다.

그밖에도 공동시장 형태의 통합은 구라파의 보다 심각한 분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O E C에게서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주의적 모순과 몰락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 독점자들의 연합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에가서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 모순점으로서 무엇보다 헤아려진 것은 :

1. 두개의 자본주의적 경제블록 즉 O E C와 E F T A의 형성
2. O E C내에서의 강국과 약소국과의 지각될 수 있을 정도의 분리

3. 개개의 자본주의적 경제질서 내의 모순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는 이러한 평가에 가담하지 않았다.

폴란드에서는 서구라파에서의 통합 노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립할 수 없고, 그것을 현실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거기서 심지어는 협력의 가능성까지도 내놓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서구라파의 공동시장의 설립과 때를 맞춘 폴란드의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개혁 노력과 관련해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을 연기함과 동시에 물론 폴란드도 비록 절도있는 형태이긴 하나 다시금 쏘련의 노선에 방향을 옮겼다.

유고슬라비아의 견해는 처음에는 명확하게 불만이었으나 그 비판은 직접적으론, 할록에 가담치 않은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나라의 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작용에 겨냥되었다.

그들은 이것을 주로 공동경제시장의 모든 비회원국에 차별의 해당되는 소치로 늘렸다.

그밖에도 O E C 와 Comecon 에의 가입은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통합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예기되는 실패와 붕괴에 감하여 행해진 예언이 틀어맞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로 성과가 예컨대 O E C 내부에서의 관세 인하의 형태로 그리고 외부에 대한 공동의 관세정책의 형태로 나타난 다음 위의 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현실주의적 견해가 관찰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에 대한 가능한 경제적 영향에 감하여— 공동시장의 차별적인 처사에 반대하는 날카로운 항의는 O E C 제국과의 자기들의 무역에 부정적 작용이 일어날까 주로 두려워 했다고 결론지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태도는 O E C에 대한 이 비판의 국면에서도 역시 한결 같지 않았다.

몇몇 봉구라파 나라들은 O E C에 접촉을 시도하고 통상에 있어서의 유해로운 결과를 막기 위하여 일종의 협정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다.

쏘련은 O E C내에서의 경제적 성장을 인정하고 이러한 발전은 일부 특별한 시장관계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라파 통합의 결과와 전망을 취급한 한 쏘련의 논문에서 예컨대 O E C 내부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 :

「설사 왜곡되고 모순된 자본주의적 형태이긴 하더라도 『경제적 통합』은 그것이 그럼에도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요구와 맞아 들어가는 한에서 특히 그 시초단계에서 생산의 성장을 위한 그리고 대외무역의 확대를 위한 자극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쏘련의 근본적으로 O E C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견해를 조금치도 변하게 하지는 않았다.

소련은 포괄적인 국제적 통상협정을 위하여 O E C의 존재에서 결과하는 통상제한까지 포함하여 온갖 통상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세계시장의 재통합?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정한 공업 용량을 발전시킨 다음, 그들에게는 국제적인 통상을 통한 이 용량의 이용문제가 시급하다.

맨 먼저 Comecon 내부에서 용량의 국제적 균형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들은 국가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체제내부에서의 고립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 차냈다.

이러한 통찰이 국제적 및 체제내의 통상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새로이 포괄할 필요성을 주었다.

국제통상이—국내에서 국제적 경쟁을 통한 능률향상을 위한 강요를 강화하기 위하여건 또는 고신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적 분업의 이익을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이제까지 보다 더 강력히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기술적인 진보를 수입하기 위하여 그러할지라도—성장요인으로서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갈수록 뚜렷

해줬다.

「동일 체제내의 협력에 대한 객관적인 요구에 대해 계속 반대하는 자는, 가능한 경제적 이점을 포기치 않으면 안되고 이렇게 해서 불가불 경쟁 또는 자본주의적 경쟁기서 생산상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

두개의 세계체제의 공업국가들의 성장하는 경제적 능력과 함께 그리고 가속도적인 기술혁명 즉 평화롭고 동등한 동일체제내의 협력의 증대하는 기회와 함께 협력을 위한 강압은 한결 더 커진다

그것은 즉 가능성을 덜 이용하는 경우 손실이 한결 더 감지될만큼 커지리라는 뜻이다.」

모든 실제적인 요구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발전」을 위해 우선 이론적·이념적 이유의 뒷받침과 정당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쓰련의 사회주의의 특징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동상이론을 재 검토할 계기를 준 것은 바로 동일체제내의 동상의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도 동일체제내 동상을 필요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대외무역 이론을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실례로서 1967년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의 동 베를린의 학술원회의를 들수 있겠는데 여기서 새로운 대외

무역이론과 특히 대외무역과 성장과의 관계가 상세히 토론되었다.

독단논사적인 논의는 국제 통상의 시민적 이론이 단순히 이념적으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아니되며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으면 안될 국제적 경제 연관성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과에 이끌어 수었다.

또한 시민적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전된 국제 통상질서의 수단과 메카니즘도 상세하게 고찰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에게 국제 통상을 성장요인으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던 다양한 지불 고충의 처리, 환율 메카니즘, 신용관계 및 국제적 가격관계의 처리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바 물론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국제무역의 질서를 사회주의 세계시장에 덮어 놓고 적용하려 들지는 않고 말이다.

2.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실현한다는 일은 국내 및 국외교통의 행정적 관리의 사회주의적 체제에서 불가불 나오기 마련인 곤란성에 부딪친다. 여하간 대외무역의 경제적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정한 노력이 관찰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말이다.:

「—외부시장의 자극적 작용을 통해서 개개의 국민경제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내부에 있는 경제단위가 외부시장의 조건과 보다 강력하게 대결함으로써.

—대외무역의 기관과 국내 파트너와의 사이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물론 —경제과정의 행정적 관리체도가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로 변형하는 과도기적 곤란성을 볼 때— 저들 나라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경제통합의 이 목표가 다만 서서히 실현되어 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Marx는 세계시장과 세계통상의 발전속에서 인류의 문명적 진보에 대한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을 보았다.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국제경제 교통의 이와 같은 관계에로 다 시금 접근하는 도상에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독일의 균열된 경제 속에 정상적이고
선린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시별가능성」

브루노 글라이쎄 씀

Bruno Gleit 2e

「독일의 균열된 경제속에 정상적이고 선린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시발 가능성」

브루노 글라이쎬 씀

Bruno Gleitze

독일을 평탄하고 있는, 시간과 더불어 통과할 수 없게 되어 버린 담 (maner) 이 양단된 국민 경제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고 있다. 1945년 이후 시장 경제 질서속에 남은 저쪽보다 소련 점령 지역쪽에 한층더 질게 좁다란 농로를 통해서 농과 서 사이에 엄격하게 규제된 교역이 흐르고 있다.

독일 국민경제의 분리된 부분 영역의 인위적 차단에서 손실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독일 국민경제는 그것이 균열되기 전에, 오랜 발전을 통해서 통합의, 이로서 농률의 유달리 높은 정도에 도달 했었던 것이다.

독일의 생물학적 경제적 본질이 입은 파괴에서 단 한번의 극복된 부담의 전쟁 결과 결산은 기껏 추산으로 상상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한번도 정밀하게 계산된 적도 없었고, 재생한지 4분의 1 세기가 지난 다음 세계적인 넓이의 기술적 진보에 의해 이루어진 굉장한 경제적 팽창 속에서 다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뿐이다.

전쟁의 결과는 대중의 의식 속에서는 1945년 이래 분단된 독일이, 구라파에 있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더 달라졌다는 사실 가운데 숨어 있다.

그 상흔은 자주 이미 더 이상 눈에 띠지 않는다.

능력은 성장하고 생활 수준은 항상 개선되었다.

전쟁 결과의 결산속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들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하여 추방된 자들과 피난민들이 서부 독일 경제영역에서 팽창의 현저한 몫을 차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결과 청산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두서운 손실 증명으로 풀땀아 지는데 그것은 필경, 40년대의 붕괴기 동안에 있었던 회복할 도리라고는 없는 손과, 연구 고문들에 의해서 자꾸만 새로이 밝혀지는, 분단된 중부 독일(동독)에 있어서의 그 이래로 재래된 성장 경제와 아울러, 전쟁 종결이래로 생겨난 생산, 생활수준 그리고 재산 형성가운데의 결손을 통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전쟁의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결산서는 결코 완결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전쟁결과 손해액은 끊임없이 불어가고 있는 것이다.

1. 균열된 독일 경계내에서 혼란된

관계에서 나온 부채

분단된 독일에서 전후 20년동안 거의 전될 수 없을 정도까지 혼란된 인간 관계에서 나온, 물품 경제적 교환이 근소한 소부분에 까지 감소된데서 나온, 그리고 이로서 야기된 금전 순환의 경색에서 나온 지속적인 부담은 다만 일부분 양적으로 상상할수 있을 따름이다.

고독에서 나온 고뇌와 굶주림 또는 수세대 이래로 중부 독일지역에서 특히 번성했던 인간 접촉의 메마름은 저울질이 될수가 없다. 정말로 헤아릴수 조차도 없는 것이다.

제 1차 대전전에 프러샤의 통계가 그 당시 주에서 주로 이주자의 물질이 풀려 다닌 양상을 보여주고 아직 추방, 피난, 전쟁을 통한 파괴등이 독일인구 4분의1 이상을 고향지역에서 몰아 내기 전의 시대에 있어 이미 어느 정도로 심하게 지방가족들이 이리저리 얽히게 되었는데를 보여준바 있다.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은 경계 표시로서의 철조망, 담, 도랑 등이 야기하는 공간적 작용과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전후에 부분적으로 비상 계엄지구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경계선 지역이 생겼던 것이다.

세금 조치, 정부 보조, 그리고 행정적 도움을 통한 어려움의

완화는 동서독경계선 지역에서는 능률과 소득의 감소가 거의 인식되지 않았으나, 단지 그것을 실제에 있어 눈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부담은 초지역적 경비 부담자에게 이전(移轉)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전후의 전시기 동안에 생겨난, 추산에 의한 20프로의 동서독간의 경제적 수준 낙차(落差)는 그 상당한 부분이 이러한 고려에 의할것 같으면, 동서독 경계선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에서 설명될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성은 서독의 훨씬 큰 공간을 차지한 국민경제보다 어쩔수 없이 동독의 경제에게 훨씬 더 세계 충격을 가했던 것이다.

독일의 분단된 경제의 지속적인 부담에 대한, 이와 같이 공포된 첫 쏘오스와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강할지도 모를 손실의 쏘오스가 드르고 있다.

독일 경제의 약 4분의 1은 제 2차 세계대전까지, 동적인 성장을 계속하면서 무제한적인 지방의 경쟁속에 거의 1세기 이상이나 선천적인 입지(立地) 조건의 유리성 때문에 중부 독일(현재의 동독)에 집중되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체가 — 물론 서 베를린이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지만 — 독일의 전 노동력의 약 7프로를 소유하고 있는 베를린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평균을 넘는 공업화 정도로 말미암아 1939년에는 중부 독일의 경제지역 (베를린은 포함치 않고) 이 노동잠재력에 22.4프로의 몫을, 그러나 공업 노동력의 잠재력에는 25.4프로의 몫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상응하여 1936년의 공업 순 생산고는 24.4프로를 보였다.

베를린은 그 자체의 높은 노동생산력 때문에 심지어 8.0프로까지 이르렀다.

중부 독일지역의 구조적 약점이 원료 공업 (광업까지 포함하여) 에 있고 특히 소비물자 공업은 비교적 강하다는 것이 특색이다.

이 모든것은 오래전부터 집중적인 지역연구를 통해서 알려졌는바 이 지역연구는 1945년 점령 지역의 형성과 함께 야기된 독일 경제의 지리 멸멸을 통해서 생긴 것이다. 1936년의 이것에 의할것 같으면 중부 독일 (베를린 제외) 과 베를린은 독일지역의 공업생산에 다음과 같은 몫을 차지하였다.

a) 원료공업 (광업 포함)

중부독일 : 22.1

베를린 (동·서) : 3.1

b) 출자 물자공업 (건축포함)

중부독일 : 24.1

o) 소비물자공업

총부 독일 : 25.8

베를린 : 8.2

독일 경제의 최량의 분업에서 생겨난 1936년의 공업에서의, 이러한 구조적으로 지방이 가지는 붓의 관계는 전쟁 경제에서 지역적으로 각기 다른 성장 및 퇴락 과정을 통해서 확경 달라졌을 것이다. 허나 기본 구조로서 그것은 종전 때까지 남아 있었다.

경제의 정밀구조 조차도 그런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입지 조건의 유리성이 완전한 수행 능력을 갖았을때 가장 합목적적인 분업의 형성을 나타내 주거나와 압도 당한 용량 그리고 노동력의 지역적 형성가운데서 1945년을 넘어, 추방, 피난, 분리가 분단된 독일경제의 재구조를 강요할때 까지 존속되었던 것이다.

물론 옛날의 입지조건의 유리성이 사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된 국경선 설정의 틈바구니에서 그것은 단지 부분적으로 밖에 이용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까지 동 구라파 블록의 통합속에 눈에 띠게 들어가지 않았음으로 그 잠재적 부분은 확대된 독일내 무역을 통해서 폭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경계선으로 인한 고립과 입지적 조건의 유리성의 제거에서 나온
능률의 취약성에 독일 문단에서 야기된 독일의 지속적 부담의 제
3의 쏘오스로서 오는것은 전통적인 그 공업의 정밀 구조로 인한
특히 중부 독일영역의 막대한 부담이다.

옛날에는 구조에 있어서의 일방성이 바로 높은 능률 정위(定位)
의 표현이었던 것이나 문단 후에는 그것이 구속적 요소로 작용하
는 것이다.

실사 수준적인 간격과 시간적인 격차는 있었지만, 고도로 공업
화된 중부 독일도 역시 한붓길 전후의 대발전에도 불구하고, 옛
독일 경제의 중부의 고립화에서의 구조 정화는 하나의 봉쇄적인
국민 경제의 수요 구조 및 능률구조에 대한 완전한 적응 가운데
만 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면에서는 용량 파괴를 통해서
타면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위한 투자 소비를 통해서 말이다.

이런 적응 과정은 동독에서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음이 분명하
다.

이것이 그곳에서는 민감한 지속적 부담으로서 작용하고 농성 낙
차의 보다 넓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전체 대독일 영역의 공업에 대한 중부 독일의 몫 (1936년)

프로센트로 표시

	총업원수 기준		매상고기준 (판매)	
	동독 1)	동베를린	동독 1)	동베를린
	a) 평균 이하의 몫			
조선	(2.9)	(0.1)	2.9	0.1
코르크스 제조	2.5	-	1.9	-
귀금속 및 장식품	3.3	(0.2)	5.3	0.3
석탄광업	4.2	-	3.3	-
합판공업	4.8	(1.1)	3.4	1.1
제철공업	6.5	-	6.5	-
시계공업	7.0	0.1	4.6	0.1
자물쇠 금구공업	7.5	1.5	6.7	1.5
정밀상품 및 제도 (製刀) 공업	8.3	(0.1)	3.6	0.1
식료품공업	8.6	2.6	7.0	3.4
마가린 및 식용유공업	8.8	-	8.5	-
육류 및 생선공업	11.1	(10.4)	12.6	10.4
전기공업	13.5	(12.2)	12.2	12.2
	b) 평균 초과 몫			
모피 가공	96.2	(2.5)	94.1	2.5
연탄 공장	66.8	-	66.0	-
갈탄 광업	63.4	-	61.6	-

	종업원수 기준		매상고기준 (판매)	
	동독 1)	동베를린	동독 1)	동베를린
작용상품 및 자수산물공업	61.8	(0.9)	63.0	0.9
비행기 공업	59.3	2.7	59.3	2.7
직물기계 공업	55.0	0.2	54.1	0.2
석염 및 카리염 광산	54.6	-	57.0	-
가속장갑 공업	50.0	6.2	48.5	8.7
연료 공업	47.7	-	31.1	-
장난감 공업	43.8	0.2	41.9	0.2
종이 가공공업	41.7	(0.1)	37.5	0.1
도자기 및 유리공업	41.5	(1.1)	34.3	1.1

주 1) 1945년의 쏘련 점령지역 베를린 불포함

소오스: B.Gleitze 저, 동독경제, 서베를린 1956년간, 표지

여기서 중부 독일 주민이 독일경제의 분단으로 인해 생긴 금융적인 노력과 조직적인 능률에 있어 요구받은 것은 중부 독일공업의 불균형적인 구조가 보여 준다.

앞서 제시된 도표는 1936년에 (공업센서스) 생산의 몫이 이상하게 났았던 12개의 공업부문과, 중부 독일의 동간적 집중으로 인해 생산 몫이 유난히 높았던 그밖의 12개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이와같이 「상속 받은」 불균형이 살아지지 않고 있다. 즉 특수 전문가들의 전형적 부족, 부분별 경협의 부족, 낡아빠진 공장시설, 50년대의 피난 운동에 발목할만한 몫을 차지하기도 했을, 고도로 훈련된 지방 잉여 노동력에 대한 종업 가능성의 결여, 그러나 또한 농장은 가농이나 가동 중지율 통한 농장이나 지역의 퇴조 현상 등

독일 분단에서 야기된 경제적 결과 작용이 동등연한 개인 살림의 거기 상응하는 비용 속에 나타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결과 부담의 일부는 지역적으로 많거나 적거나 간에 억압된 생활수준을 통해서 흡수되었다.

그 밖의 부분은 공장 이득이나 개인 살림의 절약력들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서 장애 받은 재산 형성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독일의 재산 형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

이 논문의 작자는 국민 재산 계산에서 서독과 중부 독일 사이

의 격차를 1948년의 농화 개혁이라 주민 일인당 5000마르크로 추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에게는 재산 형성에 있어 800억 마르크 이상의 가치가 탈락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른바 동서독 구역 경계선이라 하는, 경계선 고정을 위해 화대된 국경선은 베를린을 가로지른 장벽과 마찬가지로 비용관점에서 볼때, 국민경제의 현저한 부담이다.

국경 시설은 값비싼 투자인 것이다.

일반 군사비용에 경비대를 합해서 계산한다면, 전적으로 옛날의 국경선의 소련측에 가로 놓인 경계선 고정 및 유지 및 개선은 팔목할만한 금융적 경비를 요구한다.

그와 늦지 않게 중요한 것은 중부독일에 부족한 건축재에 대한 요구이다.

놀랄정도로 원시적인 건축술로 지은 베를린 장벽이 처음 세워질 때만 해도 농 베를린의 약 2000개의 아파트의 건립 비용이 들었던 것이다.

2. 선린(韓)관계의 표현 형식과

수단 및 방법

만일 소련 점령지역의 경계 설정이 자기 봉쇄와 정치적 전선

형성의 조건하에 놓여 있지만 않았던들, 모든 경제적 통찰은 분단된 경제권의 정상적 선린적 관계의 조속한 수립을 추구했을 것이다.

20년 이상의 경과 상태가 지속된 다음에 이긴 하지만 농결된 선린관계의 병적 상태로 부터, 끌어 낼수 있을 수단과 방법들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사고의 극예가 아니다.

국제적인 발달한 경제생활은 경제 협력의 여러가지 적응 가능한 형태를 발전시켰다.

마치 중상자가 회복과 함께 단계적으로 거름마를 다시 배우는 것 처럼, 국민생활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듬어 나가는 일이 가끔 정상적인 것 기초의 과도적 단계로서 필요 불가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이 논문의 제 1장에서 서술된, 균열된 독일 국민경제의 장애 영역 및 독일 양척의 화물경제와 금융 경제의 순환에 있어서의 관계와 특히 심하게 인간관계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장애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인접한 국민 경제들 사이에 있어서의 화물 경제적 관계는 동상적으특 멀리 떨어진 지역간에서의 초지역적 상품교환으로 부터 작은 국경 교통내에 있어서의 교역에까지 미친다.

그런데 후자는, 이웃해 있는 나라들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는 사소한 무게 밖엔 갖고 있지 않으나, 국경 지역에게는 큰 의미

를 갖일수가 있는 것이다.

1. 상품 경제관계

이웃해 있는 국민 경제간에 있어서의 생산수단 방법 영역에 있어서의 대외 무역은 원료 교역, 에너지의 상호 공급 및 제철과 강철 공업 그리고 과학 공업의 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교환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독일은 자아르 지방에서 폴란서로, 로트링겐의 제철 및 강철공업의 보급을 위해서 석탄을 공급하고 있다.

그 밖의 예로는 독일에 의한 화란의 천연 가스 수입이나, 독일과 오지라간에 있어서의 첨단 상해 (spitzenansgleica) 를 위해서 다뉴브강의 대발전소로 부터 전기를 공급하는 일들이 있다.

쏘련은 현재 자체의 에베르기 공급망을 쏘련 지배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국경 지대에 있어서의 협동에 대한 예로서는 1952년까지의 진 후 여러해 동안에 있었던 중부 독일과 서부독일 경계 지역에 있어서의 그것을 들수가 있겠다.

그리하여 한 때, 헬름슈테트 군(郡)에 위치해 있고 그 석탄 저탄장과 광산의 일부가 중부 독일지역에 가로 놓여 있는 브라운 슈바이크 탄광은 기업의 그쪽 부분을 1952년 경계선이 영구 봉

해 되기까지 중부 독일과의 협력하에 계속 가동 했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에켄네, 서부 독일지역 다시 말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할츨슈테트 근처에 위치한 발전소가 그 시점까지 중부 독일 경계지역에 전력을 공급했었던 것이다.

동 베를린에 있는 베르크만-보르지히대 터빈 공장도 1964년까지 잘쓰기터로 부터 개스를 공급 받았는데, 그후 니더라우짓쓰에서 오는 원거리 개스가 동베를린 권내에서 차단되었다.

경계선 지역의 주지해 있는 바와 같은 취약성은 배후에 있는 지역으로 부터 차단되어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다만 물론 통제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활발한 경계지역 교역이 소중과 구입 여행을, 그러나 또한 노동력의 내왕을 가능케 하는 곳에서만 이러한 취약성은 지양이 되거나 가장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물품 구입이나 판매의 가능성의 인접을 —그것이 가끔 일시적인 것이긴 하나— 주는 것이다.

경계 지역은 결국, 보충의 경우라면 멀리 떨어진 공장 중심부와 경영 중심부간에도 있기 마련인 것과 같은 상품 및 근무 능력의 초 지역적 교환을 감소 시켰을뿐 아니라 경계 지역의 해당된 지방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거리 간의 상품 및 근무 능력의 교환 조차도 완전히 단절시켰었던 것이다.

관세 공과(公課)의 결여는 그렇기 때문에 경계지역 주민들에게 하등 실질적인 의미라곤 없다.

보통의 경우라면 원거리 수송이 되지 않는 과물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식료품과 수송료가 길어질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소한 가치 밖엔 갖고 있지 않는 상품이 있다.

여기에 드는 것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벽돌, 시멘트 생산품) 등 건축자재를 늘수가 있다.

근거리 간의 근무 능력에는 온갖 종류의 수선, 지역운송, 그리고 또한 의사의 치료 및 법률상담, 나아가서는 문화 행사 및 상업 기업체의 특별 능력이 있다.

무슨 연고로 이것이, 단 하나의 똑같은 민족의 인간들의 평화로운 공존 가운데서 가능할수가 없는 것인가?

(2). 교통 경제관계

중부 독일에 있어서 철도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교통의 독점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다음부터 분단된 독일에 있어서의 교통 구조는 다시 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하나 점증하는 교통이, 전통적으로 주권 기관에서 관리되는 대신, 능력이 높은 교통 담당자들 통해서 경제적으로 영위되는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독일의 양분단 지역간의 교통 경제관계가 단순화 되고 또 폭발해 지리라는 전망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다.

중부 독일의 분단과 함께 동서 방향으로 달리는 교통망이 경제선에서 대부분 차단되었다.

121개의 도로중 5개만이 이제 개통되어 있고 31개의 철도노선중 7개 노선만이 개통되고 있다.

독일 분단에 의해서 가장 적게 영향을 입은 것은 국내 선박교통이다. 엘바강과 중부 운하는 동서 교통에 있어 예나 다름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현재에도 개통되어 있는 도로 및 철도 연결과 마찬가지로 전전(戰前)의 시기에 비하면 상당한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농축과 서독간의 동중 교통 연결은 오늘날 까지도 존립하지 않는다.

농·서 교통 연결의 대부분의 중단이 가져오는 결과는 옛날의 그것에 비하여 경제선의 양측 해당 지역에 교통 공백이 들어 섰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 공백은, 아직까지도 개통되고 있는 도로 및 철도가 대부분의 경우 평행해서 달리게 됨으로서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육로 교통 연결에 감해서 볼때 경제선 저쪽의 도로 및 철도망이 가능한 한 같은 크기의 평행하에 그리고 상응하는 발달의 양상하에 계속 영위되고 있음은 중요하다.

도로 및 철로의 확장 계획의 단계에서 경계선 지역내에 있어서의 상호간의 동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도로 교통 영역에 있어서의 문별 있는 협력의 예로서 보여지는 것은 독일 연방 공화국과 오지리, 벨기에 및 홀랜드간의 고속도로 계획과 그 확장과, 장거리 교통도로로서 구라파의 여러 나라를 가로 지르는 이른바 구라파 도로의 건조를 들 수가 있다.

도로 교통의 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웃해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한 똑같은 교통 표시 및 교통 규칙이 적용될 것과 화물 자동차의 똑 같은 용량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협의는 현재 서구라파 여러 나라들 간에 시도되고 있는바 이것은 국제적인 연합체를 통해서 모든 구라파 내 지역에 까지 통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접교통 지역간의 철도 교통에게는 똑같은 궤적과 전기 기관차의 전인력으로 경계선 넘어까지 연결 노선의 확장과 아울러 전기화에 있어 똑같은 시스템의 사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전기화에 있어 각기 다른 시스템을 썼을 경우에는 물론 경계선에서의 비교적 무난한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발전 단계에 놓여 있는데 불과하다.

이제까지 경계선 통과는 기관차의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시스템이 다른 전기화의 경우에는 경계선을 통과함에 있어,

한 요인의 부가적 능력이 요구 되는바, 그것은 씨스템에 대한
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생산적인 사용 가능성에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통과시의 애로는 교통 능력의 가격을 높여 주고 교
통 시간을 연장케 한다.

농·서북 경계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과시의 애로가,
독일의 본단에서 연유하는 국민 경제적 항국적 부하에 대한 많은
규정 이유중 몇가지를 이룬다.

화물 교통에 있어서의 농차 운송을 감소하거나 피하기 위하여는
화차 들의 상호 이용에 대한 협정이 크게 중요하다.

그러한 협정은 예컨대 서부 구라파 여러 나라를 위한 「구라파
차량술」로서 이루어져 있다. 동 구라파 블록을 위하여도 유사한
협정 (OPW) 이 있다.

이러한 초 지역적 교통 조정의 사무적 접근이나 부분적 냉렬은
추구 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독일 국내 교통 영역
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그런 유의 협정의 목적은 이웃 지역의 과차가 텅 빈채 경계선
으로 회송될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자유로운 조치에 의하여
다시 적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여기 딸린 것으로서는 또한 이웃 나라에서의 경우에 따
라 필요할 수리와 해당된 부분들을 그곳에서 얻을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이다.

육상 교통 연결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석유, 석유 생산품 그리고
고 개스의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중부 구라파. 권내에 있어서는 잉골슈타트의
정유소에 원유를 공급키 위하여 이태리로 부터의 기름 파이프라인
이나 서부 독일에 천연개스를 공급키 위한 화란으로 부터 오는
천연개스 파이프 라인이 있다.

이것은 독일의 농성 교통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합목적적임이
입증되었다.

수로의 공농적 사용에 관하여는 이웃지역 간에 보통 선박 통과
권과 수송권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진다.

이에 대한 예는 라인강의 선박항행이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는 항구 시설의 공동적인 이용이 규정 될수
도 있고 수로의 공동 확장이 규정 될수도 있다.

중부 독일에 있어서는 남부 방향의 교는 독주가 완전히 유지되
어 있고 또 성장하고 있음으로 로스투크 항과 비스마르 항과 중부
독일 영토의 남부에 위치한 동장과의 연결은 교통 시스템에 있어
애로에 속한다.

특히 여기서는, 이전엔 중부 독일에 의하여 이용 되었던 여러

항구, 함부르크, 뤼베크 그리고 슈테틴에 주어져 있었던 것과 같은 국내 수로를 통한 연결이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로스톡크 항을 공업 지역과 연결지을 이에 해당하는 한 개의 운하의 건조는 오래전에 계획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그 건조는 착수되지도 않았다.

이에 반해서 그러나 중부 독일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함부르크와 뤼베크항에 이르는, 특히 대량화물 수송을 위해 비용이 저렴한 수로 연결은 그냥 열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부 독일에 의해서 외화 궁핍과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비교적 적게 이용되고 있다.

동부 독일의 여러 항구들에 이르는 연결로의 보다 활발한 이용은 중부 독일로 하여금 운하 구축과 항구 시설을 위한 높은 투자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덜어줄 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공중 교통에 있어서는 인접 국민 경제간에 공중운과 권라 착륙권이 부여되고 정기 항로 협정이 체결 된다.

이 보다 중요한 것은 공중 교통에 있어서의 책임 배산 의무의 조정이다.

3) 화폐경제관계

농독의 중앙 집권적으로 조종되는 상품 교환의 청산은 청산에

관한 조약의 합의들 바탕으로 하여 다른 통화 지역과의 사이에 이루어 진다.

동독측의 조약 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경제 기관이다. 왜냐하면 소련,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대외 무역 및 외화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산 내왕은 서방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그러하거니와 동구라. 파의 중앙 관리 경제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 된다.

청산 왕래와 외화 왕래에 있어서의 완화는 1963년 이래의 경제 개혁을 통해서도 이렇다 할만한 범위로 이룩된바 없다.

중부 독일의 경제는 이로서 현재 자유로운 자본 내왕의 이익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이익은 특히 오죽잖은 국내 자본 형성이 일정한 전제 조건 하의 자본 수입을 통해 산해되고 이로서 세계시장에 연결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데 있다.

자유로운 자본 내왕의 이러한 잇점의 실현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본이 생산 요인인 노동보다도 더 높은 유연성을 보여 주고 보다 더 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하나 다른 잇점은, 자유로운 자본 수입과는 대개 기술적 지식과 기업적 경험이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한 나라의 기술적 후진성을 비교적 빨리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중부 독일과 서부 독일에 있어 지금의 각기 상이한 경제적 기술적 발전 상대에 입각할 때, 동독에서는 자본의 수입의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데서 출발할 수가 있겠다.

만일 이제 동독의 경제 사정이 중부 독일과 서부 독일간의 자유로운 자본 내왕에 대한 장애가 제거되도록 변경되어 진다면, 중부 독일로 부터 상당한 자본 수요가 답지할 것이 예상된다.

중부 독일에 대한 외환 관리의 완화는 그러나 생산, 자본분배, 투자 그리고 이로서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정해진 물품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결정의 중앙 집권화의 철폐가 이룩되지 않는한,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금전 내왕 및 자본 내왕의 완화가 시작될 것 같으면 — 국내에서와 서부 독일 및 외국에 대해서 —, 즉 미리 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은 종류의 결정이 대부분 분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라도, 중앙 집권적으로 조종되는 경제 과정의 민감한 장애가 불가피할 것이다.

중앙 경제 기관에서 세워진 의무적 계획들은 개인 살림과 기업능률의 분산적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말미암아 금전 및 외화 문제에 있어서 크게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동독에 사는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농독에 그들의 거주지를 선택하지 않는한, 그들의 서독에로의 여행이나 이주가 힘으로 막아지

고 있는 한에 있어서, 자본과 외화의 관리에 있어서의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자본 도피의 우려가 따르는 것이다.

통화 통제에 있어 동서독의 국립은행 및 태환 은행과 정부 관서의 협력을 위하여는 양쪽 독일에서 가격 형성이 주로 시장에서 의 수급에 달려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통화 가치의 안정성과 경기 조정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독일 연방 은행의 수단은 오토지 시장 거래에 대한 영향제한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동독의 국립 은행은 1967 년에서 68 년에 일어났던 은행 재조직 후에도 여전히 중앙의 계획의 수행을, 사회 상품의 생성과 사용에 감하여 금전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유드 조치와 규제 조치를 통해서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조치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생산적 및 관리적 경제 단위들 위해 규정된 현금이 따르지 않는 은행을 통한 지불 및 청산 왕래가 있고 또 소액 지불을 위한 부족한 금고 준비금에 이르기 까지 현금에 있어서의 그 금고 수단의 제한, 그리고 주로 현금 소동을 소비의 측면에만 제한하는 일, 또 국가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 경제에 대한 신용 대부 급여의 엄격한 통제 등이다.

나아가서 동독의 국립은행 및 국가적 은행 조직의 중심적 과업은 임금 지불의 제한을 통한, 저축 요구를 통한 그리고 충분한

공급이 실재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줌으로서 소비 신용 대부분 그 액수에 따라 볼때 매우 제한된 국민 경제에 있어서의 현금 유통을 제한 하는데 있다.

국내와 대외 무역에 있어 지불 및 청산 거래의 이와 같은 모든 통제 조치는 신용 대부분 급여와 현금 유통의 조정시에, 농독과 외국과의 사이의 자본, 외환, 지불 거래를 자유화 시키려는 목적 설정과 융합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이웃간의 경계선 교동에 있어서의 금전 거래를 위한, 그리고 통과여행 및 기한부 체류를 위한 실제적인 조정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통과시의 자의적 수수료 세율은 금불이다.

예컨대 가족 관계와 사회적 요구에서 오는 잔고의 대체는 동독내 통산의 경우 처럼 특수한 청산 당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독일내 농상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공급과 근무 능력의 계산이 이미 서술된것 처럼— 원칙적으로 양측 독일의 농화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청산 단위 (V E) 에 의해서 행해진다.

I V E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기준은 대략 서독의 1마르크이다.

농독 국립은행의 마르크는 순전한 국내 통화이다.

이 농화로서 지불 수단인 수출과 수입은 중부 독일의 법적 규정에 의한다면 금지되어 있다.

다른 통화 지역과의 중부 독일의 통상은 그러므로 쌍방의 기초 위에서 수행된다. 즉 긴 안쪽으로 공급과 주문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태환 가능한 통화나 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만 중부 독일은, 통상 및 근무 능력 쌍방 협정의 테두리 밖에서는 상품과 근무 능력을 현금으로 신야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독일내 통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1951년 9월 20일의 베를린 협정은 양면적 당좌 개설이 따른 쌍방 청산 협정이다.

독일내 통상에서 심파하는 양측의 지불은 청산 당좌상에 부기된다. 그런데 이 통상 당좌는 독일 연방 은행과 동독의 국립 은행에 평행하게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잔고가 한쪽 또는 다른 쪽에게 남는 일은, 두개의 각기 다른 통화 지역간의 서로 해결하는 상품 및 근무 능력 거래의 특성 가운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독일내 통상에 있어서의 구조상 및 계절상 제한을 받는 편차를 위하여는 양쪽 태환 은행간에 이자가 붙지 않는 그러한 당좌가 합의되어 있다.

이른바 Swing이라 불리는 신용 여지는 지난 수년간 양측에 있어 200,000,000DM에 달했다.

Swing의 일방적 영구적 완전 이용에 대해서는 일년의 정해진 기일에 행해지는 현금 교환이 이를 저지할 것이다.

중부 독일은 자체의 수송적 잔액의 목전에 임박한 현금 상쇄의 곤란성을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 부터의 주둔을 감축함으로써 해결했다. 그런데 연방 공화국측은 그러므로 현금 상태를 되돌이 연 기했 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이 바라지고 있는 독일내 무역의 확 장을 방해하고 있다.

새로운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현금 상쇄는 1975년 까지 연기 되 어 졌고 중부 독일을 위한 신용 여지는 독일 연방 은행에 의해 지난해에 남은 잔고의 25 퍼센트를 확정 되어졌다.

1969 년을 위해 중부 독일에 남겨진 자본 기금은 360,000,000 VE에 달한다.

그것은 결코 고정화된 크기의 질서여서는 안될 것이다.

(4) 인간적 및 사회적 관계

독일 양단이 갖어온 비극적 결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생 활 영역에 대한 영향은 또한 둘수가 있다.

그것은 중단된 가족관계, 노동력, 대학생들 직업생활을 고만둔 사 람들의 절여되는 임의 이주권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 생활에서 계속이 되고, 경제 지역을 넘는 여행이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심지어는 조직화된 문화여행 또는 시 찰여행 조차도 엄격하게 규제된 다음에는 문화적인 관계에 일으키

까지 미친다.

이와 유사한 예는 중세기적 사정속에서나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이 이제까지로 보아서는 티베트의 봉쇄에서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의 총능 가능한 자유화가 이 논문의 서론에서 이야기 한바 있는 부담을 누그러 트릴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인근 교통인바, 그것은 베를린에겐 그 섬과 같은 처지와,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은 옛부터 내려오는 통합된 시가 주민 때문에 생존을 결정 할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서 베를린시의 노력은 오래전 부터 베를린시의 양쪽 사이에 전화망을 재조성 하는 일, 베를린의 교외 지역에 있는 묘지 참패에 대한 방해의 제거, 서 베를린에 사는 소유자들에 의한, 동독 지역에 위치한 과수원과 집들의 재 사용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 되는것은 인간 관계의 개선이지, 거이 경제적인 가치는 아니다.

물론 지역이 넓은 베를린 내에서의 접속된 근거리 교통의 재개와 같이 두가지 다 문제될수도 있다.

1961년 장벽이 생기기 까지만 해도 이러한 시가 교통은 예나 다름 없이 존재했었다.

선린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노동력의 자유 이주권과 아울러 마찬가지로 병자의 자유 이주권과 의술적 회복이 필요한 인간의 자유 이주권도 생각 할수가 있다.

특히 위독한 환자는 특별치료를,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가능할 수 있는 곳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서 베를린에 있는 새로운 병원, 메디컬 센터를 지적하고 싶다. 똑같은 이야기가 고도로 적용되는 것은 노양 치료에 대해서 이다.

베를린 장벽이 생긴 이래 1968년 말까지 대략 122,000 명의, 대개는 연금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중부 독일 관청의 허가를 받고 서독으로 이주 하였다.

연금 대상자의 방문 여행이나 가족과의 동거 생활 영위와 마찬가지로 이 조치는 인도적인 종류의 것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전쟁의 여파로 생긴바, 생물학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된 중부 독일지역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서부 독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 부담의 일부를 떠 맡고, 동독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택이 비어지게 된다.

방문 형식의 기한부 가족 동거생활 영위는 오늘날엔 다만 작은 범위내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동행증 협정도 (베를린외) 1966년초에 만기가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1965년 크리스마스 때에 824,000명의 서 베를

린 시민이 하루 동안 동 베를린을 방문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다급한 가족 문제로는 1964년에서 1967년 말까지 한달에 평균해서 불과 2000명의 서 베를린 시민만이 동 베를린의 가족을 방문할 수 있었을 뿐이다.

1968년과 1969년 1사반기에는 긴급한 경우의 가족 방문이 매월 평균 7000에서 8000명을 나타 내었다.

아무리 그것이 자주 기술적으로 지지부질하게 진행 된다고는 하더라도, 우편 교류를 통한 직접적인 관계, 동서독 경계선 양측에 사는 인간들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중계를 통한 직접적인 접촉은 독일인들 사이에서 그 자체에서 오는 바와 같은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인간 관계를 유지해 줄수가 있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접촉하려는 태세가 없어져 가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동기가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고 비로소 청소년 회합, 청소년 여행, 학생 교환을 통해서 그것의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또한 일반적으로 운동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아마 극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및 개개의 예술가들의 작업은 다른 평면 위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중간 영역적 교통은 아주 미약하게 발전 되었을 뿐이며

그것은 영화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뿌리를 전쟁 발발전의 분리되지 않은 학문 활동이 행해지던 동안 교육의 동등성과 수십년이나 되는 직업 경험 가운데 갖고 있는, 양측 독일의 학문 세대의 유효한 협력은 독일 문단의 결과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다. 그도 그럴것이 문헌 조차도 대부분 외부와 차단이 되어지고 어차피 국제 학술 대회에서도 만나기 힘든 중부 독일의 학자와의 접촉의 기회는 드물다.

이렇게 해서 동등성에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원조 교동과 한정 원조 교동에서의 인간적인 관계가 가지는 가느다란 통로만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조교동은 잔존하는 독일내 농상의 통로 보다도 이제는 더 강할 것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천재 지년의 경우의 출동, 전염병 및 소화(消化) 진압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경우에, 정치적인 조건 없이 경계선 지역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상당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칙은 여기서 분명 도달할 수 있는 효과 보다는 더 이상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곧 그 후에 프라하에서 실각된 Alexander Dubcek 의

주재하에 바르샤바 조약의 지도적 대표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전체 대륙 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에네르기, 교통, 수리사업, 공기 오염방지 및 보건의 계획들을 실현화 해야 한다는 라는 의견을 피력했던 1969년 3월 중순의 부다페스트 선언은 구라파 최대의 공업국 내부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협력이 중부 독일의 분리 이래 그 분단의 상태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고, 과학자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서독에 있는 기관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발점에조차 들어서지 못하는 한, 기껏해야 꿈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만 목표 설정에만 동의할 수 있는 부다페스트에서 표명된 이러한 견해에는 독일 내부 관계에 있어 양측의 건설적 태도가 팔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선언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